연구총서 13-AB-06

K O R E A N I N S T I T U T E O F C R I M I N O L O G Y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범죄행위 유형에 대한 연구

Analyses of Criminal Activity through Tax Havens

박미숙 · 강우예

KIC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법학 박사

▌강우예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

발간사

지난 한해동안 언론을 달구었던 주요한 현안중의 하나가 조세회피문제였습니다. 특히 대기업들이 해외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역외탈세를 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으면서 검찰에서는 역외탈세 문제가 대기업 수사의 새로운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개인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절세하거나 또는 기업이 절세를 통해 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세부담이 적은 조세피난처에 거소를 두거나 지사를 설립하는 것은 불법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기업과 자산가들은 단순한 절세차원에서가 아니라,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이를 '역외탈세'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를 자금세탁의 한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자본투자의 흐름이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왜곡되며 복리와 후생이 감소하고 개별국가의 세입과 세출 정책의 기초마저 흔들리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조세피난처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웠다는 이유만으로 탈세인지 조세회피행위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역외탈세라는 용어로 일률적으로 포섭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에 본 연구원에서는 소위 조세회피와 관련하여 입법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조세회피관련 범죄유형 연구를 수시과제로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우선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유해행위에 대한 각국의 입법 및 정책 등을 개관함으로써 조세피난처 법인을 이용한 소위 유해행위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향후 본 연구가 현행법상 역외탈세의 개념과 구체적인 기준 등의 설정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연구를 위해 수고해주신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2014년 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박상옥

CONTENTS

국문요약 11

제1장 서론(박미숙) 15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17

제2절 연구대상 및 방법 21

제2장 조세회피처의 성립배경(박미숙·강우예) 25

제1절 국내 조세정책의 확장과 세계화 27

1. 국가 조세정책의 효력 27
2. 세계화와 조세 28
3. 세계 조세회피현황 30

제2절 국제적 조세경쟁 31

1. 차별적 조세율 31
2. 조세특례제도 32
3. 유해한 조세경쟁 33

제3장 조세회피처의 의미에 대한 규정(박미숙·강우예) 37

제1절 조세회피처의 정의 39

1. 조세회피처의 기본개념 39
2. 조세회피처의 유형적 요소 41
3. 유해한 조세특례제도 43

가. 저세율 과세 혹은 실질적인 무과세(a low or zero effective tax rate) .. 43

나. 지역특구(ring-fenced) 43

다. 불투명성(non-transparent) ····· 44
라. 효과적인 정보교환의 부재 ····· 45
마. 기타 요소들 ····· 46
제2절 조세회피처 목록 ····· 47
1. OECD의 유해 조세특례 지역 목록
(the preferential tax regimes identified as potentially harmful are) ····· 47
2. 미국의 조세회피처 목록 ····· 52
3. 금융 안전 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의 역외금융중심지
(offshore financial center) 목록 ····· 53
4. 민간단체 및 개인 연구 ····· 55
5. 시기별 비협조적 조세회피처의 변화 ····· 56

제4장 조세회피처 관련 유해활동(박미숙·강우예) ····· 59
제1절 조세회피 ····· 61
1. 의의 ····· 61
2. 조세회피처(Steueroasen)를 이용한 조세회피 유형 ····· 63
가. 면세 및 절세 형태에 따른 조세회피처 분류 ····· 63
나. 조세회피 주체에 따른 분류 ····· 65
제2절 조세회피처를 활용한 자금세탁 ····· 72
1. 조세회피처를 수단으로 한 자금세탁 ····· 72
2. 조세회피처 외부적인 요인으로서의 불법 자금세탁 ····· 75
3. 국제통화기금(IMF)의 해외금융센터를 경유한 자금세탁행위에 대한 인식 ·· 76
4. FATF의 자금세탁과 관련한 조세회피처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안 ····· 77

제5장 조세회피처에 대한 각국의 입법 및 정책(박미숙·강우예) ····· 85
제1절 우리나라 ····· 87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87
2.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의 조세포탈죄 성립 여부 ····· 89
제2절 미국 ····· 91
1. 금융비밀주의와 제금세탁방지제도 ····· 91

가. 미국의 정보요구에 대항한 스위스의 금융비밀보호주의 ····· 91
나. 미국의 정보공개에 기반한 자금세탁방지제도 ····· 93
2. 조세회피처를 기반으로 한 조세회피행위의 규제와 처벌 ····· 95
가. 연혁 ····· 95
나. 조세회피처 오용 방지 법안(the Stop Tax Haven Abuse Act) ····· 97
다. 기업 투명성과 법집행에 관한 법안
(Incorporation Transparency and Law Enforcement Assistance Act) ··· 101
라. 양자 조약 ····· 102
제3절 국제기구 ····· 102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102
가. 배경 ····· 102
나. 조세회피에 관한 규제와 처벌 방안 ····· 104
2.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 106
3. 국제통화기금(IMF) ····· 107
제4절 유럽의 조세회피처 이용행위에 대한 규제 움직임 ····· 108
1. 조세회피의 천국 유럽의 동향 ····· 108
2. 조세회피처에 대한 유럽연합의 움직임 ····· 109
3. 유럽연합 일부 국가의 반발 ····· 110
4. 조세회피행위 대응을 위한 독일의 탈세예방법
(Steuerhinterziehungsbekämpfungsgesetz: StHBekG) ····· 110
가. 사인에 대한 규정 ····· 112
나. 기업에 대한 규정 ····· 112
다. 처벌규정 ····· 114
라. 비판 ····· 115
제5절 일본에서의 조세피난처 이용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 ····· 116
1. 조세피난대책 세제의 취지 및 변화 ····· 116
가. 조세피난대책 세제의 목적 ····· 116
나. 조세피난대책 관련 국제적 환경의 변화 ····· 118
다. 조세피난 대책세제의 연혁 ····· 124
라. 국회 중의원(国会衆議院) 회의 내용 ····· 131

2. 조세피난대책 세제에 관한 논점 ····· 135
가. 외국 관계 회사의 범위 ····· 135
나. 합산 대상국의 리스트화 ····· 136
다. 무세국 취급 ····· 137
라. 주된 사업의 판정 ····· 138
마. 트리거율 수준 ····· 139
바. 예견 가능성의 관점에서 검토 ····· 139
사. 외국 자회사 배당 이익금에 산입제도와의 관계 ····· 141
3. 조세피난대책 관련 법제 및 제도 검토 ····· 143
가. 「조세특별조치법」의 적용범위 및 조세피난 세제 내용 ····· 143
나. 일-버뮤다 협정 ····· 150
다. 국외재산 조서제출제도(國外財産調書制度) ····· 155
4.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불법행위 사례 ····· 157
가. 무형자산양도 및 대가지급 사례 ····· 157
나. 특허권 및 기술권 등의 무형자산양도 사례 ····· 158
다. 사업 및 이전가격상의 초기 가치평가 사례 ····· 158
라. 무형자산에 대한 크로스 라이센싱 계약 사례 ····· 159
마. 비용분담계약상 축적된 무형자산 사용대가 지불 사례 ····· 159
바. 조세피난의 불법행위사례 경향 ····· 160
5. 조세피난 세제의 평가 및 제언 ····· 160
가. 조세피난 세제 평가 ····· 160
나. 조세피난대책 제언 ····· 162

제6장 결론: 대응방안 및 잔여문제(박미숙·강우예) ····· 165
1. 대응방향 ····· 167
2. 조세 정보의 국제적 공유 ····· 168
3. 조세회피처 지정제도 ····· 172
4. 범죄화 ····· 174

참고문헌 ····· 177

Abstract ····· 189

표 차례

〈표 2-1〉 세계 주요 조세피난처의 조세피난 점유율 ····· 30
〈표 3-1〉 유해한 조세특례 지역 (OECD, 2000) ····· 48
〈표 3-2〉 조세회피처의 정의(OECD, 1998)에 부합하는 지역 (OECD, 2000) ····· 49
〈표 3-3〉 미연방의회 보고서에서 지목된 조세천국
(Countries Listed on Various Tax Haven Lists) ····· 53
〈표 3-4〉 금융안전포럼: 주요 금융중심지 목록 ····· 54
〈표 3-5〉 시기별 비협조적 조세회피처 목록(List of uncooperative tax havens) ··· 56
〈표 4-1〉 면세 및 절세 유형 분류 및 해당국가 ····· 64
〈표 4-2〉 조세특전 유형과 지역 ····· 67
〈표 4-3〉 IMF와 FATF의 자금세탁지역 블랙리스트 ····· 81
〈표 5-1〉 국제조세협회(IFA)의 조세피난 식별방법 ····· 131
〈표 5-2〉 법인의 국제 과세 관련 과세 상황의 추이 ····· 141

그림 차례

〈그림 3-1〉 주요 조세회피처 ····· 47

도표 차례

〈도표 4-1〉 이전가격시스템을 이용한 조세회피 유형 ····· 65
〈도표 4-2〉 주요 조세회피처 현황 및 특허등록수(2009년-2013년 11월) ····· 66
〈도표 4-3〉 해외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조세회피 ····· 68
〈도표 4-4〉 이면계약의 해외은닉재산 유형 ····· 69
〈도표 4-5〉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증여세 및 상속세 탈루 ····· 70
〈도표 4-6〉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증여세 탈루 ····· 70

국문요약

조세회피처는 단순히 탈세의 한 방법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불법한 자금이 특정한 제재 없이 유통되고 세탁되는 장소로서 활용되고 있다. 나아가 조세회피처는 전 세계적인 자본투자의 흐름을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왜곡시키는 역할마저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전 세계적인 복리와 후생이 감소하게 되었고, 개별국가의 세입과 세출 정책의 기반까지 흔들리게 되었다.

본래, 조세회피처는 전 세계 조세경쟁의 부분적인 현상으로 나타났지만, 국제거래가 가속화되는 국제화로 말미암아 개별 국가 간의 조세제도는 국내 제도로서의 의미를 벗어나게 되었다. 즉, 각국의 조세제도는 필연적으로 상호간에 일정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하여 개별 국가의 조세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세계화로 인하여 자본 이동이 간소화 되자 개인 및 법인들은 조세를 쉽게 최소화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는 개별 국가들이 세계적인 유동자본과 투자자금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유해한 조세정책을 개발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유발시키기도 하였다. 타국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유해한 조세정책은 정상적이고 건전한 국제거래와 투자의 흐름에 상당히 잠재적인 왜곡현상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이는 전 세계적으로 부의 양까지 감소시킬 것으로 보이며, 특정 국가의 조세제도 개혁은 타국의 조세 기반을 침식하고 심지어 조세 구조를 비자발적으로 변경시킬 수도 있다.

최근, 조세회피처에 대한 문제가 다시 부각되게 된 계기는 미국, 유럽 각국, 일본 등의 국가들이 재정난을 겪게 되면서 부터이다. 거대 자본과 기업들이 해당국에서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았지만 그 국가에 기여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소득과 수익을 조세회피 지역으로 빼돌리는 스캔들이 탐사보도를 기획하는 일부 언론에 의하여 밝혀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결국, 조세회피처를 경

유한 탈세와 조세회피는 국가 공동체 정의의 관념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를 넘어 건전한 경쟁이 작동해야 할 국제 자본시장의 흐름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 보여주고 있다.

또한, 조세회피처는 각종 범죄수익의 유통지로서 역할을 하면서 자금세탁의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종래, OECD 등에서는 조세회피처가 탈세와 불법의 자금세탁 거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정도에 그쳤다. 그러나 최근 FATF를 비롯하여 조세회피처 문제를 논하는 데 있어 국제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 확산행위와 자금세탁 간의 관계를 주목하고 있다.

조세회피처의 의미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세회피처를 정의할 수 있는 항목들은 단일하지 않고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우선 소득에 대한 과세율이 무의미할 정도로 낮거나 무과세를 유지하는 정책에 대해서 주목해야 한다. 무엇보다, 거래의 불투명성을 조장하는 은행비밀주의가 조세피난처를 유해하게 활용하는 도구로서 그 기능이 강화되고 뒷받침되기도 한다. 나아가, 특정 회사가 조세회피처에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경제 활동을 할 필요가 없다. 이외 다양한 항목들이 경제개발기구(OECD)의 조세회피처 대응방안(tax shelter initiative)에서 사용되고 있다.

현재, OECD, FATF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조세회피처를 지목하여 해당 지역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OECD는 주로 조세회피 행위의 방지와 제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FATF는 불법자금세탁행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

특히, FATF는 자금세탁방지 비협조지역에 대해 현재 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 확산활동 방지와 관련된 금융제재의 틀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대응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비교법적으로도 조세정책의 기반을 보호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입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가장 강력한 역외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대책을 담고 있는 미국의 「조세회피처 오용 방지 법안(the Stop Tax Haven Abuse Act)」은 조세회피처를 지목하고 이와 연관된 행위에 대해서 반증 가능한 추정 제도를 사용하고, 예외적 과세조항들을 다수 신설함으로써 조세회피처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탈세와 조세회피로 인해 매년 1,600억 유로에 달하는 국고가 부족하게

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조세회피 행위 방지를 위한 탈세예방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일본 또한 조세피난대책 세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그 도입배경에는 미국을 비롯한 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다국적 기업의 해외 사업 전개에 따른 조세회피 행위에 대응할 필요성이 강하게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조세회피처에 해당하는 국가들에 대하여 압력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조세를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에서 간섭할 수는 없다. 또한, 조세회피처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법인이나 자연인에 관한 정보를 조세회피처의 정부당국에 요청한다 해도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금융 정보축적과 보고에 대한 부담은 결국 해당지역의 금융기관이 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비밀주의를 철회하고 금융정보의 보고와 공개에 비용을 부담하는 국제적 기준을 준수한다면 조세회피처의 금융기관은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

제1장

서론

박 미 숙

01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본 연구는 조세회피처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위법행위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조세회피처는 단순히 조세 회피를 위하여 이용되는 장소로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조세회피처는 불법한 자금이 특정한 제재 없이 유통되고 세탁되는 장소로서 활용되고 있다. 나아가, 조세회피처는 전 세계적인 자본투자의 흐름을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왜곡시키는 역할마저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복리와 후생이 감소한다는 우려섞인 시선을 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처의 공격적인 조세정책은 많은 개별 국가의 세입과 세출 정책의 기본마저 흔들고 있다. 조세회피처를 활용하는 개인과 기업들은 자국의 기반시설, 교육시스템과 법제도 등에서 혜택을 누리면서, 해외에서는 본인의 혜택에 대해 부담하는 납세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조세회피처는 국내 조세법 제도를 우회하여 조세회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우선 조세회피처에서는 투자자가 자본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를 하지 않거나 해당 투자자가 실제 거주하는 국가에 이러한 소득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즉, 조세회피처에서는 대체로 면세 및 금융비밀이라는 환경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1] 또한, 조세회피처는 타 지역 보다 높은 수준의 각종 비조세적 규제의 완화 내지 철폐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2] 이를 통해, 역외의 조세회피처는

국내의 금융중개기관(financial intermediary)에서 해당 조세천국 내의 금융중개기관으로 국내 납세자들의 자본이 투자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3)]

조세회피처로 유입된 대부분의 자본은 해당 지역의 건물이나 설비와 같은 고정자산 혹은 경영인 및 근로자 등과 같은 인적자산의 고용에 투자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조세회피처의 경제규모는 매우 작고 유입된 자본의 일부분만이 해당 지역에 투자된다. 반면, 생산적인 목적 하에 자본이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장소는 조세회피처 외의 별도의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이에, 조세회피처는 투자자본이 종착지로 향하는 중계 장소(entrepôt) 내지 유통로(conduit)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4)] 이로 인하여 조세회피처가 국제적인 자본 유통을 왜곡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조세회피처를 단지 불법의 온상이라고 규정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원래, 조세회피처는 전 세계적인 조세경쟁에서 나타나는 부분적인 현상일 뿐이다.[5)] 국제거래에 있어 가속화되는 국제화로 말미암아 개별 국가 간의 조세제도는 국내의 제도로서의 의미를 벗어나게 되었다. 즉, 각국의 조세제도는 필연적으로 상호간에 일정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대폭적인 조세 개혁은 타 지역의 조세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국적

---

1) Richard A. Gordon, Tax Havens and Their Use by United States Taxpayers-An Overview 15, 17 (1981).

2) *Id.*, at 22-23.

3) 해당 정보에 대해서는 OECD, Towards Global Tax Co-operation: Progress in Identifying and Eliminating Harmful Tax Practices 17 (2000), available at http://www.oecd.org/tax/transparency/44430257.pdf; Luca Errico & Alberto Musalem, Offshore Banking: An Analysis of Micro- and Macro-Prudential Issues 10-11 (IMF, Working Paper No. 99/5, 1999) available at http://www.imf.org/external/pubs/ft/wp/1999/wp9905.pd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FATF], FATF Review to Identify Non-Cooperative Countries or Territories: Increasing the Worldwide Effectiveness of Anti-Money Laundering Measures 2-10 (June 22, 2000), available at http://www.fatf-gafi.org/media/fatf/documents/reports/2000%202001%20NCCT%20ENG.pdf.

4) Richard A. Gordon, Tax Havens and Their Use by United States Taxpayers-An Overview 32-41 (1981).

5) 우리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케이만군도, 버뮤다,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라고 일컬어지는 곳들에 대한 송금액은 2008년 1조4671원, 2009년 7106억원, 2010년 1조2341억원, 2011년 8233억원, 2012년 1조5480억원에 달한다. 지역별 송금액은 케이만군도에 35억9000만달러, 버뮤다에 14억3000만달러, 버진아일랜드에 4000만달러에 달한다. 2012년에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개인과 법인은 각각 20명과 175곳에 달한다. 한겨레, 조세회피처 3곳으로 5년간 5조8000억 빠져나갔다(2013. 7. 11).

기업의 경우 회계상의 소득(accounting income)과 과세제도에 기초한 소득(taxable income) 간에 큰 괴리가 발견되고 있는 것은 조세회피처의 활용이 광범위 하다는 간접적인 증거중의 하나이다.[6] 특히, 신자유주의의 확산은 국제통상과 투자에 대한 과세 장벽을 철폐하게 했다. 이는 특정 국제지역 블록 단위 및 전 세계적인 수준에서 각국의 경제가 상호간에 더욱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게 한 중요한 요인이다.

사실, 세계화로 인한 자본의 이동은 각국이 조세기반(tax base)을 확대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세계화 과정 속에서 역으로 세율 감축(rate reduction)을 중심으로 한 조세제도의 왜곡을 최소화하는 조세 개혁 움직임이 일어났다. 국가 간의 장벽 철폐의 물결이 거세진 후에 각국은 자본유치를 위하여 세입·세출과 관련된 재정적 환경(fiscal climate)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세제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즉, 세계화 과정은 자본의 이동이 가속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각국의 조세제도를 현대화하도록 유도했다.

다만, 세계화로 인한 자본 이동이 간소화 되자 개인 및 법인들은 조세를 쉽게 최소화하고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는 개별 국가들이 세계적인 유동자본과 투자자금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상호 약탈적인 유해한 조세정책을 개발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타국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상호 약탈적인 조세정책은 정상적이고 건전한 국제거래와 투자의 흐름을 잠재적으로 상당히 왜곡할 수 있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결국, 상호 약탈적 조세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창출되는 부의 총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특정 국가의 조세제도 개혁은 타국의 조세 기반을 침식하고 심지어 조세 구조를 비자발적으로 변경시킬 수가 있다. 특히, 이러한 환경에서는 조세정책을 통한 재분배 목표의 달성 등 진보적인 조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점차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국제적인 조세정책 개혁과 관련된 압력이 모든 국가의 조세기반을 조정해야 하는 반강제적인 조세 구조의 변경으로 귀결되었다.

종래 20년간 G7, IMF, OECD, FATF 등의 국제기구에서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조세포탈 및 자금세탁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근, 조세회피처와

6) 이찬근, 조세피난처의 이중 구조, 무역학회지 제38권 제5호, 2013. 11, 320면.

관련한 목소리가 다시 크게 부각되게 된 계기는 미국, 유럽 각국, 일본 등의 국가들이 재정난을 겪게 되면서부터이다. 특히, 최근 G20 회의에서 조세회피처가 발생시키는 문제들에 대한 보다 분명한 지적들이 있었다.[7)]

나아가, 거대 자본과 기업들이 자신들의 소득과 수익을 조세회피 지역으로 유출시킨 스캔들이 일부 탐사보도를 기획하는 언론에 의하여 밝혀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8)] 특히 우리의 경우 론스타가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특수목적회사를 활용하여 외환은행을 인수 및 판매하는 과정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과세를 회피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낳았다.[9)] 이외에도, CJ 그룹과 시도상선의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조세포탈행위에 대한 혐의가 드러나는 것을 비롯하여 많은 대기업들의 조세회피처 이용 사실이 밝혀지면서 우리 사회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역외 조세회피처로 이탈한 재산은 총 7,790달러로 추산되며, 이는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액수라고 평가된다.[10)] 나아가, 최근 스위스의 스위스연합은행(UBS) 내지 리히텐슈타인의 국제신탁그룹(Liechtenstein Global Trust Group, LGT)과 미국 및 기타 국가들간의 소송 사건은 국제 조세문제에 깊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조세회피처를 경유한 탈세와 조세 회피는 국가 공동체의 정의의 관념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

조세회피처가 발생시키는 문제는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한다는 것에 제한되지 않는다. 조세회피처는 국내 거주자들이 엄격한 규제(prudential regulation)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각 국의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안전성 전반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우선, 조세회피처의 정부당국은 일반적으로 준법프로그램의 적절한 규제제도를 마련하여 집행하지 않는다.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은행은 스스로의

---

7) Anthony Faiola and Mary Jordan, "Tax-Haven Blacklist Stirs Nations: After G-20 Issues mandate, Many Rush to Get Off Roll," *Washington Post*, April 4, p. A7.

8)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The International Consortium of Investigative Journalists), available at http://www.icij.org/

9)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박혜림, 초국가적 조세회피범죄에 대한 형사정책,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16권 제3호, 2012. 3.

10) 김경환, 조세피난처 편법운용 강력한 규제 필요, 머니투데이 (2013. 5. 27.)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52613580676109&outlink=1.

건전성을 위협하는 방식의 영업을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규정상 금지된 최소자본을 초과하는 대출관행을 비롯하여 채무불이행 혹은 자본편중 위험에 대한 통제실패가 해당된다. 또한, 은행 허가 시 조세회피처는 해당은행의 소유자나 지배자가 적절한지를 심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은행은 영업실패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여신자 내지 예금자가 이탈하는 가능성까지 높아진다. 이러한 경우 상황이 악화되면, 하나의 금융기관이 부실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전체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11] 이는 조세회피처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며 다른 지역의 금융시스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다.

한편, 조세회피처는 각종 범죄 수익의 유통지 역할을 하며 자금세탁의 중요한 거점이 되고 있다. 종래,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각국 의회 및 정부에서는 조세회피처가 탈세와 불법 자금세탁 거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면에 주목하는 정도에 그쳤다. 반면, FATF는 특히 최근에 조세회피처 문제를 논하는데 국제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 확산행위와 자금세탁 간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 자금이 조세회피처의 느슨한 규제망을 활용하여 이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세회피처는 국제적 불법자금 규제와 관련된 논란의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제2절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조세회피처의 의미 및 조세회피처에서 이루어지는 위법행위를 비롯한 유해행위에 대한 평가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조세회피나 자금세탁의 범위 및 그 효과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사실, 조세회피나 자금세탁은 불법적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진정한 규모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12] 또한, 본 연구의

11) Vincent P. Polizatto, Prudential Regulation and Banking Supervision: Building an Institutional Framework for Banks 1, World Bank, Working Paper Series No. 340, (1990).

12) H. Gnutzmann, K. J. McKarthy, & B. Unger, Dancing with the Devil: Country Size and the

목표는 조세회피 행위와 관련된 실증적 현황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즉, 본 연구는 조세회피처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유해행위 및 위법행위와 이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을 규명하는 것을 주된 대상으로 삼았다.

종래 조세회피처와 관련된 연구는 은행비밀주의의 해제와 정보의 공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본 연구 또한 은행비밀주의를 중요한 소재로 삼을 것이지만 이에 한발 더 나아가 세계 자본주의의 변화 속에서 조세회피처의 의미에 대해 짚어보는 데에도 상당한 지면을 할애했다. 이를 통해 조세회피처와 관련한 자본 이동에 대한 통제의 적절성 문제까지 함께 논할 것이다.

조세회피처에 대해 논의가 세계적인 수준에서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8년 OECD가 발간한 보고서 「유해한 조세경쟁(Harmful Tax Competition)」[13]에서부터이다. OECD에서 금융과 재정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위원회는 '조세경쟁과 관련한 특별 회기(Special Sessions on Tax Competition)'를 구성했다. 프랑스와 일본이 이 특별 회기의 의장국으로 선임되어 「유해한 조세경쟁(Harmful Tax Competition)」 보고서를 준비하고 제출했다. 동 위원회의 보고서가 제출된 후에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출판되었을 뿐만 아니라, G7, G20 및 FATF에서도 본격적으로 조세회피처를 의제로 삼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조세회피와 관련된 주요 논의로서 1998년 OECD의 보고서 「유해한 조세경쟁(Harmful Tax Competition)」을 기점으로 하여 그 이후의 논의와 해당 쟁점의 변화를 추적하고 기술하는 것을 일차적인 연구범위로 삼았다. 경제개발기구(OECD) 등에서 조세회피처 대책(tax shelter initiative)에서 논의된 바에 의하면,[14] 현재까지 조세회피처의 의미에 대해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도 본 연구의 중요한 쟁점이다. 사실, 조세회피처를 정의할 수 있는 항목들은 단일하지 않으며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우선 조세회피처를 정의함에 있어서 소득에 대한 과세율이 무의미할 정도로 낮거나 무과세를 유지하는 정책에 대하여 주목할

Incentive to Tolerate Money Laundering. 30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244, 2010.

13) OECD, Harmful Tax Competition: An Emerging Global Issue, 1998.

14) Jane G. Gravelle, Tax Havens: International Tax Avoidance and Evasion,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Jan. 23, 2013, 1-2.

필요가 있다. 특히, 거래의 불투명성을 조장하는 은행비밀주의가 조세피난처의 유해한 활용을 강화하는 도구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나아가, 조세회피처에서는 특정 회사가 조세회피처에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경제 활동을 할 필요가 없다. 이외에도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구, G7, FATF에서 조세회피처와 관련된 평가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준들의 적절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조세회피처가 탈세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불법자금의 유통경로가 된다는 점을 주요 연구대상으로서 검토하고자 한다. 이 부분은 FATF를 중심으로 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구성하고 있는 전 세계 금융체계와 금융감독제도의 재편이라는 맥락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는 조세회피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법행위와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하기 위하여 주요국의 제도와 국제기구의 권고안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우선, 미국, 독일, 일본의 조세회피처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방안들을 소개했다. 나아가, 조세회피처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OECD의 여러 보고서들을 분석하여 기술했다. 또한, FATF가 제시하고 있는 테러리즘 등 현안이 되고 있는 초국가적 범죄가 조세회피처를 경유하는 현상과 이에 대한 대응책은 본 연구의 중요한 소재가 되었다.

제2장

조세회피처의 성립배경

박미숙·강우예

02

조세회피처의 성립배경

제1절 국내 조세정책의 확장과 세계화

1. 국가 조세정책의 효력

조세 정책은 국가 내의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에 대처하며 발전한다. 조세 정책은 단순히 세출에 상응하는 세입이라는 측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조세의 형식과 수준은 특정 국가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자원의 배분, 사회의 안정, 부의 재분배와 관련한 합의된 목표를 바탕으로 설정된다. 각국의 조세의 수준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거나 낮을 수 있다. 조세 기반 또한 각국의 사정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구성된다. 사실, 조세율을 낮추고 조세기반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한 국가가 타국 보다 재정적인 기반(fiscal infrastructure)을 현대화하는 것은 국내정책의 문제이다. 즉, 각국은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기준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조세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15)]

사실, 자본의 이동이 제한된 경우에는 국가 간 조세제도의 상호작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며 큰 영향력도 없다. 나아가 높은 세율과 이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정부지출을 선택할 것이지 아니면 낮은 세율과 상대적으로 제한된 공공 지출이 가능한 정부형태를 택할 것인지, 조세의 형태로 직접세와 간접세를 어떠한 형

15) OECD, *supra* note 13, at 15.

태로 혼합할 것인지, 해외 자본에 대해 조세를 통한 유인책을 사용할 것인지는 개별 국가의 국내 제도적인 관점에서 결정된다. 또한, 특정국에 수립된 조세제도는 무엇보다 해당국의 거주자와 경제에 영향력을 미친다. 즉, 일국 중심의 조세제도는 타국의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효과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고 여겨졌다.[16]

2. 세계화와 조세

폐쇄적 경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국내 조세제도조차 국내 거주자의 해외원천수입에 대한 과세를 한다든지 조세 기반(tax base)에 비거주자의 국내수입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일면 국제적인 측면이 있다. 무역 및 투자 국제화의 가속화는 각국의 조세제도 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국제 통상과 투자에 대한 비과세 장벽의 철폐로 인한 국가 간 경제 통합은 한 국가의 조세정책이 다른 국가의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증대시켰다. 즉, 세계화는 각국의 조세기반(tax base)의 확대와 세율감축(rate reduction)을 가져왔다.

세계화의 가속이라는 환경 하에 각국은 조세로 인한 자본의 흐름이 지연되고 왜곡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조세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또한, 각국은 투자유치를 위한 재정 환경(fiscal climate)을 적절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조세 제도와 공공지출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세계 각국은 자본의 흐름과 관련된 조세 장벽을 축소하거나 철폐했다. 결국, 전세계적인 자본시장의 발전은 의도치 않게 자본이동에 최적화된 조세제도의 현대화라는 결과를 불러왔다.[17]

즉, 국제시장에서 국가 간의 조세정책과 관련된 경쟁이 격화되는 것은 자본의 주체인 기업이 빠르게 변화하고 이동하는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다국적 기업들이 국제적 전략을 개발하고 집행하는데 있어 특정 국가와의 연관성은 상대적으로 미약하게 되었다. 또한, 기술적인 혁신은 다국적 기업들의 경영방식을 근본적으로

16) *Id.*, at 13.

17) *Id.*, at 13-14.

변화시켰다. 무엇보다, 다국적 기업의 경영 및 기타 활동에서 발생하는 물리적인 위치의 중요성이 줄어들었다. 국경을 넘는 자본 흐름은 이윤창출에 유리한 조세정책을 따라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전세계적으로 재편된 조세 체계하에서 국제 금융시장은 계속해서 팽창한다. 이로 인하여 세계적인 복리, 즉 부의 총량이 증가하게 된다는 기대가 있었다.[18]

반면, 세계화로 인하여 기업과 개인들은 조세를 최소화하고 회피할 수가 있게 되었다. 각국은 상호 약탈적인 조세 정책을 개발하여 국제적인 유동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에 직면하게 되었다. 개별 국가의 이익에 최적화된 조세제도는 무역과 투자의 패턴에 잠재적인 왜곡을 가져왔으며 결국 오히려 전 세계적인 복리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정 국가의 혁신적인 조세 개혁은 타국가들의 조세 기반을 침식하거나 조세 구조를 강제로 변형되도록 한다. 결국, 진보적인 조세율 적용과 재분배라는 목표는 도달하거나 설정하기조차 어려운 대상이 되고 만다. 세계화가 조세제도에 가한 압력들은 기업과 개인적인 투자 수익에도 연쇄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19]

사실, 조세회피처[20]는 자본의 흐름을 촉진시키고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향상시키는 전세계적인 자본시장의 일부로서 기능하는 면이 있다. 조세회피처가 아닌 국가들 또한 금융시장을 자유화하고 탈규제화하는 흐름에 동참했다. 조세회피처에서 발생하는 이득은 매우 분명하며 직접적이지만 조세회피처가 발생시키는 부작용(adverse tax effect)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조세회피처가 사용하는 급진적인 조세정책은 타국으로 향하던 금융자본을 탈취하고 약탈하는 면이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문제 중의 하나이다. 조세회피처는 타국의 조세 기반에 대한 침식을 댓가로 취하는 이익으로 연명하는 것이다.

조세회피처는 세금을 최소화하고 금융 비밀을 보호하기 때문에 기업과 개인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이다. 조세회피처는 세 가지 정도의 뚜렷한 목적하에 자신의 급진적 조세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조세회피처는 소극적 투자자금이 유

18) *Id.*, at 14.

19) *Id.*

20) 경제학자들은 자본을 유치할 목적으로 낮은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를 조세천국으로 규정하고 있다. 혹은 단순히 낮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세금이 없는 경우를 조세천국이라 하기도 한다. *Id.*

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조세회피처는 서류상의 명목회사에 특정 자금이 유보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나아가, 조세회피처의 금융기관들은 문제의 계좌 보유자가 속하는 조세당국의 조세의 칼날을 피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세회피처의 정책적 기능들은 직접적으로 기업 및 개인의 소득세 회피와 탈세를 용이하게 한다. 이는 조세회피처로 유출된 자본이 속하는 국가의 세입뿐만 아니라 조세 제도와 경제 전반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3. 세계 조세회피현황

전세계 조세회피처에 있는 은닉되어 있는 자산규모는 대략 21조 달러(약 2경 2천 50조원, 적용환율 1달러=1,050원)에서 32조(3경 3천 600조원) 달러 사이로 추정되고 있다.[21]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조세피난처는 스위스를 꼽을 수 있는데, 주요 조세피난지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1 세계 주요 조세피난처의 조세피난 점유율[22]

조세피난처	조세피난 점유율
스위스	29%
영국 및 채널 제도	20%
룩셈부르크	12%
캐이먼 제도, 바하마, 버뮤다	10%
미국	8%
싱가포르	8%
홍콩	4%
기타	9%

21) http://www.spiegel.de/wirtschaft/soziales/studie-zu-steuerflucht-reiche-bunkern-21-bis-32-billionen-im-ausland-a-845747.html

22) Merten, Steueroasen Ausgabe 2014 - Wandel in der Offshore-Welt, 2013, S. 80.

제2절 국제적 조세경쟁

1. 차별적 조세율

조세경쟁과 조세 제도의 상호작용은 몇몇 국가에는 부정적이고 유해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다른 국가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특정 국가는 조세정책을 새로운 투자를 자극하는 투자유인책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세회피처는 이에 한 발 더 나아가 다른 국가로의 실제적인 자본 투자를 전환하고 탈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많은 조세회피처는 저소득, 적은 인구, 자연자원의 부족 등과 같이 구조적으로 불리한 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지역 내지 국가는 자본 유치라는 전세계적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특별 조세 유인책(special tax incentives) 등의 조세 제도(tax regime)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사실, 특정 국가의 자본 유치를 위한 경쟁력에는 조세뿐만 아니라 수많은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 국제 사회가 조세를 통한 지나친 조세정책의 잠재적인 부작용에 대해 우려할 수 있을지라도, 조세를 인센티브로 사용하는 국가의 경우 이를 정당화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다.[23]

조세천국(tax haven), 조세회피처(tax shelter) 혹은 역외금융중심지(offshore financial center)들이 자본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통상, 조세회피처라고 하는 지역들은 자본투자를 통한 소득이 발생시킬만한 인적·기술적 환경이 조성 되어 있지 않는 곳이다. 그러므로 조세천국 자체에는 자본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해당 지역은 자본이 특정 지역에서 특정 지역으로 이동하는 통로일 뿐이다.[24] 또한 조세천국은 매우 적은 규모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물품을 생산할 수 없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 따라서 소득세나 법인세 보다는 수입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여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다.[25] 사실, 경제학적으로도 간접세가 소득세인 직접세 보다 바람직하다고 하며, 자본 소득에 과세를 하는 것은

23) OECD, *supra* note 13, at 15.

24) Michael J. Graetz, Foundations of International Income Taxation 157 (2003).

25) Craig Boise, Regulating Tax Competition in Offshore Financial Centers (Case Research Paper Series in Legal Studies, Working Paper No. 08-26, 2008) at 25.

저축을 억제하는 효과를 지닌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면이 있다.[26]

즉, 각국의 조세 정책은 항상 균일할 수 없고 불균형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국의 국경과 관할을 넘는 형태의 조세회피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조세의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는 유럽연합과 같은 경제적 공동체 내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포르투갈 회사들이 정체불명 서류상의 회사를 네덜란드에 만들어 자신들의 지주회사를 옮기는 것과 같은 행태[27]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조세제도의 차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조세회피는 합법적인 형태도 있으며 불법적인 형태도 있다.[28] 이 합법적인 조세 회피와 불법적인 탈세와의 경계선은 매우 모호하다. 만일 세금이 낮은 국가에 현지공장을 건설하는 다국적 기업은 합법적인 조세 회피에 속한다. 반면, 캐리비언(Caribbean) 제도에 비밀 은행계좌를 가지고 이자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불법적인 탈세에 해당한다.[29]

2. 조세특례제도

조세특례제도는 일반적인 조세법제도의 규정 혹은 조세행정실무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것과는 별도로 특별과세 혹은 비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입법을 의미한다. 조세회피처에서는 자본유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주로 조세특례제도를 활용하게 된다. 수많은 국가들이 고도로 이동성이 높은 금융 및 기타 서비스 활동을 유치하기 위하여 이미 조세특례제도(preferential tax regime)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한 국가에서 금융 및 기타 서비스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가 다른 국가에서 동일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 보다 낮은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항목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

26) See, e.g., Andrew Atkeson et al., Taxing Capital Income; A Bad Idea, 23 Fed. Res. Bank Minn. Q. Rev. 1, 11 (1999),

27) Rui Tavares, Bas Eickhout, Question for written answer to the Commission (E-000499/2012) http://www.europarl.europa.eu/sides/getDoc.do?pubRef=-//EP//TEXT+WQ+E-2012-000499+0+DOC+XML+V0//EN

28) Jane G. Gravelle, Tax Havens: International Tax Avoidance and Evasion,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Jan. 23, 2013) 1.

29) *Id.*

① 수입에 대해서 0 혹은 단지 명목상의 세금이 일반적으로 부과된다.
② 개인적인 혹은 기업적인 수입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가 중요한 세원이 될 수 있지만 저과세 혹은 무과세의 특징(preferential features)을 유지하고 있다.
③ 개인적인 혹은 기업적인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가 중요한 세원이 될 수 있지만 유효한 조세율(effective tax rate)이 타국에서 부과되는 것 보다 낮다.

본래, 조세특례제도(preferential tax regime)는 가장 이동성이 적은 경제적 활동 주체를 차등적 조세(tax differential)를 통하여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운영방식이다. 조세특례 제도로 인하여 소위 자본 유치국(host country)의 국내 자본시장 수요와 공급의 열악함이 개선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도는 적극적인 투자 보다는 베이스 컴퍼니[30]의 활동(base company activities) 및 소극적 투자에서 유래한 수입을 목표로 유동 자본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 대체로 성공적인 결과를 불러왔다. 이 제도들은 일반적으로 소극적 투자(passive investments)를 유치하거나 발생한 이익을 서면상으로만 기록하는 제도 및 관행들과 병행해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형태의 조세특례제도는 오직 자본 유인책이라는 특정 목적 이상을 지녔다고 평가할 수 없다. 즉, 조세회피처에서 조세특례제도는 국경을 넘는 자본의 흐름을 일정방향으로 돌리기 위한 유인책으로 설계되었다. 조세회피처에 이 제도가 없는 경우 국제적인 자본과 투자의 흐름이 해당 조세회피처 지역을 거쳐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3. 유해한 조세경쟁

각국의 조세제도에 있어 의도하지 않게 발생한 상호간의 불일치는 매우 유해한 결과들을 불러올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통상, 이러한 조세제도의 불일치는 공격적 조세정책, 즉 고의로 다른 국가의 조세 기반을 침식하는 형태로 조세 제도 간의 상호작용을 이용하는 것과는 구분된다. 이 의도하지 않은 불일치는 하나의 국가 혹은 양국 모두에 손해를 줄 수 있으며, 개별적인 납세자에 의해서도 이용될 수가 있다.[31]

---

30) 과세 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외국에 설립된 자회사를 가리킨다.
31) OECD, *supra* note 13, at 15.

일반적인 국가들은 국가방위, 교육, 사회안전 및 기타 공공서비스 지출에 대한 재원 마련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무와 제약(obligations and constraints)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세를 과감하게 자본유치의 정책적 수단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그러나, 조세회피처 밖에 거주하는 자는 자신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세율이 0이거나 명목 세율만을 부과하는 조세회피처를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조세회피처에 투자한 자는 결과적으로 자신의 모국에 공공지출의 수혜를 받지만 금융에 대한 기여를 회피하는 무임 승객들이다.[32] 보다 넓은 의미로, 조세천국의 정부와 거주자들 또한 조세회피처 외의 국가가 제공하는 일반적인 공공복리에 대한 간접적인 무임승차자라고 할 수 있다.[33]

다른 말로 하면, 각국의 조세 제도가 상호작용을 함에 따라 조세특례규정을 비롯한 각국의 조세 불일치는 타국의 조세 기반을 침식하게 된다. 각국의 조세제도가 타국에 미치는 여파는 단순히 개별국가의 국내 조세 정책의 부수적인 부작용이 아니다. 근래에 이 조세제도의 불일치는 하나의 국가가 다른 국가의 조세기반을 공격적으로 침식하며 동시에 자본과 금융의 흐름을 전환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34]

따라서, 현재 국제적으로 이동 가능한 활동에서 발생한 수입에 부과되는 특정국의 조세율 보다 매우 낮은 조세율, 즉 유해한 조세특례제도는 문제를 발생시킬 상당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35]

- 금융 흐름과 간접적으로는 실투자 흐름의 왜곡
- 조세 구조의 완전성과 공정성의 침해
- 모든 납세자의 납세의무 이행의 단념
- 조세 및 공공지출의 비자발적 왜곡
- 조세부담의 비이동성 조세 기반인 임금, 재산 및 소비로 비자발적 이동의 야기
- 조세당국과 납세자에 대한 행정적 비용과 이행 부담의 증대

32) *Id.*, at 14.
33) *Id.*, at 15.
34) *Id.*, at 16.
35) *Id.*

특정한 조세가 위에서 나열한 항목의 부정적인 효과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유해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일정국가가 위 항목 중 일부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도 유해한 조세제도를 가졌다고 평가할 수 있으려면 여러 가지 항목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이 항목들을 고려했을 때, 특정 조세 관행에 관한 부작용이 매우 중대해서 다른 국가의 조세 기반을 탈취하는 결과를 불러온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다. 타국의 조세기반을 극심하게 탈취하는 현상을 "유해한 조세경쟁(harmful tax competition)"이라고 부른다.[36] 조세경쟁으로 인한 국제적으로 유해한 조세 관행(harmful tax practice)이 널리 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정상적인 조세기반을 확보하고 자본 내지 금융 흐름에 있어 조세에 기인한 왜곡을 피하며 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전세계적인 복리의 축소현상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수준에서도 특별한 관심과 정책적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36) *Id.*, at 16.

제3장

조세회피처의 의미에 대한 규정

박미숙·강우예

03

조세회피처의 의미에 대한 규정

제1절 조세회피처의 정의

1. 조세회피처의 기본개념

조세회피처 개념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합의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조세회피처 내지 조세천국이라는 용어와는 별도로 자금세탁규정이 느슨한 국가들에 대해서 역외금융중심지(offshore financial center)라는 명칭이 사용되기도 한다.[37] 나아가, 자금세탁중심지역과 조세회피처의 의미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38] 이와 같은 다양한 명칭은 특별한 조세 제도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

37) A. K. Rose & M. M. Spiegel, Offshore Financial Centers: Parasites or Symbionts? 117 Economic Journal 1310 (2007).

38) Peter Schwarz, Money Launderers and Tax Havens: Two Sides of the Same Coin?, 31 Int'l Rev. L. & Econ. 37 (2011). 해외금융센터에 관한 여러 가지 분석 항목 중 자금세탁지역과 조세천국이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 A. K. Rose and M. M. Spiegel Offshore financial centers: Parasites or symbionts? 117 Economic Journal 1310 (2007); D. Dharmapala & J. R. Hines Which countries become tax havens? 93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058 (2009); D. Masciandaro, False and reluctant friends? National money laundering regulation, international compliance and non-cooperative countries. 20 European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7 (2005); D. Masciandaro, Offshore financial centres: The political economy of regulation, 26 European

는 지역을 바라보는 시각과 목적이 다르다는 면에서 기인했다.

한편, 1995년 제정된 우리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조세피난처에 대해서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라고 정의했다.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는 유사한 취지의 내용을 담아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의 15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 국내의 조세와 불공정한 불균형이 있는 지역으로 파악하고,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일부에 대해서는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파악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 경제학자들은 자본을 유치할 목적으로 낮은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를 조세천국으로 규정하고 있다. 혹은, 단순히 낮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세금이 없는 경우를 조세천국이라 한다.[39] 이러한 우리 입법의 조세회피처에 대한 입장이나 경제학자들의 견해와는 별도로, OECD는 낮은 세율 및 무과세를 조세회피처로 규정하는 유일한 요건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 OECD는 조세천국의 의미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40]

- 무과세 내지 초저과세
- 정보의 효과적인 교환 부재
- 투명성 부재
- 중요한 경제적 행위 요건의 부재[41]

기타 항목들은 여러 가지 입법들과 연구자들의 저작을 통하여 제시되어 왔으며 현재에도 개발되고 있다. 대체로, 재정적인 주권 국가들은 재정 및 기타 영역에서의 경제활동을 장려할 세금과 비세금 유인책을 사용한다. 이 국가들은 외국의 투자자에게 무과세 혹은 저세율 과세를 부여하기도 한다. 이 경우 자본유치를 위해

Journal of Law & Economics 307 (2008) 이 연구들에 따르면 자금세탁지역과 조세천국의 목록과 해외금융센터 목록은 많은 부분 중첩된다.

39) Gravelle, *supra* note 28, at 1-2.

40) *Id.*, at 1-2.

41) OECD, *supra* note 13, at 23.

저세율만을 활용지는 않고 다른 기타 규제 및 행정적 제재를 축소하는 조치를 병행한다.

특히, 조세회피는 정보의 부재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조세회피와 관련한 역외 활동은 여러 국가들이 유지하고 있는 엄격한 은행비밀 규정들로 인해서 정보교환의 대상이 아니다.

2. 조세회피처의 유형적 요소[42)]

- **무과세 혹은 명목과세**

  일정 지역이 무과세 내지 명목과세를 하는지, 혹은 과세대상자인 거주자가 속하는 국가의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장소, 방법 및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특히 무과세 내지 명목과세는 조세회피처를 판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다.

  설령 과세를 하는 경우에도 국내원천소득의 정의가 매우 좁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우 적은 소득이 과세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 **정보의 효과적인 교환의 결여**

  저과세 혹은 무과세 지역에서 조세특례의 혜택을 받는 자와 관련한 정보를 타국과 교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과 행정 관행이 존재하는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의 관련 제도를 이용하는 자는 조세당국의 조사에 대항한 엄격한 비밀 규정과 기타 보호책들이 제공하는 이득을 누리게 된다.

- **투명성의 부재**

  사법 혹은 행정적인 법제도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의 부재는 조세회피처를 규정하는 또 다른 요소이다.

- **실질적인 활동의 부재**

  조세특례제도만으로 투자 혹은 거래를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제도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

42) *Id.*

조세회피처를 규정하는 데에 있어 무과세 혹은 명목과세를 제외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조세의 행정적 집행에 있어서의 투명성 부재이다. 입법, 행정, 사법작용에서의 투명성의 부재는 금융정보의 외부 유출을 불가능하게 한다. 정보 유출의 불가능성 때문에 조세회피처에 대한 투자자들은 조세 회피행위뿐만 아니라 조세포탈 및 자금세탁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를 비교적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몇몇 조세회피처들은 금융기관이 조세당국에 투자자에 대한 정보를 제도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지역의 조세당국은 이와 같은 정보를 강제적으로 수집할 권한이 부족한 경우도 많다. 따라서, 조세회피처는 타국과 조세 조약 혹은 다른 형태의 공조 채널(mutual assistance channels)하에 의미 있는 정보를 교환할 가능성이 낮다.

조세법을 정확하고 적시에 적용하기 위하여 요청되는 정보에 대한 조세당국의 접근이 제한된다는 사실, 즉 정보를 효과적으로 교환하는 통로가 없다는 것이 조세회피처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특정한 조세회피처에 해당하는 지역은 조세회피처 이외 지역과 마약 등 특정범죄 관련 형사정보를 교환하기로 하는 형사사법공조(mutual legal assistance)를 위한 조약을 체결하거나 조세 사기(tax fraud)가 문제되는 경우 은행 정보를 교환하는 조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처들은 타국의 조세당국이 조세회피를 포착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쉽게 허용하지 않는다. 금융 및 기타 서비스 활동의 수익을 극대화하고 기반시스템의 침식을 방지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조세회피 방지는 조세사기 방지만큼 중요하게 취급되기도 한다.

덧붙여, 해당지역이 순전히 조세만을 통하여 투자와 거래를 유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실질적인 경제 활동의 부재를 문제 삼지 않는다는 항목 또한 중요하다. 조세회피처에 해당하는 지역은 통상 법적·상업적 활동을 위한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세를 최소화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사업 활동에 의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반영한 자구책의 일환이다. 사실, 실질적인 활동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자체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조세회피처에서의 금융 거래와 경영 서비스의 제공은 그 자체로 실질적인 경제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서류상 명목회사(paper companies)들을 매개로 한 활동

은 확실히 실질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세 이외의 요인인 완화된 규제 제도와 견고한 사업 기반 또한 조세회피처의 성공과 관계가 있다. 조세회피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비조세적 측면은 조세회피처의 비 조세회피처 국가와의 관계에 비추어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조세회피처를 활용하는 자는 자신의 모국이 제공하는 외교적·금융적 기타 기반시설 및 제도에 대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익만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3. 유해한 조세특례제도[43]

조세회피처 내지 역외금융중심지에서 자본유치를 위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로 조세 특례 제도이다. 이 조세 특례제도가 타국의 조세정책을 침식하고 자본을 부당하게 탈취하는 경우 유해하다고 규정한다. OECD는 유해한 조세특례제도(harmful preferential tax regime)를 규정하는 데에 있어 4가지 주요한 요소를 활용하고 있다.

가. 저세율 과세 혹은 실질적인 무과세(a low or zero effective tax rate)

관련 소득에 대한 저세율과세 혹은 무과세(a low or zero effective tax rate)는 차별적 조세 제도가 유해한지를 평가하는 출발점이다. 조세율(schedule rate) 자체가 매우 낮거나 조세기반을 결정하는 방법 때문에 무과세 혹은 저세율의 과세가 발생한다. 유해한 차별적 조세 제도는 저세율 혹은 실질적인 무과세가 혼합된 경우를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로 한다.

나. 지역특구(ring-fenced)

국제사회는 조세회피처의 유해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국내 경제로부터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분리된 특정지역의 조세정책에 주목한다. 이 지역특구(ring

43) *Id.*

fencing)는 자본유치와 관련한 제도가 수반할 수 있는 유해한 효과로부터 해당 국가의 전체 경제시스템을 보호한다. 따라서, 해당 국가는 지역적 조세특구의 차별적 조세제도가 가할 수 있는 전체 금융제도 및 경제에 있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러한 지역특구(ring fencing)는 몇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 지역특구에 마련된 유해한 차별적 조세 제도는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 해당국에 거주하는 납세자가 이 조세특례 제도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
  특정국에 속하는 기업이 해당국가에 수립된 지역특구의 차별적 조세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는 다른 국가의 조세정책에 부정적인 효과를 낳는 등 소위 유해한 부작용이 극대화 되도록 한다.

- 반대로, 지역특구의 유해한 조세특례제도로부터 혜택을 받는 기업은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 해당국의 국내시장에서 활동하는 것이 금지된다. 유해한 조세특례제도를 지역특구에 제한하는 것은 국내 경제를 해당 조세제도가 발생시킬 수도 있는 부작용으로부터 보호(insulate)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즉, 그러한 특수제도 속에서 설립되고 운영되는 기업은 국내 시장에 운영되는 것이 명시적으로 금지될 수 있다.

다른 경우에는, 국내 화폐제도가 조세특례제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도를 채택하면서 국내 통화를 통한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 불투명성(non-transparent)

조세회피처가 유해한 조세특례제도의 운영하는데 있어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타국이 이에 대한 방어적인 정책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요인이다. 주로, 불투명성은 조세특례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방식에서 발생한다.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조세제도의 운영은 통상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조세당국이 조세제도의 규정을 납세자에 대해 적용하기 위한 명확한

요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조세당국은 조세제도의 세부적인 기준이 특정 납세자에 대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제도들은 유해한 조세경쟁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불투명한 제도는 수혜자들에게 조세당국과 협상할 수 있는 여지(latitude)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는 비슷한 환경에 있는 납세자에 대한 불평등한 처우로 귀결된다. 여기서, 불투명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생한다.

라. 효과적인 정보교환의 부재

차별적인 조세제도의 운영의 혜택을 받는 납세자에 대한 정보의 교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은 유해한 조세경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징표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다른 국가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의 능력과 의사는 관련 제도가 유해한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사실, 비밀보호법은 특정 국가의 조세당국이 차별적 조세제도의 혜택을 받은 자국의 납세자 관련 정보를 타국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공식적으로 비밀보호법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정책과 작용은 얼마든지 정보의 교환을 가로막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국은 조세 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 기업과 그 기업의 고객들 간의 특정 거래에 대해서는 OECD 모범 조세 협약의 26조 제2항(c)하에서 공개필요성이 없는 영업비밀(business secret)이라고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차별적 조세제도를 가진 국가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 타국에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비협조적일 수 있다. 나아가, 조세회피처에 속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세당국 및 기타 규제당국에서 실시하는 일반적인 감독 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또한 차별적 조세제도가 유해한지를 판단하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인 감독 작용의 부재는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를 정부당국이 수집할 기회가 없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법제도, 행정작용 및 국제적 협력에 있어 정보 제공 내지 교환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은 차별적 조세 정책이 유해한 조세경쟁으로 귀결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항목 중의 하나이다.

마. 기타 요소들

유해한 차별적 조세제도를 규정하는 것을 조력할 수 있는 기타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1) 조세 기반에 대한 인위적인 정의(An artificial definition of the tax base)

대부분의 국가에서 조세법은 일정한 경우 조세 기반을 좁힐 수 있는 많은 규정들을 지니고 있다. 이 조세기반을 좁히기 위한 규정들은 인플레이션의 효과를 상쇄하거나 특정한 형태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줄이라는 것과 같은 정당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조세기반을 축소하는 규정들이 합리적인 조세정책의 목적을 넘어 과도하게 활용되는 경우들이 있다. 특히, 경제적 및 사법적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일반적인 수단을 넘어서는 기준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조건적인 참여 면제 혹은 자본 취득 기준이 이에 해당한다. 이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상응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지만 비용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준, 실질적으로 발생되지 않은 비용을 위하여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기준, 과도하게 관대한 보관비용(overly generous reserve charges)을 허용하거나 특별 목적으로 조세 기반을 축소하는 기준들이 포함된다.

사실, 조세 기반을 변경하는 조치들과 관련된 이면의 가장 큰 문제는 불투명성이다. 법과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불투명성이 존재한다면, 특정 국가에 투자하는 모든 기업이 동일하게 효과적인 조세율(effective tax rate)의 적용을 받을 것인지를 확신하기 어렵다. 만일, 사실상 적용되는 조세율이 이처럼 다양한 경우 조세제도는 납세자들 사이에 있어 더 이상 중립적이지 않다.

2) 국제적인 이전 가격 원칙의 미준수
(Failure to adhere to international transfer pricing principles)

기업 내 거래를 규율하기 위하여 설정된 '이전 가격 원칙(international transfer pricing principles)'은 다국적 기업의 전반적인 조세 부담과 국가에 걸친 조세 기반의 분할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들이다. OECD의 1995년 지침은 이

경우 국가들이 '독립기업간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1995년 지침은 이 지침의 적용방식을 결정하는데 있어 이전가격(transfer pricing)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들은 구체적 사건들의 사실과 정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44]

제2절 조세회피처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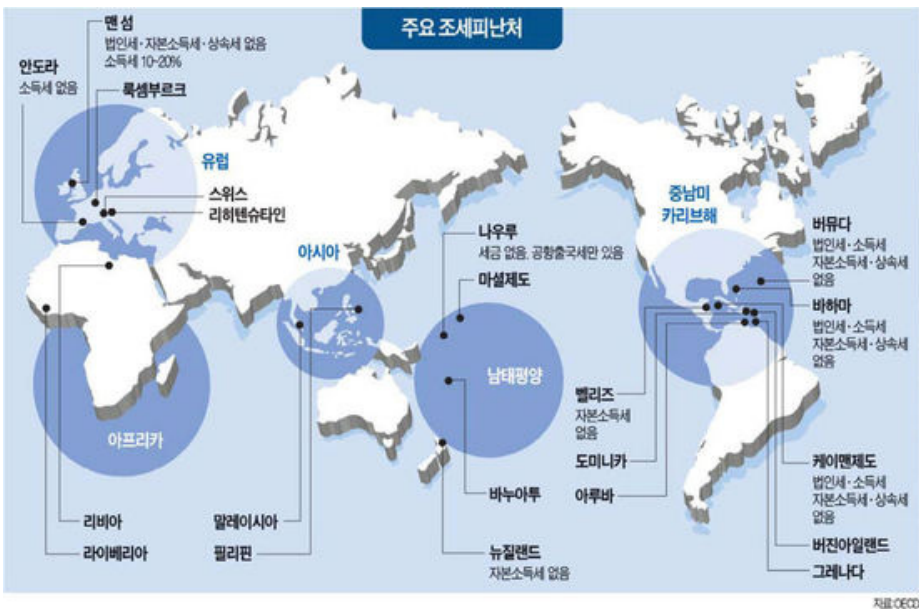

그림 3-1 주요 조세회피처[45]

1. OECD의 유해 조세특례 지역 목록(the preferential tax regimes identified as potentially harmful are)[46]

OECD는 2000년에 유해한 조세특례 지역의 목록을 발표했다. OECD의 조세회

44) *Id.*

45) 한국경제신문, 2011,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41520911

46) OECD, *supra* note 3, at 12.

피처 목록에는 OECD 회원국에 해당하는 아일랜드와 스위스와 같은 저과세 지역은 배제되어 있다. 또한, OECD 목록은 보험, 금융 및 리스, 펀드운용, 은행 등의 범주로 나뉘어져 있다.

표 3-1 유해한 조세특례 지역 (OECD, 2000)

보험(Insurance)
- 오스트레일리아
- 벨기에
- 핀란드
- 아일랜드
- 포르투갈
- 룩셈부르크
- 스웨덴

금융 및 리스(Financing and Leasing)
- 벨기에
- 헝가리
- 아이스란드
- 아일랜드
- 이탈리아
- 룩셈부르크
- 네덜란드
- 스페인
- 스위스

펀드 운용(Fund Managers)
- 그리스
- 아일랜드
- 룩셈부르크
- 포르투갈

은행(Banking)
- 오스트레일리아
- 캐나다
- 아일랜드
- 이태리
- 대한민국
- 포르투갈
- 터키

본부 체제(Headquaters regime)
- 벨기에
- 프랑스
- 독일
- 그리스
- 네덜란드
- 포르투칼
- 스페인
- 스위스

쇼핑(Shopping)
- 캐나다
- 독일
- 그리스
- 이태리
- 네덜란드
- 노르웨이
- 포르투갈

물류 중심 체제(Distribution Center Regime)
- 벨기에
- 프랑스
- 네덜란드
- 터키

서비스 중심 체제(Service Centre Regime)
- 벨기에
- 네덜란드

기타(Miscellaneous Activities)
- 벨기에
- 캐나다
- 네덜란드
- 미국

표 3-2 조세회피처의 정의(OECD, 1998)에 부합하는 지역 (OECD, 2000)[47]

안도라(Andora)
안길라(Anguilla): 영국의 해외 영토
안티구아 및 바부다(Antigua and Barbuda)
아루바(Aruba) – 네덜란드령
바하마(Commonwealth of the Bahamas)
바레인(Bahrain)
바르바도스(Barbados)
벨리즈(Belize)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ritish Virgin Islands): 영국의 해외영토
쿡 제도(Cook Islands): 뉴질랜드
도미니카(the Commonwealth of Dominica)
지브롤터(Gibralter): 영국의 해외영토
그레나다(Grenada)
귄세이/사크/알더니(Guernsey/Sark/Alderney): 영국 왕실령
만 제도(Isle of Man): 영국 왕실령
저지(Jersey): 영국 왕실령
라이베리아(Liberia)
리히텐슈타인(the Principality of Liechtenstein)
몰디브(the Republic of the Maldives)
마샬 제도(the Republic of the Marshall Islands)
모나코(the Principality of Monaco)
몬세라트(Montserrat): 해외 영국령
나우루(the Republic of Nauru)
네덜란드령 안틸레스(Netherlands Antilles): 네덜란드
니우에(Niue): 뉴질랜드
파나마(Panama)
세이첼레스(the Republic of Seychelles)
세인트 루시아(St. Lucia)
크리스토퍼&네비스 연방(the Federation of St. Christopher & Nevis)
세인트 빈센트와 그레나디네스(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통가(Tonga)
투르크&카이코스(Turks & Caicos): 영국의 해외영토
미국령 버진아일랜드(US Virgin Islands): 미국의 국외영토
바누아투(the Republic of Vanuatu)

초기 OECD 목록 초안은 〈표 3-1〉에 발표된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지역 목록과는 차이가 난다. 초안은 제외되었다가 실제 목록에 추가로 기재된 국가들 중 스위스(Switzerland)와 룩셈부르크(Luxembourg)와 같은 OECD 회원국도 있다.

OECD는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보다 많은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에 협력하기로 동의한 국가들은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했다. OECD는 최초 47개국을

47) *Id.*, at 17.

검토했으며 그 중 일부 국가가 조세회피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조세회피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국가들 중 6개국인 버뮤다(Bermuda), 케이만 아일랜드(Cayman Islands), 사이프러스(Cyprus), 몰타(Malta), 모리셔스(Mauritius), 산마리노(San Marino)는 사전에 정보 공유를 하겠다고 합의했다. 최종적으로 2000년 OECD 블랙리스트에는 35개국이 포함되었다. 곧이어, OECD는 바베이도스(Barbados), 몰디브(Maldives), 통가(Tonga) 3개국을 조세회피처의 목록에 포함시킨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며 이들을 제외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세금천국에 포함된 국가들이 정보 공유에 합의했다. 결국 OECD의 목록에는 안도라(Andorra), 리히텐슈타인(Liechtenstein), 모나코(Monaco) 3개국만 남게 되었다.[48] 이와 같은 조세회피처와 관련된 OECD의 규제 노력은 큰 성과를 낳지 못했다.[49]

OECD는 최근 조세회피처를 3단계로 구분하는 목록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가 백색 목록(a white list)이며, 두 번째가 회색 목록(a gray list)이며, 세 번째가 블랙리스트 즉 흑색 목록(a black list)이다. 백색 목록에는 합의된 기준을 준수하는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회색 목록에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국가들이 속해 있으며 블랙리스트에는 전혀 준수하지 않고 있는 국가들이 해당된다. 초기 OECD 목록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어 있던 마지막 4개국인 코스타리카(Costa Rica), 말레이시아(Malaysia), 필리핀(the Philippines), 우루과이(Uruguay)가 2009년 4월 7일을 기점으로 회색 목록으로 옮겨졌다. 최근에는 홍콩(Hong Kong)과 마카오(Macau)가 중국의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OECD 목록에서 제외되었지만 각주에 기준 준수를 행하는 국가로 언급되었다. 오스트리아(Austria), 리히텐슈타인(Liechtenstein), 룩셈부르크(Luxembourg), 싱가폴(Singapore), 스위스(Switzerland) 등 11개국은 합의된 기준 준수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는 국가에서 준수하고 있는 국가로 분류되었다.[50] 2012년 5월 18일에는 나우루(Nauru) 하나만이 조세천

48) Gravelle, *supra* note 13, at 4.

49) David Spencer and J.C. Sharman, International Tax Cooper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Taxation*, published in three parts in December 2007, pp. 35-49, January 2008, pp. 27-44, 64, February 2008, pp. 39-58.

50) David D. Stewart, "G-20 Declares End to Bank Secrecy as OECD Issues Tiered List," *Tax Notes*, April 6, 2009, pp. 38-39.

국의 회색지대에 남아있게 되었다. 과테말라는 금융센터(financial center)와 관련한 회색지대에 남아있게 되었다.[51] 결국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대부분의 국가들은 조세정보교환협정(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s, TIEA)을 체결했다.

많은 학자들은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조세회피처이거나 조세회피처의 특징을 일부 지니고 있지만 이러한 점들이 매우 간과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the United States), 영국(the UK), 네덜란드(the Netherlands), 덴마크(Denmark), 헝가리(Hungary), 아이스란드(Iceland), 이스라엘(Israel), 포르투갈(Portugal), 캐나다(Canada)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델라웨어(Delaware) 주, 네바다(Nevada) 주 및 와이오밍(Wyoming) 주가 주목받고 있다. 이외에도, 예를 들어 스위스 내의 이탈리아 마을인 캄피오네 드 이탈리아(Campione d'Italia)와 같은 보다 작은 규모의 국가나 국가내의 지역이 조세회피처로 의심받고 있다.[52]

앞의 표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기업에 대한 조세회피처로 여겨지는 국가가 네덜란드이다. 네덜란드에서는 특정한 회사의 지부(subsidiaries)로부터 얻는 배당금과 자본수익에 대한 조세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조세 감면을 위한 많은 조약을 체결했다. 2006년에는 아일랜드가 음악 로열티와 관련한 조세를 변경 U2밴드의 보노(Bono)와 다른 멤버들은 음악 출판 회사를 아일랜드에서 네덜란드로 옮겼다.[53] 최근에 네덜란드는 다양한 "네덜란드 샌드위치(Dutch sandwiches)"와 같은 규정을 통하여 조세회피처로의 이전을 촉진하고 있다. "네덜란드 샌드위치"와 같은 규정들은 비유럽국가들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부과하려고 하는 다른 국가로부터 자금을 수혈해 와서 버뮤다(Bermuda)와 케이만 아일랜드(Cayman Islands)와 같은 조세회피처로 이전하는 역할을 한다.[54]

---

51) 조세천국과는 별도로 특정한 지역이 조세회피 관련 활동이 있는 금융센터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었다. *See*, for example, Micheil van Dijk, Francix Weyzig, and Richard Murphy, *The Netherlands: A Tax Haven?* SOMO (Centre for Research on Multinational Corporations), Amersterdam, 2007 and Rosanne Altshuler and Harry Grubert, Governments and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the Race to the Bottom, Tax Notes, February 27, 2009, pp. 979-992.

52) Gravelle, *supra* note 28, at 6.

53) Fergal O'Brien, "Bono, Preacher on Poverty, Tarnishes Halo Irish Tax Move," October 15, 2006, Bloomberg.com, http://bloomberg.com/apps/news?pid=20601109&refer=home&sid=aef6sR60oDgM#.

54) See Jesse Drucker, "Google 2.4% Rate Shows How $60 Billion Lost to Tax Loopholes," *Bloomberg*, October 21, 2010, posted at http://www.bloomberg.com/news/2010-10-21/google-2-4-rate-shows-

몇몇 사람은 미국과 영국의 일부 지역이 조세회피처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룩셈부르크의 총리 장클로드 정커(Jean-Claude Junker)는 다른 유럽회원국가들에게 미국에 대해 델라웨어, 네바다 및 와이오밍에 있는 조세회피처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55] 이외에도 덴마크(Denmark), 아이스란드(Iceland), 이스라엘(Israel), 포르투갈의 마데이라 아일랜드(Portugal's Madeira Island), 헝가리(Hungary), 부르나이(Brunei), 우루과이(Uruguay), 말레이시아의 라부안(Labuan), 미국의 푸에르토리코(Puerto Rico), 캐널아일랜드(Channel Islands)의 부분인 구에른세이(Guernsey), 사크(Sark) 등 또한 문제되고 있다.

2009년 4월 후반의 미팅에서 '케이만 아일랜드의 금융 서비스 연합회(Cayman Islands Financial Services Association)의 에두아르도 실바(Eduardo Silva)는 델라웨어, 네바다, 와이오밍 및 영국이 조세사기와 관련하여 가장 중대한 위반자들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네바다와 와이오밍은 기업들이 무기명의 소유를 가능하게 하는 무기명의 주식들을 보유하도록 했다. 미국 의회의 입법안인 S.569는 실소유주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56]

낮은 세율을 지닌 어떠한 국가 또한 소득 이전이 가능한 지역으로 받아들여진다. 아일랜드 외에 OECD의 아이스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공화국은 세율이 20% 이하이다. OECD에 포함되지 않은 대부분의 동유럽 국가들은 세율이 20% 이하이다.

2. 미국의 조세회피처 목록

OECD의 조세회피처 목록과 유사한 것이 미국 연방의회 100번째 회기에서 S.396의 형태로 제시되었다. 이 목록은 특정 세금천국에 등록된 회사를 국내 기업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연방의회의 S.396 목록에는 미국의 버진아

---

how-60-billion-u-s-revenue-lostto-tax-loopholes.html and "Yahoo, Dell Swell Netherlands' $13 Trillion Tax Haven," *Bloomberg*, January 23, 2013, posted at http://www.bloomberg.com/news/2013-01-23/yahoo-dell-swell-netherlands-13-trillion-tax-haven.html.

55) Charles Gnaedinger, "Luxembourg P.M Calls out U.S. States as Tax Havens" *Tax Notes International*, April 6, 2009, p. 13.

56) Charles Gnaedinger, "U.S.,Cayman Islands Debate Tax Haven Status," *Tax Notes*, May 4, 2009, p. 548-545.

일랜드(Virgin Islands)를 제외하고 있는 것이 OECD 목록과의 차이이다. 111번째 회기의 미국 연방의회에 소개된 조세천국 오용을 치유할 입법은 미국 국세청의 법원 파일링(court filings)에서 채택한 것과 다른 목록을 사용하고 있다.[57]

표 3-3 미연방의회 보고서에서 지목된 조세천국(Countries Listed on Various Tax Haven Lists)

캐리비안(Caribbean)/ 서인도(West Indies)	앙길라(Anguilla), 안티구아 및 바부다(Antiqua and Barbuda), 바하마(Bahamas), 바다도스(Bardados),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ritish Virgin Islands), 케이만아일랜드(Cayman Islands), 도미니카(Dominica), 그레나다(Grenada), 몬세라트(Montserrat), 네덜란드령 안틸레스(Netherlands Antilles), 세인트 키츠 및 네비스(St. Kitts and Nevis), 세인트 루시아(St. Lucia), 세인트 빈센트 및 그레나디네스(St. Vincent and Grenadines), 투르크 및 카이코스(Turks and Caicos), 미국 버진아일랜드(U.S. Virgin Islands)
중앙아메리카 (Central America)	밸리즈(Belize), 코스타리카(Costa Rica), 파나마(Panama)
동아시아 지역 (Coast of East Asia)	홍콩(Hong Kong), 마카오(Macau), 싱가폴(Singapore)
유럽/지중해 (Europe/Miditerranean)	안도라(Andorra), 캐널아일랜드(Channel Islands(Guernsey and Jersey)), 사이프러스(Cyprus), 지브랄터(Gibralter), 맨섬(Isle of Man), 아일랜드(Ireland), 리히텐슈타인(Liechtenstein), 룩셈부르크(Luxembourg), 말타(Malta), 모나코(Monaco), 산마리노(San Marino), 스위스(Switzerland)
인도양 (Indian Ocean)	몰디브(Maldives), 모리셔스(Mauritius), 세이칠레(Seychelles)
중동(Middle East)	바레인(Bahrain), 요르단(Jordan), 레바논(Lebanon)
북대서양 (North Atlantic)	버뮤다(Bermuda)
태평양, 남태평양 (Pacific, South Pacific)	쿡아일랜드(Cook Islands), 마샬아일랜드(Marshall Islands), 사모아(Samoa), 나우루(Nauru), 니우에(Niue), 통가(Tonga), 바누아투(Vanuatu)
서아프리카 (West Africa)	라이베리아(Liberia)

3. 금융 안전 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의 역외금융중심지(offshore financial center) 목록

2000년대에 「금융 안전 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에서는 주요 역외지역을 포함하는 주요한 금융중심지 목록에 대하여 발표했다.

57) J.R. Hines and E.M. Rice, “Fiscal Paradise: Foreign Tax havens and American Business,” 109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49 (1994).

표 3-4 금융안전포럼: 주요 금융중심지 목록[58]

주요 금융중심지 목록(30개 지역)		
아르헨티나	인도	노르웨이
오스트레일리아	아일랜드	포르투갈
벨기에	이스라엘	싱가폴
브라질	이탈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캐나다	일본	스페인
칠레	대한민국	스위스
덴마크	룩셈부르크	스웨덴
프랑스	말레이시아	태국
독일	멕시코	영국
홍콩	네덜란드	미국

주요 역외활동 관련 금융중심지 (37개 지역)	
안도라(Andora)	마카오(Macau)
안길라(Anguilla)	몰타(Malta)
안티구아(Antigua)	마샬 제도(Marshall Islands)
아루바(Aruba)	모리셔스(Moritius)
바하마(Bahamas)	모나코(Monaco)
바레인(Bahrain)	나우루(Nauru)
바바도스(Barbados)	네덜란드 안틸레스(Netherlands Antilles)
벨리즈(Belize)	네비스(Nevis)
버뮤다(Bermuda)	니우에(Niue)
버진아일랜드(British Virgin Islands)	파나마(Panama)
케이만 제도(Cayman Islands)	세인트 키츠(St. Kitts)
쿡 제도(Cook Islands)	세인트 루시아(St. Lucia)
코스타리카(Costa Rica)	세인트 빈센트(St. Vincent)
사이프러스(Cyprus)	사모아(Samoa)
지브롤터(Gibraltar)	세이셸(Seychelles)
건지(Guersey)	투르크&카이코스 제도(Turks&Caicos Islands)
만 제도(Isle of Man)	바누아투(Vanuatu)
저지(Jersey)	리히텐슈타인(Liechtenstein)
레바논(Lebanon)	

「금융 안전 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에서는 아래의 항목을 바탕으로 금융 감독 및 규제에 있어 문제되는 역외금융중심지에 대해서 분석한 바 있다.

- 부적절한 비공개 기준
- 예금자 등의 당사자의 신원 및 역내대부활동을 포함하는 역외금융중심지에 기반을 둔 금융기관의 활동에 대한 부적절한 지식

58) Financial Stability Forum,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Offshore Centres, (April 5th, 2000). available at http://www.financialstabilityboard.org/publications/r_0004b.pdf

- 역외금융기관의 지부 혹은 자회사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 자원의 부족
- 감독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책 의지의 부족
- 역내 감독자와의 협조의 미비
- 정보공개를 차단하는 과도한 비밀보호법

이로 인하여,

- 역내 국가의 규제제도의 왜곡 및 효과적인 감독의 좌절
- 역내 국가의 역외금융중심지 감독기능의 훼손
- 증권법위반행위에 대한 증권감독기관의 조사기능의 차단
- 금융범죄의 수익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적의 불가능

4. 민간단체 및 개인 연구

민간단체인 조세정의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는 가장 광범위한 조세천국 목록을 제시했다. 이 목록에는 몇몇 구체적인 시와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59] 미국 연방의회에서 발표한 조세회피처 목록인 〈표 3-5〉에 기재된 국가들 외에, 아메리카에는 캐리비안(Caribbean), 뉴욕(New York), 우루과이(Uruguay), 아프리카에는 메릴라(Mellila), 사오 톰 이 프린시페(Sao Tome e Principe), 소말리아(Somalia), 남아프리카(South Africa), 중동과 아시아에는 두바이(Dubai), 말레이시아의 라부안(Malaysia, Labuan), 텔아비브(Tel Aviv), 타이페이(Taipei), 유럽에는 알더네이(Alderney), 벨기에(Belgium), 캄피오네 드 이탈리아(Campione d'Italia), 런던시(City of London), 더블린(Dublin), 인구세티아(Ingushetia), 마데이라(Madeira), 사크(Sark), 트리스테(Trieste), 터키 공화국 북사이프러스(Turkish Republic of Northern Cyprus), 프랑크푸르트(Frankfurt), 인도태평양에는 마리아나스(Marianas)가 이에 속한다.

한편,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허위회사(sham corporations)의 설립과 관련된 연구를 한 정치학자의 연구를 보도한 바 있다. 해당 연구의 저자는 와이오밍,

59) Tax Justice Network, *Tax Us if You Can*, September, 2005.

네바다 및 영국과 다른 지역에서 회사를 수립했다.[60] 마이클 맥킨타이어(Michael McIntyre)은 국제적인 탈세를 사실상 방조하는 미국의 세 가지 실무관행을 지적했다. 여기에는 외국회사에 지불되는 조세면제이자수익에 대한 정보의 수집 실패, 수준 높은 중개자 등이 평가의 기준으로 작용하지만 이 외에도 고객을 노출시키지 않는 외국 기관의 시스템, 그리고 증권보유자와 예치자의 신원을 비밀로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델라웨어와 와이오밍 주의 관행 또한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61]

5. 시기별 비협조적 조세회피처의 변화

표 3-5 시기별 비협조적 조세회피처 목록(List of uncooperative tax havens)[62]

	IMF List	OECD 2000	2001	2004	2006
Africa					
Djibouti	×				
Liberia	×	×	×	×	
Muritius	×				
Maldives		×			
Seychelles	×	×			
Tangier	×				
Asia and Pacific					
Australia	×				
Cook Islands	×	×			
Federal States of Micronesia	×				
Guam	×				
Hongkong	×				
Japan	×				
Macau	×				
Malaysia	×				
Marianas	×				
Marshall Islands	×	×	×	×	

60) "Haven Hypocrisy," *The Economist*, March 26, 2008.

61) Charles Gnaedinger, "U.S., Cayman Islands Debate Tax Haven Status," *Tax Notes*, May 4, 2009, p. 548-545.

62) Brigitte Unger & Joras Ferwerda, Regulating Money Laundering and Tax Havens: The Role of Blacklisting, (May 15th, 2008).

	IMF List	OECD 2000	2001	2004	2006
Nauru	×	×	×		
Niue	×	×			
Philippines	×				
Samoa	×	×			
Singapore	×				
Thailand	×				
Tonga		×			
Vanuatu	×	×	×		
Europe					
Austria	×				
Andora	×	×	×	×	×
Campione	×				
Cyprus	×				
Gibraltar	×	×			
Guernsey/Sark/Alderney	×	×			
Hungary	×				
Ireland	×				
Isle of Man	×	×			
Jersey	×	×			
Liechtenstein	×	×	×	×	×
Luxemburg	×				
Madeira	×				
Malta	×				
Monaco	×	×	×	×	×
Netherlands	×				
Russia	×				
Switzerland	×				
United Kingdom	×				
Middle East					
Bahrain	×	×			
Dubai	×				
Israel	×				
Kuwait	×				
Lebanon	×				
Oman	×				
Americas					
Antigua & Barbuda	×	×			
Anguilla	×	×			

	IMF List	OECD 2000	2001	2004	2006
Aruba	×	×			
Bahamas	×	×			
Barbados	×	×			
Belize	×	×			
Bermuda	×				
British Virgin Islands	×	×			
CaymanIslands	×				
Costa Rica	×				
Dominica	×	×			
Grenada	×	×			
Montserrat	×	×			
Netherlands Antilles	×	×			
St Kitts and Nevis	×	×			
St Lucia	×	×			
Panama	×	×			
Puerto Rico	×				
St Vincent & the Grenadines	×	×			
Turks & Caicos Islands	×	×			
United States	×				
US Virgin Island		×			
Uruguay	×				

제4장

조세회피처 관련 유해활동

박미숙·강우예

04

조세회피처 관련 유해활동

제1절 조세회피

1. 의의

국제적인 조세회피처를 활용한 조세회피는 각국의 조세법 제도의 차이와 흠결을 활용해서 개인 내지 기업의 조세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행위이다.[63] 합법적인 조세회피(avoidance of tax)는 탈세, 즉 위법한 조세포탈(tax evasion)과 구분해야 한다. 또한, 합법적인 절세와 형사처벌 대상인 조세포탈을 구분하고 조세일탈행위인 조세회피를 별도의 개념으로 평가하기도 한다.[64] 이는 한편으로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법제도적 평가가 아직 안정된 상태가 아니며 상당히 역동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적인 조세회피는 단지 개별 국가의 관할이라는 절차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조세회피행위 자체에 대한 평가라는 실체법적인 문제도 불러왔다.

조세회피처와 관련된 몇 가지 스캔들은 국제적인 조세회피의 심각성에 대한 환기를 불러왔다. 2007년 미국은 브래들리 버켄펠트(Bradley Birkenfeld)가 미국 정부에 한 내부고발을 기점으로 스위스연합은행(Union Bank of Switzerland)에 대한 조세 관련 조사를 시작했다.[65] 버켄펠트는 미국인이 국세청의 과세를 피하는데

63) 김동복, 국제적 조세회피유형과 국가간 조세협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6권 제6호 (2006), 118면.
64) 박혜림, 초국가적 조세회피범죄에 대한 형사정책,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16권 제3호 (2012. 3.) 226면.

이용한 해외 조세회피처 세계에 대해서 폭로했다. 버켄펠트는 자발적으로 연방수사관에게 그 자신과 스위스연합은행의 직원은 미국 고객들이 해외계좌에 재산을 숨기고 세금을 회피했다고 진술했다.[66] 2008년 11월 연방 기소배심은 버켄펠트가 미국 납세자 수 천 명의 탈세행위 방조의 공모를 했다고 기소했다.[67] 유죄협상 과정에서 버켄펠트는 미국 정부에 스위스연합은행의 전략과 관련된 내부정보를 제공했다.[68] 미국 법무부는 스위스연합은행이 부유한 미국인들의 스위스 은행계좌에 수억달러를 은닉하는 행위를 방조했다는 혐의사실을 바탕으로 기소했다. 2008년 무렵 스위스연합은행은 부유한 미국인들이 비공개의 해외계좌에 예금된 20억 달러의 재산에 대한 세금을 탈루했다는 피의사실로 기소되었다. 스위스연합은행은 미국 시민들이 국세청의 추적을 회피해 재산을 은닉하는 최상의 방법에 대해 조언했다는 점을 시인했다.[69]

두 번째 유명한 스캔들은 독일에서 2008년 문제된 리히텐슈타인 사건이다. 독일의 조세 당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독일의 세율을 피하기 위하여 리히텐슈타인의 계좌를 사용한 600명에서 700명 사이의 독일 납세자의 명단을 가지고 수색영장을 집행하고, 146만 달러의 탈세행위를 한 독일의 대표적인 유명 기업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70] 곧이어, 미국 국세청은 리히텐슈타인에 있는 100개가 넘는 기업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했다. 당시 약 12개의 국가들이 리히텐슈타인의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탈세 혐의자를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의 경우에도,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미국의 사모펀드(private equity

65) Kevin McCoy, 12 Key Figures Prosecuted in UBS Tax Evasion Case, USA Today, (Oct. 13, 2009). Available at http://usatoday30.usatoday.com/money/perfi/taxes/2009-10-13-key-figures-ubs-tax-evasion-case_N.htm

66) *Id.*

67) *Id.*

68) *Id.*

69) See Laura Saunders & Anita Greil, Swiss Will Give Up Names of U.S. Taxpayers, Wall St. J., (Nov. 18, 2009) Available at http://online.wsj.com/news/articles/SB10001424052748704431804574541461590575636.

70) Carter Dougherty & Mark Lander, Tax Scandal in Germany Fans Complaints of Inequity, N.Y. Times, (Feb. 18, 2008), at C1 (리히텐슈타인 스캔들은 독일의 가장 유명한 기업가 중의 하나인 클라우스 줌빈켈에 대한 압수수색 및 체포를 바탕으로 시작했으며 그를 독일 체신국 회장에서 물러나게 했다). Available at http://www.nytimes.com/2008/02/18/business/worldbusiness/18tax.html?pagewanted=all&_r=0.

fund) 형식의 기업인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버뮤다, 룩셈부르크, 벨기에 등에 존재하는 투자목적회사 7곳을 경유했다. 따라서 외환은행 계약상의 인수주체는 벨기에 등의 투자목적회사가 되었다. 한국과 벨기에는 조세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론스타는 양도차익에 관한 과세를 부과 받지 않았다.[71]

이외에도, 2000년 미국 기업이었던 엔론(Enron)은 조세회피처인 케이만 제도(Cayman Island)에 441개의 해외 독립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72]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CJ 그룹과 시도상선의 경우 조세회피처를 활용하여 조세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조세회피처를 활용한 다양한 위법 혹은 합법행위들이 수면에 드러나면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73] 다만, 이러한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경제적 활동이 반드시 조세포탈 같은 위법행위로 볼 수만은 없다는 점이 문제의 복잡성을 더하고 있다. 즉, 조세회피행위의 유형에 대한 적절한 분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조세회피처(Steueroasen)를 이용한 조세회피 유형

가. 면세 및 절세 형태에 따른 조세회피처 분류

조세회피처는 법인세나 개인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과세를 하더라도 아주 낮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장소를 가리킨다.[74] 조세피난처는 세제상의 우대뿐만 아니라 외국환관리법, 회사법 등의 규제가 적고, 기업경영상의 장애요인이 거의 없다는 점은 물론이고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해외자산 은닉이나 탈세를 위한 장소로 악용된다.

---

71) 이정환, 론스타 사태를 해부한다,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 세계, 2006. 7.) 제9호, 347면; 박혜림, 초국가적 조세회피범죄에 대한 형사정책,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16권 제3호 (2012. 3.)

72) See 2000 Form 10-k filed with the SEC by Enron, Exhibit 21; "eport of Investigation of Enron Corporation and Related Entities Regarding Federal Tax and Compensation Issues, and Policy Recommendations," prepared by Joint Committee on Taxation staff (2/03), at 375.

73) "조세피난처 몰리는 대기업… 법인 167개로 늘어", 조선일보 (2011. 6. 13.)
http://inside.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6/23/2011062300686.html

74)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FAQ/2013-04-17-faq-steueroase.html
http://www.stern.de/wirtschaft/news/offshore-leaks-das-prinzip-steueroase-1992988.html
http://www.gegenblende.de/++co++e336dbca-ac09-11e2-bbe2-52540066f352

이러한 조세피난처는 면세 및 절세 형태에 따라 일반적으로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표 4-1 면세 및 절세 유형 분류 및 해당국가[75]

분 류	내 용	해당 국가	
완전무세국 (tax paradise)	세금이 전혀 없는 조세회피국가나 지역	소득세	안도라, 바하마, 바레인, 버뮤다, 부루나이, 캄피오네, 케이멘제도, 모나코, 오만, 터크스 케이커스제도 등
		법인세	채널 제도, 쿡제도, 지부티, 지브롤터, 아일 오브 맨, 카타르, 레바논,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스위스, 성 빈센트, 키프로스 등
국외소득면세국 (tax shelter)	국내소득과 달리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이 없는 국가나 지역	브루나이, 코스타리카, 홍콩, 쿠웨이트, 카타르, 리히텐슈타인 등	
특수사업소득면세국 (tax resort)	지주회사나 특정 사업활동에 세제상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국가나 지역	버진 아일랜드, 네덜란드,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파나마, 싱가포르, 성 빈센트, 키프로스 등	
저 세율국 (low tax heaven)	소득이나 자본에 대한 세율이 낮은 국가나 지역	소득세	버진 아일랜드, 홍콩, 아일 오브 맨, 채널 제도, 리히텐슈타인, 말타, 스위스, 키프로스 등
		법인세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말타, 오스트리아, 스위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키프로스 등

먼저 완전 무세국(tax paradise)은 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한 과세가 전혀 없는 세금의 피난처로 이들 국가는 소득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과 조세조약을 체결할 필요도 없다. 소득세가 전혀 없는 국가들로는 안도라, 바하마, 바레인, 버뮤다, 부루나이, 캄피오네, 케이멘제도, 모나코, 오만, 터크스 케이커스제도 등을, 법인세가 전혀 없는 국가들로는 채널 제도, 쿡제도, 지부티, 지브롤터, 아일 오브 맨, 카타르, 레바논,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스위스, 성 빈센트, 키프로스 등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국외소득면세국(tax shelter)은 소득세나 법인세 등에 대한 세율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낮은 것은 아니지만 국외 원천소득에는 과세하지 않고 국내 원천소득에만 과세하는 곳이다. 이들 국가로는 브루나이, 코스타리카, 홍콩, 쿠웨이트, 카타르, 리히텐슈타인 등을 들 수 있다. 세 번째, 특수사업소득면세국(tax resort)은 다

75) Merten, 앞의 책, S. 544면 이하 참조

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소득 또는 자본에 정상적인 과세를 하지만, 특정한 형태의 기업이나 사업 활동에 세제상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곳이다. 이러한 국가로는 버진 아일랜드, 네덜란드,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파나마, 싱가포르, 성 빈센트, 키프로스 등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유형으로는 소득이나 자본에 대한 세율이 낮은 국가나 지역인 저세율국(low-tax haven)을 들 수 있는데, 이들 국가로는 소득세율이 낮은 버진 아일랜드, 홍콩, 아일 오브 맨, 채널 제도, 리히텐슈타인, 말타, 스위스, 키프로스 등이 있고, 법인세율이 낮은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말타, 오스트리아, 스위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키프로스 등이 있다.

나. 조세회피 주체에 따른 분류

조세회피의 유형은 그 주체에 따라 두 가지, 즉 개인이 조세를 회피하는 유형과 기업이 조세를 회피하는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 기업의 조세 회피 방법(Methods of Corporate Tax Avoidance)

가) 기업형태로 이뤄지는 조세회피

다국적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역외탈세 수법은 바로 합법과 불법 기준이 모호한 '이전가격 시스템'이다.

도표 4-1 이전가격시스템을 이용한 조세회피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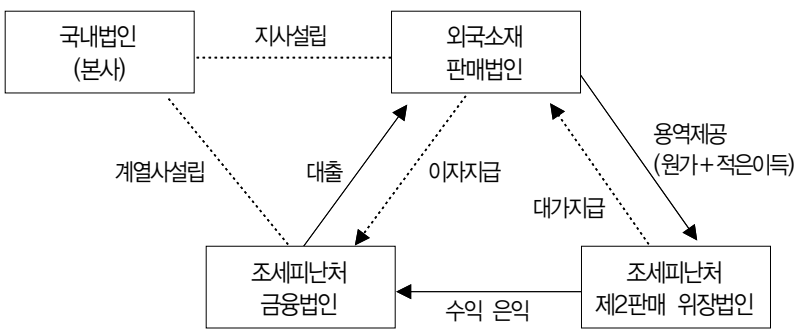

글로벌 IT기업과 특허회사들은 로열티와 라이선싱료 등 특허 수익에 따른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 분포한 조세피난처로 특허를 옮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를 이용한 수익 창출모델이 부각되면서 조세회피처로 특허를 이전하는 것이 지식재산분야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지난 5년간 반도체·전자·IT 글로벌 기업 그리고 특허전문회사들이 특허로 창출한 수익의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케이만 군도, 룩셈부르크, 버뮤다 등 조세회피처 소재 기업으로 특허를 이전하고 있다.

도표 4-2 주요 조세회피처 현황 및 특허등록수(2009년-2013년 11월)[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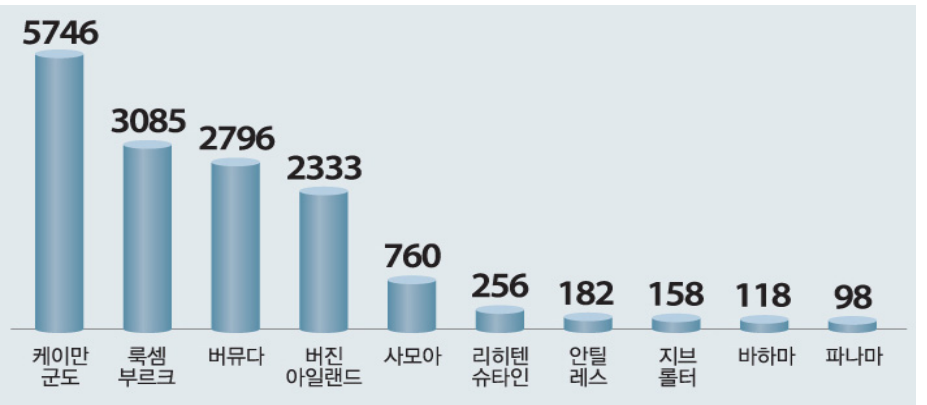

2009년부터 2013년 11월까지 이전된 특허 수는 케이만 군도가 574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룩셈부르크 3085건, 버뮤다 2796건, 버진 아일랜드 233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모아 지역으로 양도된 특허는 총 760건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그리 많은 편은 아니지만, 2013년에만 588건이 이전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조세회피처에서의 특허 관련 세율은 대부분 0% 수준이다. 그러므로 조세회피처에 있는 기업은 소유한 특허로 로열티나 라이선싱 수익을 거둬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따라서 세금 부담 없이 조세회피처 소재 자회사가 벌어들인 소득을 모회사가 축적할 수 있는 것이다.[77]

76) http://www.etnews.com/news/economy/economy/2869201_1493.html 인용

77) http://www.etnews.com/news/economy/economy/2869201_1493.html

나) 조세특전(세재 상 특별우대조치)

계속해서 특정 세금의 면제 및 무과세 정책 그리고 극히 낮은 명목상의 조세로 인하여 기업은 해당 국가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게 되는데, 기업에게 세재상의 혜택을 주는 정책을 펴는 국가는 다음의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4-2 조세특전 유형과 지역[78]

면세 및 절세 유형	해당지역
조세면제	채널 제도, 쿡제도, 지부티, 지브롤터, 아일 오브 맨, 카타르, 레바논,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스위스, 성 빈센트, 키프로스 등
협정할인에 저세율	버진 아일랜드, 아일랜드, 네덜란드,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파나마, 싱가포르, 성 빈센트, 키프로스 등
해외 원천소득에 대한 무과세	브루나이, 코스타리카, 홍콩, 쿠웨이트, 카타르, 리히텐슈타인
자본이익에 대한 무과세	안도라, 바하마, 버뮤다, 캐이먼 제도, 스위스,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등
극히 적은 명목상의 조세부담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말타, 오스트리아, 스위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키프로스 등

다) 소결

기업이 조세를 회피하는 방법은 개인이 그것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기업에는 기업이라는 특수성을 바탕으로 이전가격시스템을 이용한 조세회피, 해상운송기업의 편의치적을 통한 조세회피, 특허 이전을 통한 조세회피 등이 존재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조세회피 행위를 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스위스은행과 도이체방크, UBS 등 세계적 규모의 대형은행이 부유층 및 기업의 페이퍼컴퍼니 설립과 비밀계좌 개설을 적극 돕고 있다는 것이다.[79] 하지만 조세회피 행위는 너무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유형을 몇 개로 나누어 확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78) Merten, 앞의 책, S. 546.

79) http://www.spiegel.de/wirtschaft/unternehmen/offshore-leaks-bafin-prueft-geschaefte-in-steueroasen-a-895733.html; http://www.ndr.de/home/offshoreleaks179.html

2) 개인의 조세회피 유형

가) 회사영역에서의 특전

a. 해외 페이퍼컴퍼니이용

개인이 회사를 이용해서 조세를 회피하는 전형적인 형태는 다음의 〈도표 4-3〉과 같다. 먼저 사주는 해외 대행사를 통해 조세회피처에 외국인 명의를 차용하여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국내법인을 통해 투자 목적으로 거액을 송금한다. 서류상회사인 페이퍼컴퍼니는 투자된 자본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에 우회 투자하여 수익을 올린 후, 투자 원금은 국내법인으로 투자수익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세금을 탈루하고 해외의 개인 차명계좌에 은닉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80]

도표 4-3 해외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조세회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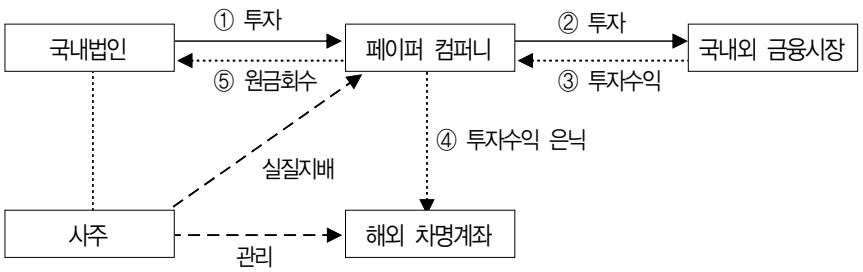

b. 이면계약을 통한 해외은닉재산 조성

다음으로 이면계약을 통해 조세회피처에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 그 형태는 다음의 도표와 같다.

80) http://www.blog.de/tb/a/r/start-up/steueroase-offshore-firmen-offshore-konto/4652716/

도표 4-4 이면계약의 해외은닉재산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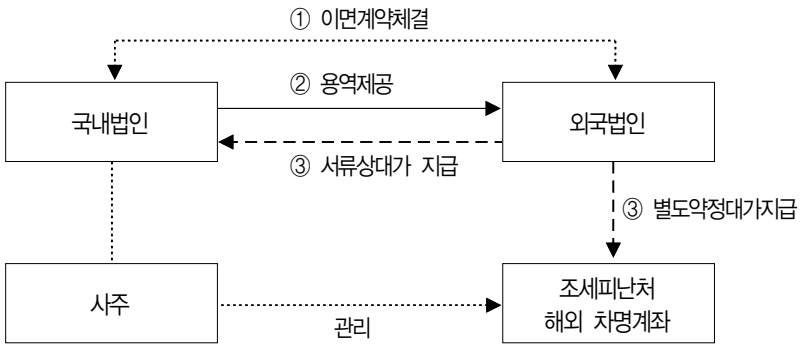

우선 국내법인은 외국법인과 용역대가에 대해 이면계약을 체결한 후, 외국법인은 국내법인에 서류상의 대가만을 지급하고 별도 약정 대가는 조세회피처에 있는 국내법인 사주의 해외 차명계좌에 송금한다. 역으로 국내법인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이면계약을 통해 원래 수취한 용역보다 더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 초과분을 별도 약정에 따라 조세회피처에 있는 사주의 해외 차명계좌에 송금 받는 형식으로 재산을 은닉하기도 한다.

c. 증여세 및 상속세 탈루

세 번째로 사주가 조세피난처에 있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증여세와 상속세를 탈루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세분화할 수 있는데, 먼저 가공거래를 통하여 조세회피처에 회사자금을 유출한 후 가족에게 증여하는 경우, 다음으로 해외 현지법인의 지분을 조세회피처에 있는 가족명의의 페이퍼컴퍼니에 이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탈루하는 경우다.

도표 4-5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증여세 및 상속세 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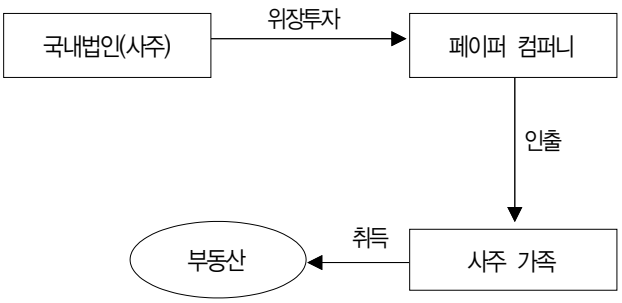

먼저 국내법인이 조세피난처에 있는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로 가장해 송금하고, 이 송금된 자금을 사주의 가족이 인출하여 해외호화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하며 유용하면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도표 4-6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증여세 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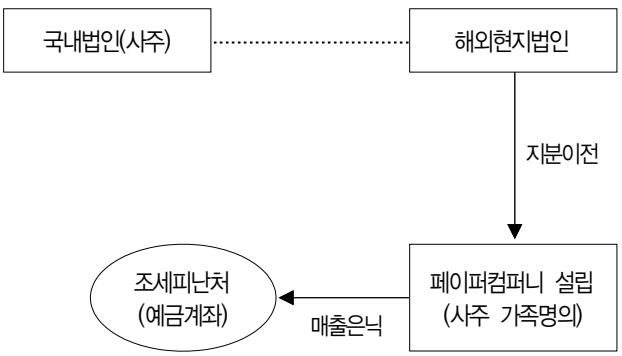

다음으로 국내법인의 사주가 자녀명의로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해외에 있는 건실한 현지법인의 지분을 페이퍼컴퍼니에 이전하는 경우이다. 국내법인과 페이퍼컴퍼니 모두 사주 일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재산상의 변화는 없지만, 서류상 해외 현지법인의 주인은 국내법인에서 해외 조세피난처에 있는 자녀명의의 페이퍼컴퍼니로 바뀐다. 이 구조에 따라 사주는 해외 현지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고, 이렇게 조성한 자금을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조세피

난처 은행에 은닉해 관리하는 것이다.

나) 주거지 이전을 통한 조세감면 및 경감

계속해서 개인들은 무소득세, 저소득세율, 무상속세 또는 세금이 없는 국가나 지역으로 거소를 옮김으로써 조세를 회피한다.[81] 소득세가 없어 조세회피처로 이용되는 국가들로는 안도라,[82] 바하마, 바레인, 버뮤다, 부루나이, 캄피오네, 케이멘 제도,[83] 모나코, 오만, 터크스 케이커스제도 등이고, 소득세율이 낮은 국가들은 홍콩, 아일 오브 맨, 채널 제도, 리히텐슈타인,[84] 말타, 스위스,[85] 등이다. 더 나아가 세금 자체가 면제돼 조세회피처로 이용되는 국가들로는 버진 아일랜드, 코스타리카, 아일랜드,[86] 스리랑카, 키프로스[87] 등이 있다.[88]

또한 안도라, 바하마, 바레인, 버진 아일랜드, 캄피오네, 케이먼 제도, 아일 오브 맨, 채널 제도, 파나마, 스위스 일부 주, 터크스 케이커스제도 등은 상속세가 없는 국가들이다. 예를 들어 스위스의 몇 개의 주에서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에 대한 높은 과세를 이유로 독일의 부유층은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그들의 거소를 스위스로 옮긴다.[89]

다) 해외은행에의 비밀계좌 개설

재벌, 운동선수, 연예인 등의 부유층은 그들의 돈을 조세피난처의 비밀계좌로 옮기는 수법으로 조세를 회피한다. 예를 들어 조세회피를 위하여 독일의 에프씨 바이에른(FC-Bayern)의 사장 울리 회네스(Uli Hoeness)는 스위스 은행계좌에 자신

81) http://www.manager-magazin.de/finanzen/artikel/a-892576.html

82) http://www.vice.com/de/read/die-10-groessten-steueroasen-zypern-monaco-steuerflucht
http://www.dw.de/who-is-who-der-europ%C3%A4ischen-steueroasen/a-16748249

83) http://www.vice.com/de/read/die-10-groessten-steueroasen-zypern-monaco-steuerflucht

84) http://www.vice.com/de/read/die-10-groessten-steueroasen-zypern-monaco-steuerflucht

85) http://www.vice.com/de/read/die-10-groessten-steueroasen-zypern-monaco-steuerflucht

86) http://www.dw.de/who-is-who-der-europ%C3%A4ischen-steueroasen/a-16748249

87) http://www.vice.com/de/read/die-10-groessten-steueroasen-zypern-monaco-steuerflucht

88) Merten, 앞의 책, S. 544f.

89) Merten, 앞의 책, S. 90.

의 개인 예금을 예치해 놓았고,[90] 호주 출신 월드스타 폴 호간(Paul Hogan)은 영화 '크로커다일 던디' 시리즈로 벌어 들인 수익을 해외비밀계좌에 숨겨 놓는 수법으로 탈세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였다[91]. 특히 스위스은행과 도이체 방크 그리고 UBS 등 세계적 메가뱅크들은 이러한 부유층의 비밀계좌 개설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이러한 자산에 대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버진 아일랜드, 지브롤터,[92] 싱가포르, 스위스, 키프로스 등을 들 수 있다.

라) 소결

개인이 조세를 회피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회사영역에서 사주가 해외에 가장회사를 설립하여 투자명목으로, 또는 이면계약을 통하여, 더 나아가 가족에게 편법으로 상속 또는 증여하는 수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과세율이 낮거나 세금이 없는 지역으로 거소를 옮겨 세금을 회피하는 것이며, 세 번째 방법은 조세회피처에 있는 해외은행에 비밀계좌를 개설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것이다.

제2절 조세회피처를 활용한 자금세탁

1. 조세회피처를 수단으로 한 자금세탁

조세회피처가 자금세탁중심지와 필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이는 어떤 지역이 조세회피처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합의된 기준이 없는 것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일정한 경우에 조세회피처는 역외탈세지역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리고 있다. 사실, 자금세탁 행위 또한 조세회피 행위와 마찬가지로 조세회피처를 특징짓는 중요한 항목이기도 하다. 분명, 불법자금세탁과 조세회

90) http://wissen.spiegel.de/wissen/image/show.html?did=95169274&aref=image054/2013/05/17/CO-SP-2013-021-0066-0068.PDF&thumb=false

91)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604000570&md=20130612235535_AT

92) http://www.dw.de/who-is-who-der-europ%C3%A4ischen-steueroasen/a-16748249

피는 대단히 많은 부분에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우선, 조세회피처의 느슨한 규제 기준이 자금세탁 행위가 만연할 수 있는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93] 즉, 조세회피처는 범죄수익의 은닉처 내지 자금세탁 장소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범죄에서 유래한 불법자금은 해외에 투자되어 해당 지역의 금융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조세회피처와 같이 자금세탁에 활용되는 국외의 지역들은 범죄에 대한 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고 해당 범죄 관련 자금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비난은 조세회피처 관련 활동에 대한 규제와 처벌의 강력한 논거가 된다.

조세회피처와 결합된 자금세탁과정은 매우 다양하다. 우선, 비밀 지역(secrecy jurisdiction) 및 조세회피처와 관련하여 복잡하게 얽혀있는 금융망을 지능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조세회피처에서는 명목회사(shell company)를 활용하여 최종적인 수혜자의 신원과 불법수익의 원천을 감추는 것과 같은 자금세탁행위가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94] 이 경우 범죄행위의 수단으로 불법자금을 취득한 것이든 자금이 불법적인 원인으로 취득된 것이든 간에 효과적인 자금세탁을 위한 경로는 차이가 없다.[95]

범죄자들은 조세회피처의 관련 계좌들이 익명이거나 또는 계좌의 보유자가 공개되지 않는 회사 혹은 다른 법적 단체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특정 계좌를 소유하고 이용하는 사실을 숨길 수 있다. 범죄자는 다른 은행으로부터 송금을 받는 방식으로 불법하게 획득한 재산을 해당 계좌들에 입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는 아무런 질문을 받지 않는다. 범죄자가 자금의 사용을 원하는 경우 해외로부터 국내의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익명의 계좌들을 통한 범죄수익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준법감시체제를 가동하는 지역의 은행들도 자금의 출처나 불법성을 파악하기 힘들다. 해당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정보가 존재하지 않거나 금융기관 비밀보호법으로 인하여 정보제공이 불가능한

93) R. Palan, Tax Havens and the Commercialization of State Sovereignty, 56 International Organization 151 (2002).

94) The Puppet Masters, The World Bank and UNODC, 2011 http://star.worldbank.org/star/publication/puppet-masters.

95) *Id.*

경우가 많다.[96] 이처럼, 자금세탁의 방법과 통로는 법적 규제와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한다. 따라서 자금세탁에 대한 대처방법과 관련한 연구는 조세회피처를 중요한 대상으로 설정하여 포괄적인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97]

자금세탁을 통한 조세회피 행위 내지 조세회피 후의 자금세탁 행위는 개별 국가별로 국가의 기능을 훼손시키며 국제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유해한 결과를 발생시킨다. 즉, 조세회피는 사회적 부정의와 불균형을 불러오며 경제활동의 왜곡을 불러온다. 우선, 조세회피는 세수의 부족을 불러와 국가의 각종 사회·복지 정책이 원활하게 실현될 수 없도록 한다. 조세 관련 범죄로 인하여 시민들은 공동체에 대한 불신을 쌓게 되며 시민의 후생의 향상을 위한 국가적 노력의 기초를 약화시킬 수 있다.[98] 조세 회피는 회피자가 자신의 사회와 국가에서의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고 서민과 중산층이 대신 그 부분만큼의 책임과 의무를 지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나아가 조세회피는 금융기관, 정부당국 및 정치인을 자극하여 부패행위와 연루되도록 하는 요인이 된다. 왜냐하면, 조세회피를 통하여 금융기관은 법규제를 벗어나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할 것이며 규제를 담당하는 정부당국은 이 과정을 묵인하도록 유혹받기 때문이다.[99] 이와 같이 조세와 관련된 범죄의 해악은 매우 다면적으로 나타난다.

국제연합마약범죄국(the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의 추산에 따르면, 2009년에 전세계 총생산(global GDP)의 3.6%에 달하는 2.1조 달러(US$ 2.1 trillion)가 세탁되었다.[100] 유럽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에 따르면, 회원국은 매해 조세 관련 범죄로 국내총생산의 2~2.5%에 달하는 금액의 손실을 입고 있다.[101] 조세정의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는 전세계적으로 부유한 개

96) FATF, Report on Non-Cooperative Countries and Territories 1-2 (2000).

97) Rui Tavares, Relationship between Money Laundering, Tax Evasion and Tax Havens, Special Committee on Organized Crime, Corruption and Money Laundering (Jan. 2013) at 2.

98) *Id.*

99) *Id.*, at 3.

100)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October 2011) Estimating Illicit Financial Flows Resulting From Drug Trafficking and Other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s Research Report, October 2011, p.5, available at http://www.unodc.org/documents/data-and-analysis/Studies/Illicit_financial_flows_2011_web.pdf

101) Commission Communication COM(2006) 254, “concerning the need to develop a coordinated

인들은 대략 총 21~32조 달러 상당의 비과세 재산을 해외에 보유하고 있다.[102]

1998년 G7 금융장관회의에서는 조세 관련 범죄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불법자금세탁 방지제도 개선과 관련한 국제적 행동을 촉구했다. G7은 현존하는 불법자금세탁 방지 제도를 강화하는 국제적인 협력이 조세와 관련된 쟁점에 있어 정보교환의 유효성 또한 증대시킨다는 점에 주목했다. 현재에는 '재정문제에 관한 OECD 위원회(the OECD's Committee on Fiscal Affairs),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유럽연합 등은 조세정책 및 자금세탁방지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103]

2. 조세회피처 외부적인 요인으로서의 불법 자금세탁

그러나 대부분의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의 흐름은 자금세탁 목적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나아가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규제 또한 조세회피처를 통한 탈세나 조세회피 행위를 차단하지 못한다. 조세회피처가 조세친화적 환경과 자금세탁이 용이한 환경의 제공과 관련하여 쉽게 구분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스위스(Switzerland) 혹은 네덜란드 안틸레스(Netherlands Antilles)와 같은 역외금융중심지는 「EU 저축세지침(the EU savings tax directive)」과 관련하여 EU 회원국의 금융당국에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 저율의 원천징수세를 선택하기도 했다.[104]

특정 지역이 자금세탁 중심지(money laundering center)의 명칭을 별도로 얻기 위해서는 조세회피처 내지 역외금융중심지가 일반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느슨한 규제 이상의 항목들이 확인되어야 한다. 즉, 높은 토지이용율, 낮은 일인당 GDP, 높은 일인당 현금 저축과 같이 자금세탁 행위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사실들 그 자

---

strategy to improve the fight against fiscal fraud" 31 May 2006.

102) James Henry, Tax Justice Network (2012) The Price of Offshore Revisited New Estimates for Missing Global Private Wealth, Income, Inequality, and Lost Taxes p. 9, available at http://www.taxjustice.net/cms/upload/pdf/Price_of_Offshore_Revisited_120722.pdf

103) Rui Tavares, Relationship between Money Laundering, Tax Evasion and Tax Havens, Special Committee on Organized Crime, Corruption and Money Laundering (Jan. 2013) at 6.

104) P. Schwarz, Why Are Countries Reluctant to Exchange Information on Interest Income? Participation in and Effectiveness of the EU savings tax directive, 29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97 (2009).

체로 자금세탁중심지를 규정짓게 하는 요인이 되지는 않는다. 조세회피처의 은행들은 고객들에 대해서 가치중립적으로 영업을 하며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는 것으로 자신들의 경쟁력을 유지한다.

자금세탁은 과거의 범죄행위로부터 취득한 수익의 출처를 감추는 의도 하에 금융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조세회피처에서 금융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몇 가지 외부적인 위법 요소와 결합되는 경우 불법자금세탁으로 규정될 수 있다.[105] 즉, 자금세탁은 마약 혹은 인신매매와 같은 범죄행위와 병행할 수 있으며 테러리즘에 대한 자금제공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조직범죄 및 테러리즘과 같은 사항들이 다른 요건들 보다 유해한 조세회피처나 자금세탁중심지를 지목하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106]

3. 국제통화기금(IMF)의 해외금융센터를 경유한 자금세탁행위에 대한 인식

조세회피처와 자금세탁행위와의 관계를 최초로 언급한 국제기구는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이었다. 국제통화기금은 역외금융중심지(offshore financial center)와 관련된 보고서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했다.[107]

> *역외금융중심지는 해외 은행(offshore bank)이 국내 금융기관에게 통상 부과되는 광범위한 규제에 대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개별 국가들은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보호책을 제공하면서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의 획득, 필요한 해외 전문 기술의 유치, 국내 금융시스템에 경쟁 요소의 도입을 포함하는 다양한 이유로 역외금융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
> *하지만, 역외금융중심지는 의심스러운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가 있다. 역외*

105) J. Slemrod, Why is Elvis on Burkina Fasco Postage Stamps? Cross-National Evidence on the Commercialization of State Sovereignty, 5 Journal of Empirical Legal Studies 683 (2008).

106) D. Masciandaro, False and Reluctant Friends? National Money Laundering Regulation, International Compliance and Non-Cooperative Countries, 20 European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7 (2005).

107) International Monetary Fund, Offshore Banking: An Analysis of Micro- and Macro-Prudential Issues, prepared by Luca Errico and Alberto Musalem, IMF Working Paper 99/5 (1999).

금융중심지는 부분적으로는 익명성과 조세회피 내지 탈세의 가능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자금을 유치할 수가 있다. 역외금융중심지는 높은 수준의 은행 비밀을 자금유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자금세탁과 관련된 활동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4. FATF의 자금세탁과 관련한 조세회피처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안

자금세탁 방지 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은 1980년대 마약거래와 관련된 부분에서 시작되었다.[108] 마약범죄자들은 마약거래로 발생한 많은 수익을 법집행기관의 주목을 받지 않고 정상적인 금융시스템에서 합법적인 자금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거액의 자금이 거래되는 사실만으로 법집행기관의 주목을 끌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범죄자들은 범죄수익이 불법하게 유래했다는 사실과 해당 수익의 소유권을 감출 필요가 있었다. 초기 자금세탁방지법은 금융기관이 고의로 이러한 행위를 조력한 경우에만 범죄로 규정했다.[109] 사실, 자금세탁방지제도는 마약자금이 세탁되고 국제금융시스템에 유입될 수 있는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완비되는 경우에만 실효성이 있게 된다. 특히, 미국과 프랑스가 주도하여, 국제적인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제도 확충을 위한 노력을 꾀했다.[110]

자금세탁방지법의 제정을 위한 첫 번째 주요한 국제적 노력의 결과물이 1988년 선포된 「유엔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협약(the U.N. Convention Against the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이다.

해당 협약은 모든 회원국들이 세탁된 마약자금의 포착과 몰수 및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데 사법공조를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입법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 1990년 범죄행위에서 유래한 수익의 세탁, 수색, 압수 및 몰수에 관한 유럽의사회 협약이 채택되었다.[111] 이어 1991년에는 자금세탁 목적하에 금융시스템을 이용하

108) Richard K. Gordon, Anti-Money-Laundering Policies: Selected Legal, Political, and Economic Issues, in 1 Current Developments in Monetary and Financial Law 405, 407 (1999).

109) *Id.*, at 405, 407-10.

110) Richard K. Gordon, On the Use and Abuse of Standards for Law: Global Governance and Offshore Financial Centers, 88 N.C. L. Rev. 501, 564-65 (2010).

111)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Laundering, Search, Seizure and Confiscation of the Proceeds

는 것을 방지하는 최초의 유럽 지침(the first European Directive)이 등장했다.[112] 이후, 1989년 파리에서 G7 정상회담이 있은 후 창설된 FATF는 지금까지 40가지 종류의 권고안을 마련하고 제시했다. FATF의 권고안들은 자금세탁의 범죄화, 범죄수익의 동결·몰수, 고객 신상의 기록, 혐의거래에 대한 감시 및 보고, 국제적인 자금세탁행위의 조사와 소추에 관한 초국가적인 협력 등과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113]

FATF는 CFATF(Caribbean Financial Action Task Force)를 수립하는 데 조력하는 역할을 했다. CFATF는 FATF 40 권고안을 채택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립된 지역 단체이다. 또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아시아-태평양 그룹(the Asia-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의 형성이 이어졌다. FATF는 이 지역 단체들이 권고안의 기준들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상호 평가할 절차를 마련했다.[114] 1998년 CFATF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아시아-태평양 그룹'에는 OECD 2000년의 OECD가 발표한 조세천국 목록과 역시 2000년 FATF이 발표한 권고안 준수 비협조 국가 및 지역 목록에 기재된 캐리비안과 아시아의 모든 역외금융중심지들이 선정되었다.[115]

1990년 초 FATF는 자금세탁방지 규범의 실행에 약한 고리로 여겨지는 지역들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 당시 많은 FATF 회원국들 또한 자금세탁관련 법제도와 집행기관을 마련하지 않았을 시점이지만 몇몇 주요 해외 지역들이 자금세탁과 관련하여 행하는 역할이 가장 문제시되었다. 이 지역들은 통상 선진국의 금융기반제도와 재산권 보호를 위한 선진국의 법제도를 가진 조세회피처였다. 이에 대해 1996년 FATF 권고안에는 금융기관이 권고안 비준수지역의 자들과 거래하는 경우 상향된 적절한 노력(due diligence)을 하도록 하는 '권고안 21'이 포함되었다. 이 권고안의 상향된 기준으로 인하여 금융기관들이 권고안 비준수지역의 자들과

---

from Crime, Nov. 8, 1990, E.T.S. 141.

112) Council Directive 91/308, 1991 O.J. (L 166) 1 (EC).

113) FATF, Forty Recommendations (June 20, 2003). Available at http://www.fatf-gafi.org/media/fatf/documents/FATF%20Standards%20-%2040%20Recommendations%20rc.pdf.

114)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Annual Report 1996-1997, paras. 5-6,

115) Caribbean Financial Action Task Force, CFATF Overview. Available at https://www.cfatf-gafic.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540&Itemid=28&lang=en.

의 거래를 중단하는 결과가 발생했다.[116]

조세회피처 및 자금세탁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역외금융중심지는 FATF 권고안 21과 같은 규제정책을 기본적으로 원하지 않는다. 우선,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첫 번째 목적은 범죄자의 범죄수익의 활용가능성을 축소시켜서 범죄행위를 감소시키는 것이다.[117] 범죄자와 범죄행위는 특정국에서 발생하므로 자금세탁방지제도는 해당 국가에 큰 도움이 되지만 역외금융중심지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이러한 정책의 실행은 금융기관에 매우 고비용이들기 때문에[118] 정부당국에서 강제하지 않는 한 금융기관이 이타적이며 자발적인 의도로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오히려 자금세탁방지제도는 역외금융중심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119]

2000년에 FATF는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비협조적 지역에 대한 첫 번째 조사보고서를 출판했다.[120] 비협조적 지역으로 등록되었던 47개의 지역 중 압도적인 다수의 역외금융중심지는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영국과 캐나다와 같은 국가들은 각각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상당수의 역외금융중심지를 목록에서 제외하려는 노력을 했다. 다만, 케이만 제도(Cayman Island)와 같은 곳은 금융기관에 고객의 신원과 거래기록 보전을 의무화하지 않았으며 적극적인 은행감독 활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목록에 포함되었다.[121] 바하마(Bahamas), 도미니카(Dominica), 마샬제도(Marshall Islands) 법인 혹은 기타 법적 단체의 실소유자에 대한 정보 제공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록에 포함되었다.[122] 쿡 제도(Cook Islands), 나우루(Nauru), 니우에(Niue) 이 세 가지 지역은 고객 신상의 기록 및 공개와 같은 요건

116) Benjamin R. Hartman, Coercing Cooperation from Offshore Centers: Identity and Coincidence of International Obligations Against Money Laundering and Harmful Tax Competition, 24 B.C. Int'l & Comp. L. Rev. 253, 273-78 (2001).

117) Gordon, *supra* note 108, at 405, 409.

118) Richard K. Gordon, Trysts or Terrorists?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Search for Bad Guys, 43 Wake Forest L. Rev. 699, 721-25, 728-29 (2008).

119) FATF, FATF 40 Recommendations 2-3, Recommendation 5 (2003).

120) FATF, FATF Review to Identify Non-Cooperating Countries or Territories: Increasing the Worldwide Effectiveness of Anti-Money Laundering Measures 9 (2000),

121) *Id.*, at 4.

122) *Id.*, at 2, 5, 7.

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FATF의 목록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123] 사실, 러시아나 레바논의 경우에도 금융규제 제도에 상당히 많은 결함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함되지 않았다. 2000년 6월에는 바하마(Bahamas), 케이만 제도(Cayman Islands), 리히텐슈타인(Liechtenstein)은 목록에서 제외되었지만, 이집트(Egypt), 과테말라(Guatemala), 헝가리(Hungary), 인도네시아(Indonesia), 미얀마(Myanmar) 그리고 나이지리아(Nigeria)와 같은 지역(onshore jurisdiction)들은 추가로 기재되었다.

9·11 테러가 있은 후에 FATF는 40개의 권고안에 덧붙여 8개의 새로운 특별 권고안을 마련했다. 이 특별권고안은 전통적인 자금세탁 방지 방안들과 더불어 테러리즘 관련 자금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들이었다. 이어, 2002년 6월 FATF는 15개의 지역이 선정된 차기 비협조 국가 목록을 발표했다. 이 지역들 중 과반수가 역외금융중심지에 속하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전세계에 있어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금융산업의 전체 규모에 비추어 목록에 기재된 지역들이 특별한 중요성을 지닌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 포함된 역외금융중심지에는 쿡 제도(Cook Islands), 도미니카(Dominica), 그레나다(Grenada), 마샬 제도(Marshall Islands), 나우루(Nauru), 니우에(Niue), 세인트 빈센트(St. Vincent), 그레나디네스(Grenadines)가 있다.[124] 역내지역으로는 이집트(Egypt), 인도네시아(Indonesia), 나이지리아(Nigeria), 필리핀(Philippines), 러시아(Russia), 우크라이나(Ukraine)가 있다.

한편, FATF 권고안에 담겨있는 3번째 자금세탁방지 지침(the FATF recommendations as enshrined in the 3rd AML Directive)에서는 일반적인 자금세탁 방지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조세회피처를 이용하는 행위는 간접적으로만 통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조세회피처 이용은 단순한 탈세와 구분되기 때문이다. FATF는 조세회피행위에 대해서 자금세탁을 위한 예비적 행위(precursor offense)로 분류하고 있다. FATF는 범죄자와 테러리스트들이 법인이나 단체 뒤에 자신의 실명과 자금을 은닉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하기 위해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125]

---

123) Id., at 8.

124) FATF, Review to Identify Non-cooperating Countries and Territories 4 (June 2002).

125) Rui Tavares, Relationship between Money Laundering, Tax Evasion and Tax Havens, Special Committee on Organized Crime, Corruption and Money Laundering (Jan. 2013) at 6.

표 4-3 IMF와 FATF의 자금세탁지역 블랙리스트[126]

	IMF List	FATF 2000	2001	2002	2005	June 2006	Oct. 2006
Africa							
Djibouti	×						
Liberia	×						
Egypt			×	×			
Muritius	×						
Nigeria	×		×	×	×		
Seychelles	×						
Tangier	×						
Americas							
Antigua & Barbuda	×						
Anguilla	×						
Aruba	×						
Bahamas	×	×					
Barbados	×						
Belize	×						
Bermuda	×						
British Virgin Islands	×						
Cayman Islands	×	×					
Costa Rica	×						
Dominica	×	×	×				
Grenada	×		×	×			
Guatemala			×				
Montserrat	×						
Netherlands Antilles	×						
St Kitts and Nevis	×	×	×				
St Lucia	×						
Panama	×	×					
Puerto Rico	×						
St Vincent & the Grenadines	×	×	×	×			
Turks & Caicos Islands	×						
United States	×						
Uruguay	×						
Europe							
Austria	×						
Andorra	×						
Campione	×	×	×	×			

	IMF List	FATF 2000	2001	2002	2005	June 2006	Oct. 2006
Cyprus	×						
Gibraltar	×						
Guernsey/Sark/Alderney			×	×			
Hungary	×		×				
Ireland	×						
Jersey	×						
Liechtenstein	×	×					
Luxemburg	×						
Madeira	×						
Malta	×						
Monaco	×						
Netherlands	×	×	×				
Russia	×						
Switzerland	×						
Ukraine			×	×			
United Kingdom	×						
Asia and Pacific							
Australia	×						
Cook Islands	×						
Federal States of Micronesia	×	×	×	×			
Guam	×						
Hongkong	×						
Indonesia			×	×			
Japan	×						
Macau	×						
Malaysia	×						
Myanmar			×	×	×	×	
Marianas	×						
Marshall Islands	×	×	×				
Nauru	×	×	×	×	×		
Niue	×	×	×				
Philippines	×	×	×	×			
Samoa	×						
Singapore	×						
Thailand	×						
Vanuatu	×						
Middle East							
Bahrain	×						

	IMF List	FATF 2000	2001	2002	2005	June 2006	Oct. 2006
Dubai	×						
Israel	×	×	×				
Kuwait	×						
Lebanon	×	×	×				
Oman	×						

126) Brigitte Unger & Joras Ferwerda, Regulating Money Laundering and Tax Havens: The Role of Blacklisting, (May 15th, 2008).

제5장

조세회피처에 대한 각국의 입법 및 정책

박미숙·강우예

05

조세회피처에 대한 각국의 입법 및 정책

제1절 우리나라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에는 국제적 조세회피를 규율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소득세법」, 「관세법」, 「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마련해 놓은 규정들에 따라 문제되는 행위를 규율하게 된다.

현재, 국제적 이전 대상이 된 재산에 대한 조세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다. 동법은 국제거래와 관련된 과세에 있어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127] 동 법률 제2조의2에서는 국제거래와 관련된 과세는 실질적인 기준으로 하겠다는 점을 천명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동법 제3조가 국세와 지방세를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12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장은 국내 사업자가 국외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행한 거래에 있어 가격이 정상가격과 차이가 나는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전가격조작으로 인한 조세회피행위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세액의 조정이라는 행정작용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28]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조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장의 규정은 사실상 「소득세법」 제41과 법인세법 제98조의 범위가 넓혀진 것으로 보인다.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의 경우에도 거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으며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않고" 「관세법」제31조 내지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에 다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는 유사한 조항이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장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하는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일정 규모를 초과할 시에는 해당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대해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 등 별도의 항목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장은 내국인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해외지주회사를 포함한 특정외국법인이 유보한 소득 중 해당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의 배당으로 보고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장 제21조는 국내 거주자가 역외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국제적 조세회피행위를 주된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형사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은 국내법이 아니라 조세조약을 우선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으로 형성된 조세질서에 국내법을 역행하는 방향으로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형사법은 국제협약에 따라

128) 조세회피라는 관점과는 별도로 이전가격조작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특수관계인 내지 다른 회사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지원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특별히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범위를 제외하고는 철저하게 국내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오히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금융정보의 위법한 공개에 관한 것이다. 동법 제31조 제5항 내지 제7항에서 금융정보 누설 금지 의무를 지는 자가 이를 위반하거나 동법 제36조에서 세무공무원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누설하는 경우에 동법 제31조의2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적어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정보의 공개가 아닌 상대적으로 금융비밀주의의 보호를 위하여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의 조세포탈죄 성립 여부

국제적인 조세 회피가 위법한 탈세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여질 때, 조세포탈죄 및 관세포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조세범 처벌법」제3조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지니고 있다. 나아가, 「관세법」 제270조에는 제4항, 제5항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하거나 … 관세를 환급받은 자"를 처벌하는 관세포탈죄 규정을 두고 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의 내용을 분석하면, 조세회피행위가 조세 포탈이나 조세의 환급 · 공제라는 목적의 불법성뿐만 아니라 사기 혹은 이에 준하는 수단의 불법성까지 확보가 되어야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와 관련된 7가지의 유형들을 입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129] 또한, 우리 대법원은 「조세범 처벌법」제3조의 "사기

129)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130]

> *"다른 행위를 수반함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외에도, 대법원 적극적인 은닉의 유형으로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위장 사업체를 설립하여 매출을 분산하는" 행위,[131] "자금세탁을 하거나 인출할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행위,[132]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고의로 그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하는 행위[133] 등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해석에 따르면, 조세회피처에서 위장법인의 설립, 차명계좌의 개설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조세 회피를 한 경우에는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앞에서 살핀 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장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제3장의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제4장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5장의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규정들은 정상가격으로 정정하는 등의 법정과세액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가변적인 국제적인 조세회피행위에 대하여 국내 형벌규정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합목적적인 이윤추구활동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30) 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도9871 판결; 같은 취지로 대법원 2011.4.28. 선고 2011도527 판결.

131) 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132) 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도2300 판결.

133) 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191 판결.

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결과라면 비난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입법자의 결단이 담긴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134] 국제적인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규범력은 동법 제3조에 의하여 다른 세법에 우선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제2절 미국

1. 금융비밀주의와 제금세탁방지제도

가. 미국의 정보요구에 대항한 스위스의 금융비밀보호주의

스위스연합은행(Swiss Union Bank) 스캔들이 있은 후로, 2009년 8월 19일 스위스는 미국에서 탈세를 했다는 혐의가 있는 약 4450명의 미국인 계좌보유자의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135] 스위스 법무부는 조세 사기(tax fraud)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스위스연합은행에 백만달러 이상에 달하는 금액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미국인 고객들의 실명을 넘겨주겠다는 데 동의를 했다. 결국, 미국은 적어도 20억달러의 재산을 숨기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52000명의 미국인 명의의 공개를 요구하며 스위스연합은행에 대한 소송을 철회했다. 스위스는 비밀보호법의 중요성을 들며 해당 합의를 파기했다. 스위스 법원 2곳은 해당 고객들의 이름에 대한 공개는 불법이라고 판시했다.[136] 이는 스위스 헌법에 은행가와 고객 간의 비밀유지의무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당시, 스위스 정부는 스위스연합은행이 미국의 요구를 따라 정보제공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스위스연합은행의 데이터를 압수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137]

---

134) 같은 취지로, 박혜림, 초국가적 조세회피범죄에 대한 형사정책,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16권 제3호 (2012. 3).

135) Helena Bachmann, Can Swiss Banks Thrive After the UBS-U.S. Deal?, Time Magazine, (Aug. 20, 2009). Available at http://content.time.com/time/business/article/0,8599,1917648,00.html.

136) Lynnley Browning, Swiss Back Away From Deal To Give Names of Rich UBS Clients to U.S., N.Y. Times, (Jan. 28, 2010), at B3. Available at http://www.nytimes.com/2010/01/28/business/global/28ubs.html.

스위스연합은행은 미국으로부터 7억8천만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으며 탈세의 혐의가 있는 250명의 고객의 실명을 공개하면 기소를 면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138] 이후, 미국 법무부는 스위스연합은행과 다른 스위스의 은행들에 대해서 5만2천명의 미국 탈세 혐의자의 신상을 제공하라는 압력을 보다 강하게 가하고 있다.[139]

스위스는 미국의 자발적 공개 프로그램기간 동안에 자원한 자의 이름에 대해서 미국 국세청으로부터 자세한 정보를 수령한 경우 공개하는 조치를 취했다.[140] 2010년 6월, 스위스 의회는 미국 법무부가 스위스의 은행의 고객 관련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는 보다 광범위한 정보 공유 협약에 대해 최종적인 비준을 했다.[141] 스위스의 이와 같은 정책결정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위스의 은행비밀법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이해해야 한다.[142]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고객을 보호하는 은행법을 유지해 왔다.[143] 스위스의 은행비밀법(bank secrecy law)은 스위스 은행 고객들에게 최상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했다.[144] 스위스 국민들은 스위스 은행이 정직성, 고객보호, 그리고 프라이버시에 관한 명성을 쌓았다는 데 대해 자부심을 가졌다.[145] 최근 내부거래자(insider trading)를 기소하고,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나찌의 비밀계좌에 대한 수사를 하라는 국제적인 압력으로 인하여 이러한

137) Bachmann, The Swiss Question Their Once Proud Banks, Time Magazine (Mar. 5, 2009). Available at http://content.time.com/time/business/article/0,8599,1883255,00.html

138) Bachmann, U.S. vs. UBS: A Fight Over Secret Swiss Bank Accounts, TIME MAGAZINE, (Jul. 15, 2009). Available at http://content.time.com/time/business/article/0,8599,1910389,00.html

139) *Id.*

140) Browning, *supra* note 136.

141) *See* Evan Perez, Prosecutor In UBS Case May Depart, Wall St. J., June 25, 2010, at C3.

142) Carolyn Michelle Najera, Combating Offshore Tax Evasion: Why the United States Should Be Able to Prevent American Tax Evaders from Using Swiss Bank Accounts to Hide Their Assets, 17 Sw. J. Int'l L. 205, 211 (2011).

143) See Greg Brabec, The Fight for Transparency: International Pressure to Make Swiss Banking Procedures Less Restrictive, 21 Temp. Int'l & Comp. L.J. 231, 233 (2007).

144) Lynnley Browning, Swiss Back Away From Deal To Give Names of Rich UBS Clients to U.S., N.Y. Times, Jan. 28, 2010, at B3. Available at http://www.nytimes.com/2010/01/28/business/global/28ubs.html.

145) Greg Brabec, The Fight for Transparency: International Pressure to Make Swiss Banking Procedures Less Restrictive, 21 Temp. Int'l & Comp. L.J. 231, 233 (2007).

스위스 은행의 고객 보호주의는 점차로 침식되고 있다.[146]

나. 미국의 정보공개에 기반한 자금세탁방지제도

미국은 스위스와는 달리 은행가와 고객 간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권리(banker-client privilege)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미국은 외국 정부의 경제 규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법을 제정하고 있다. 사실, 미국에서 은행비밀보호법은 사실상 명맥이 끊어졌다.[147] 미국연방 하원의회의 은행 및 통화 위원회는 1970년 비밀은행계좌는 화이트칼라 범죄를 증가시키고 미국인이 소득세를 회피하고 불법재산을 은닉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선언했다.[148] 이어, 미국의회는 은행기록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국세청에 부여하는 은행비밀보호법을 제정했다.[149] 미국의 은행비밀법은 고객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정부가 수사 내지 소추의 목적으로 은행의 중요한 정보 수집을 용이하게 하는 목적을 지녔다.[150] 은행비밀보호법은 주요 통화 거래와 국제 거래에 대한 기록 유지와 모든 은행과 금융기관의 계좌 목록의 보유를 의무화하고 있다.[151] 은행비밀보호법은 10000달러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은행 및 금융기관이 미국 국세청에 통화 거래 보고서(Currency Transaction Reports)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계좌 보유액의 50%에 달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고 있다.[152] 또한, 은행비밀보호법은 개인이 국외로 5000달러 이상의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 미국관세청에 해당사실에 관한 '통화 및 자금 거래 보고서(Currency and Monetary Instruments Reports)'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153] 이와 같이 수집

146) Urs Martin Lauchli, Swiss Bank Secrecy with Comparative Aspects to the American Approach, 42 St. Louis U. L.J. 865, 866 (1997-1998).

147) Cynthia Blum, Sharing Bank Deposit Information With Other Countries: Should Tax Compliance or Privacy Claims Prevail?, 6 Fl. Tax Rev. 579, 612 (2004).

148) Jennifer A. Mencken, Supervising Secrecy: Preventing Abuses within Bank Secrecy and Financil Privacy Systems, 21 B. C. Int'l & Comp. L. Rev. 468, 474 (1998).

149) *Id.*, at 476.

150) *Id.*

151) *Id.*

152) Bank Secrecy Act, 31 U.S.C. § 5321 (2006).

된 정보는 Treasury Enforcement Communication Systems으로 알려진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었다.[154]

「금융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법(the Right to Financial Privacy Act)」은 은행비밀보호법에 고객에 대한 보호방안이 부족한 부분을 상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155] 「금융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법(the Right to Financial Privacy Act)」은 해당인의 동의와 사법적 혹은 행정적 소환장이 없는 경우 은행비밀보호법하의 국가기관의 개인 금융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했다.[156] 하지만, 소환장의 발부는 매우 넓은 재량 하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157]

따라서 미국에서 개인들은 그들의 재산과 관련된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누릴 수 있다.[158] 예를 들어, 미국인들은 국내 은행 계좌를 지니고 있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159] 국세청은 금융기관들에게 계좌주에게 지급되는 이자의 양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160] 또한, 스위스 은행 계좌를 통하여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모든 미국 시민들과 거주자들은 미국 국세청에 투자내역을 신고해야 한다.[161]

다만, 과거 역외투자소득의 취득자는 미국 국세청에 소득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었다. 따라서 미국 시민들과 거주자들은 외국에 있는 자신의 은행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국 국세청으로부터의 과세를 회피할 수 있었다.

미국의 경우 타국과 맺은 조약을 조세회피에 대처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153) Ethan A. Nadelmann, Unlaundering Dirty Money Abroad: U.S. Foreign Policy And Financial Secrecy Jurisdictions, 18 U. Miami Inter-Am L. Rev. 33, 35 (1986-1987)

154) *Id.*, at 36.

155) Jennifer A. Mencken, Supervising Secrecy: Preventing Abuses within Bank Secrecy and Financil Privacy Systems, 21 B. C. Int'l & Comp. L. Rev. 468, 476 (1998).

156) *Id.*; Right to Financial Privacy Act, 12 U.S.C. § §3402-3407 (2006).

157) *Id.*, at 476-77.

158) *Id.*, at 474.

159) Cynthia Blum, Sharing Bank Deposit Information With Other Countries: Should Tax Compliance or Privacy Claims Prevail?, 6 Fl. Tax Rev. 579, 609 (2004).

160) *Id.*, at 584.

161) *Id.*, at 584, 595-96, 609-10.

파악하고 있지만, 자국의 국내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취급하고 있다. 자금이 미국 국경 바깥으로 이동되면 미국 국세청이 더 이상 추적하기 힘들다.[162] 미국 국세청은 해외업무와 관련하여 자신만큼 효과적이거나 효율적이지 못한 외국의 정부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시도한다는 어려움에 매번 직면해야 한다.[163]

미국은 타국에서 제정된 비밀보호법에 대해서는 매우 탐탁해 하지 않았다.[164] 예를 들어, 스위스와 비교할 때 은행비밀에 대한 미국의 관점은 정반대를 향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은행비밀주의가 범죄행위를 방조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165] 스위스와 미국은 미국 시민들이 역외 범죄(offshore crime)를 행하는 것을 방지하는 수많은 조약을 체결했다.[166] 또한, 미국과 스위스는 조세천국을 반대하는 OECD의 창립 회원이다.[167] 하지만, 여전히 탈세를 위하여 스위스 은행 계좌를 이용하는 수많은 미국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약들과 국제기구들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점이 드러났다.[168]

2. 조세회피처를 기반으로 한 조세회피행위의 규제와 처벌

가. 연혁

1970년 무렵 미국은 미국인이 조세회피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합산과세(gross taxes)를 감경하고 삭제하는 많은 수의 조세협약을 타국과 맺고 있었다. 이러한 협약들은 은행의 고객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교환을 가능

162) Factors Which Severely Hamper Law Enforcement Efforts, Crimes-of-Persuasion.comMM, http://www.crimes-of-persuasion.com/Criminals/problem_ factors.htm (last visited Sept. 15, 2010).

163) *Id.*

164) Jennifer A. Mencken, Supervising Secrecy: Preventing Abuses within Bank Secrecy and Financil Privacy Systems, 21 B. C. Int'l & Comp. L. Rev. 468, 473 (1998).

165) Arden Dale, No Amnesty, But Evaders Still Welcome, Wall St. J., October 17-18, 2009, at B7.

166) Greg Brabec, The Fight for Transparency: International Pressure to Make Swiss Banking Procedures Less Restrictive, 21 Temp. Int'l & Comp. L.J. 231, 237 (2007).

167) Sanctions Threat to 'Tax Havens', BBC News (June 26, 2000), http:// news.bbc.co.uk/ 2/hi/business/806236.stm.

168) Arden Dale, No Amnesty, But Evaders Still Welcome, Wall St. J., October 17-18, 2009.

하게 하는 규정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았다.[169] 미국이 근래 체결한 이 협약들은 현재 조세회피처라고 지목된 영국 식민지들이 과거 오래전 영국과의 관계에 있어 수혜자가 되는 협약에 기원을 두고 있다.[170] 예를 들어, 미국에 대해 합산과세를 납부하지 않고 해외투자자가 미국 회사채 시장에 투자할 수 있다는 이유로 네덜란드 안틸레스(Netherland Antilles)와 맺은 협약 또한 받아들여져 왔다.[171] 즉, 해당 협약이 해외투자자의 모국에서 조세를 회피할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 시민이 조세천국을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심각한 우려는 1979년에 시작되었다. 당시, 캐리비언 역외금융중심지에 대한 미국 연방하원의 '수단과 방법 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 청문회가 개최되었다.[172] 2년 후에, 리차드 고든(Richard A. Gordon)이 '조세천국과 미국납세자의 이용(Tax Havens and Their Use by United States Taxpayers)'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완성하여 미국 재무부에 제출했다.[173] 이로부터 3년이 지난 뒤 미국 연방의회는 조세천국의 오용에 대한 일련의 청문회들을 개최했다.[174] 예를 들어 1983년 개최된 상원의회의 한 청문회에서는 네덜란드 안틸레스와 케리비안 조세천국 영역을 통한 자금세탁 행위에 초점을 맞추었다.[175] 같은 해 하원에서 개최된 청문회에서는 미국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해외 조세회피처를 사용하는 행태에 대해서 청문회를 개최했다.[176]

---

169) Richard A. Gordon, Tax Havens and Their Use by United States Taxpayers--An Overview 147-49, 207-09 (1981).

170) *Id.,* at 149.

171) *Id*., at 149-50.

172) Bruce Zagaris, The Procedural Aspects of U.S. Tax Policy Towards Developing Countries: Too Many Sticks and No Carrots?, 35 Geo. Wash. Int'l L. Rev. 331, 333-35 (2003).

173) Gordon, *supra* note 169, at 32-41.

174) *See generally* Improper Use of Foreign Addresses to Evade U.S. Taxes: Hearing Before the Commerce, Consumer, and Monetary Affairs Subcomm. of the H. Comm. on Gov't Operations, 97th Cong. (1982); Bruce Zagaris, The Procedural Aspects of U.S. Tax Policy Towards Developing Countries: Too Many Sticks and No Carrots?, 35 Geo. Wash. Int'l L. Rev. 331, 333-35 (2003).

175) Tax Evasion Through the Netherlands Antilles and Other Tax Haven Countries: Hearings Before a Subcomm. of the H. Comm. on Gov't Operations, 98th Cong. 3 (1983).

176) Crime and Secrecy: The Use of Offshore Banks and Companies: Hearings Before the Permanent Subcomm. on Investigations of the S. Comm. on Governmental Affairs, 98th Cong. 16, 21 (1983).

1980년대에 미국 재무부는 납세자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통하여 조세회피처의 오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기 시작했다. 1983년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미국과의 정보 교환에 동의하는 지역에 경제적인 이득을 부여하는 「케리비안 지역 경제 회복법(the Caribbean Base Economic Recovery Act)」에 서명하고 이를 발효시켰다. 나아가, 1984년 제정된 「조세개혁법(the Tax Reform Act)」은 미국 소득세의 회피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지역의 자의 증권소득(portfolio interest)에 대한 원천징수세의 일반적인 면제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조세당국에 부여했다.[177] 그러나 1980년대의 이러한 법제도적 조치가 조세천국을 중심으로 하는 조세회피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되지 않았다.

나. 조세회피처 오용 방지 법안(the Stop Tax Haven Abuse Act)

1) 입법 배경

「조세회피처 오용 방지 법안(the Stop Tax Haven Abuse Act)」은 미국 연방의회에서 2007년과 2013년 두 번째 법안으로 제출되었다. 2007년에는 당시 일리노이 주 상원의원이었던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시간 주 상원의원 칼 레빈(Carl Levin), 미네소타 주 상원의원 놈 콜만(Norm Coleman)이 동 법안에 서명했다.[178] 동 법안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역외 조세천국과 조세회피처의 이용을 제한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2013년에는 연방하원에서 하원의원 도젯(Doggett)이 발의하고 55명이 서명하여 법안을 제출했다.

「조세회피처 오용 방지 법안(the Stop Tax Haven Abuse Act)」은 애초 34군데의 역외비밀지역(offshore secrecy jurisdiction)을 지목했다.[179] 역외비밀지역으로 지목된 대부분의 지역은 면적과 경제적 규모가 매우 작았다. 안길라(Anguilla)의 경우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절반 정도의 크기로 91평방킬로미터에 지나지 않으

177) Deficit Reduction Act of 1984, Pub. L. No. 98-369, 98 Stat. 494, 648-50 (1984).

178) Stop Tax Haven Abuse Act, S. 681, 110th Cong. (2007).

179) *Id.*, at § 101(b).

며 인구는 약 14,436명이다. 물론 저지(Jersey), 권세이(Guernsey), 사크(Sark), 알더니(Alderney)와 같은 채널 제도와 같이 상대적으로 부유한 경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들이 존재한다. 다만, 「조세천국 오용 방지 법안(the Stop Tax Haven Abuse Act)」에서 역외비밀지역으로 지목된 곳들은 국제정치적으로 매우 취약한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다.[180]

2) 조세회피처 지정

「조세회피처 오용 방지 법안(the Stop Tax Haven Abuse Act)」이 첫 번째로 시도한 것은 조세회피처를 지정하는 것이었다. 동 법안에 따르면, 역외비밀지역은 재무부 장관이 지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181] 또한, 미국 재무부 장관은 조세법의 집행과 관련된 미국의 능력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조세비밀법의 존재 여부를 바탕으로 어떠한 지역이 역외비밀지역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182] 미국 재무부 장관은 역외비밀지역을 지목할 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 일정지역이 미국과의 정보 교환 조약 혹은 협정을 체결했는지 여부
- 미국의 소득세와 관련하여 탈세 혹은 조세회피를 방지한다는 견지에서 정보의 교환이 적절했는지 여부
- 해당지역이 미국이 회원국으로 있는 국제정부그룹이나 국제기구의 국제적인 조세의 집행에 비협조적인지 여부

미국 재무부는 지정된 지역이 정보교환에 협력하는 정도에 따라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

180) Michael Isaacson, The Tax Haven the OECD Forgot? Harmful Tax Competition? Harmful to Whom? Learn About the Real Agenda Behind OECD's Blacklists of Offshore Tax Havens, available at http://www.offshore-fox.com/offshore-corporations/offshore_corporations_0401.html.

181) Stop Tax Haven Abuse Act, S. 506, 111th Cong. § 101(b) (2009).

182) *Id.*, § 101(b).

3) 역외 과세의 강화

「조세회피처 오용 방지 법안(the Stop Tax Haven Abuse Act)」은 미국 재무부에게 미국의 조세 집행을 차단하는 외국 지역 혹은 금융기관에 대해 특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특별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183]

「조세회피처 오용 방지 법안(the Stop Tax Haven Abuse Act)」은 역외지역에서의 활동이라고 할지라도 미국의 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우선, 반증이 있기 전까지는 미국 조세 및 증권 법의 집행과 관련하여 역외비밀주의에 대항하기 위하여 미국의 납세자(해당기업을 수립하고 재산을 보내거나 수령하는 등의 이득을 얻은)가 역외기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184] 총 5천만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무역을 하고 있으며 미국 국내회사로서 미국에서 우선적으로 경영과 지배가 발생하며 미국에서부터 이전한 역외 회사에 대하여 외국인의 지위를 박탈하고 있다.[185] 미국인이 지배하는 외국 단체 명의의 계좌를 계설한 미국의 금융기관이 미국 국세청에 해당 계좌를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여 역외활동의 추적을 강화했다.[186] 미국에서 역외지역으로 보내지는 신용디폴트스왑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용디폴트스왑을 통한 조세흠결을 메웠다.[187] 외국 기업이 외국은행의 대리 계정을 포함한 미국에 위치한 금융계좌의 외국 보조 예금(the foreign subsidiary deposits)에 대해서 미국의 모기업에 배분된 것으로서(constructive distribution) 과세가 가능하다고 함으로서 조세 흠결을 메웠다.[188]

4) 규제 및 처벌

「조세회피처 오용 방지 법안(the Stop Tax Haven Abuse Act)」은 역외 조세회피

183) *Id.*, § 101.
184) *Id.*, § 102.
185) *Id.*, § 103.
186) *Id.*, § 104.
187) *Id.*, § 105.
188) *Id.*, § 106.

처를 활용한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우선, 증권법을 위반하여 역외 재산을 은닉하는 기업 내부자에 대하여 백만 달러 이하의 벌금을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89] 나아가, 조세회피처 발기인 및 조세회피를 조력하는 자들에 대해 불법한 수익의 최대 1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을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90] 또한, 헤지펀드, 비공개기업펀드 등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관련된 고객들과 역외 펀드에 대한 감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191]

게다가, 「조세회피처 오용 방지 법안(the Stop Tax Haven Abuse Act)」은 세무 관련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가 세금을 은닉하는 대가로 발생하는 서류손실액을 기준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192]

「조세회피처 오용 방지 법안(the Stop Tax Haven Abuse Act)」은 국세청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조세천국 오용 방지 법안(the Stop Tax Haven Abuse Act)」은 국세청이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했다.[193] 또한, 은닉된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하여 국세청이 소득세 신고 정보(tax return information)를 활용하여 해외 금융 계좌의 보고들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하여 보고가 누락된 해외 계좌에 대한 벌금 계산을 간소화 하고 민사적인 과세집행(civil tax enforcement)에서의 협의 활동에 대한 보고를 용이하게 했다.[194]

나아가, 「조세회피처 오용 방지 법안(the Stop Tax Haven Abuse Act)」은 국가기관의 정보공유와 역량의 강화를 독려하고 있다. 우선 동법은 위법한 조세 회피 활동 내지 조세회피 활동을 방조하는 행위를 포착하고 방지할 은행 조사 기법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195] 또한, 연방의 금융 감독기관들의 신청에 기반한 정보공유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196] 나아가, 국세청의 특정기관의 조세 면제 여부에 대한 결정사항에 대해 연방의회에 정보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다.[197]

---

189) *Id.*, § 202.
190) *Id.*, § 301-302.
191) *Id.*, § 202-203.
192) *Id.*, § 206.
193) *Id.*, § 205.
194) *Id.*, § 206.
195) *Id.*, § 304.
196) *Id.*, § 305.

다. 기업 투명성과 법집행에 관한 법안(Incorporation Transparency and Law Enforcement Assistance Act)

2013년 8월 1일, 「기업 투명성과 법집행에 관한 법안(Incorporation Transparency and Law Enforcement Assistance Act)」이 상원에 S 1465 형태로 제출되었다. 동법은 범죄 조직이 위장회사(front companies) 및 명목회사(shell company) 뒤에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시스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업 투명성과 법집행에 관한 법안(Incorporation Transparency and Law Enforcement Assistance Act)」은 미국 각 주들이 주 내에 설립된 기업과 유한회사들이 실소유주(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의 정보에 대한 열람(disclosure), 갱신(updating), 확인(verification)을 할 수 있도록 실소유주에 관한 정보를 연방 재무부 장관에게 제공하는 법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기업 투명성과 법집행에 관한 법안(Incorporation Transparency and Law Enforcement Assistance Act)」은 각 주에 있어 실소유주 정보제공 관련 법인격 부여 제도의 정착을 위한 4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 성명, 현주소, 기간이 유요한 여권, 혹은 주 운전면허증을 통하여 실소유주의 확인
- 법인격 부여된 기업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연결 법인의 신원과 연결 법인의 실소유주의 신원
- 실소유주 관련 정보가 변경된 뒤 60 이내로 해당 실소유주 관련 목록의 갱신
- 미국 시민 혹은 합법적 영주권자가 아닌 실소유주에 대하여 요구되는 추가 정보 및 확인

또한, 「기업 투명성과 법집행에 관한 법안(Incorporation Transparency and Law Enforcement Assistance Act)」에 따르면, 감사원 원장(the Comptroller General)은 의회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조사하여 보고해야 한다.

---

197) *Id.*, § 306.

- 실소유주 정보의 공개에 관한 주법의 기준
- 해당 정보의 부재가 테러리즘, 자금세탁 및 기타 범죄활동의 혐의가 있는 단체에 대한 조사를 차단하는지 여부
- 미국에서 설립되고 등록된 조합이나 신탁의 실소유주에 정보보고의 부재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비판 및 미국이 취해야 할 정책방향

「기업 투명성과 법집행에 관한 법안(Incorporation Transparency and Law Enforcement Assistance Act)」은 다음의 행위를 한 자들에게 민사벌(civil penalty)을 가하고 있다.

- 실소유주에 관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
- 실소유주에 관한 완전하고 갱신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허가를 받지 않고 소환장 및 실소유주 정보에 대한 사항의 존재를 누설하는 경우

라. 양자 조약

또한, 미국은 해외금융계좌 납세순응법(FATCA)을 통하여 타국에 예치한 미국 시민권자의 자금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198] 납세순응법은 양자조약을 기반으로 하여 적용된다.

제3절 국제기구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 배경

이미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조세회피처에 대해 논의가 세계적인 수준에서 본격화 된 것은 1998년 OECD 보고서 「유해한 조세경쟁(Harmful Tax Competition)」

198) 동아일보, "미국세청이 한국에 있는 내 계좌를 들여다본다고?": 내년 7월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화, (2013. 8. 5).

에서부터이다.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는 "조세경쟁과 관련한 특별 회기(Special Sessions on Tax Competition)"를 만들었다. 이 특별 회기는 프랑스와 일본의 공동 의장국 수행 하에 동 보고서를 준비했다. 이 위원회는 1998년 1월 20일에 동 보고서를 채택했다. 동 보고서는 1996년 OECD 장관 회의(the Ministerial Communiqué)에서 유해 조세경쟁의 왜곡된 효과에 대처할 수 있는 조치를 개발할 것을 결의한 것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결국, 동 보고서에 대하여 G7 국가들이 이 요청을 승인했다. 이후, OECD는 '모범 이중 과세 협약(model double- taxation conventions)'에 관한 보고서를 출판했다.[199]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 조세회피와 관련한 핵심문제는 OECD에 의한 조세회피처의 선정기준과 목록 제시이다. OECD가 오랫동안 초점을 맞춘 것은 특히 은행 기록(bank record)과 관련된 정보 교환의 중요성과 수혜자 실소유주가 파악되기 힘든 명목 회사(shell company)와 관련된 문제였다.[200]

2000년 OECD가 출판한 '세계적 조세 협력을 향하여(Toward Global Tax Co-operation)' 보고서에서는 OECD 회원국은 조세천국에 단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OECD 회원국들은 유해 조세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결국, OECD는 국제적인 조세 회피와 관련된 규범의 제시 및 감독이라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201] 사실, OECD는 소수의 부유한 국가들만이 회원으로 되어 있다는 단점을 안고 있으므로 조세회피처 문제의 해결에 완벽한 적임자라고 보기에는 힘든 점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는 소득세와 관련한 국제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평가받는다. OECD가 해당 기준을 제시하기 전 국제적인 소득세와 관련하여 전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규범은 없었다.[202] 2000년 OECD의 프로젝트에서는 과세의 효과적인 부과, 소득세 제도의 조화, 혹은 조세율의 적절한 수준 확보가 목표가 아니라,[203] 과세부담의 적절한 배분과 조세가 자본 배분 결정에 있어

199) OECD Committee on Fiscal Affairs,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9-15 (2008).

200) OECD, International Tax Avoidance and Evasion: Four Related Studies 20 (1987).

201) *See* J.C. Sharman, Havens in a Storm: The Struggle for Global Tax Regulation 44-45 (2006).

202) OECD, *supra* note 3, at 16.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어야 한다는 점을 보장하기 위한 목표 하에 추진되었다.[204]

나. 조세회피에 관한 규제와 처벌 방안

1) 비조세적 수단

비협조적인 조세회피처와 관련되었거나 조세회피처에서의 유해한 조세정책을 이용한 거래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 보고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해당 기준을 위반하여 부정확한 보고를 하거나 보고하지 않는 경우 상당한 정도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205]

비협조적인 조세회피처에서 설립된 단체와 관련된 거래 및 조세회피처에서의 유해한 조세행위에 대해 정기적인 벌칙을 부과하고 이에 대한 예외적용을 거부할 수 있다.[206]

이 경우, 벌칙은 형사적, 행정적, 민사적 수단을 모두 가리킨다.

2) 조세적 수단

비협조적인 조세회피처와 관련되었거나 조세회피처에서의 유해한 조세행위(harmful tax practices)를 이용하는 거래와 관련되어 있는 세금 공제, 면제 등을 불허할 수 있다.[207]

비협조적인 조세회피처에서 유래하는 배분 혹은 조세회피처완 관련된 유해한 조세행위를 이용한 거래에 대한 해외 조세 공제(foreign tax credit) 혹은 참가 면제(participation exemption)의 가능성을 부인한다.[208]

비협조적인 조세회피처의 거주자들에 대한 특정한 지불금에 대한 원천징수세도 부과할 수 있다.[209]

---

203) *Id.*, at 5.
204) *Id.*
205) *Id.*, at 25.
206) *Id.*
207) *Id.*
208) *Id.*

또한, 비협조적인 조세회피처와의 포괄적인 소득세 협약을 체결하지 말아야 하며 특정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현존하는 그 어떠한 협약이라도 종식시키지 않을 수 있다.[210]

3) 기타

외국 기업을 통제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을 마련할 것을 독려한다. 이미 관련기준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유해한 조세행위를 방지하는데 부합하는 방식으로 적용되도록 보장한다.[211]

또한, 비협조적인 조세회피처 및 조세회피처 관련 유해 조세행위를 이용한 거래에 대한 감시와 집행활동을 강화할 수 있다.[212] 우리의 경우에도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이 역외 탈세를 공동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외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213]

마지막으로 비협조적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단체와 관련한 수수료와 비용에 대한 세금공제와 비용보전의 거부할 수 있고,[214] 비협조적 조세회피처와 관련한 특정 거래에 대한 업무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215]

4) 문제점

다만, 현재까지는 각국의 개별적인 대처방안의 제시로 인하여 과세율의 차이를 활용한 조세 회피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 삼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상술한 바와 같이 각국의 조세정책의 수립은 국내적인 문제로 조세덤핑이나 자율적인 조세율의 결정을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납세자는 해외 조세천국을 포함하여

209) *Id.*
210) *Id.*
211) *Id.*
212) *Id.*
213) 조선일보, 관세청·금감원에 외환 공동검사권 부여… '역외 탈세 막는다', (2013. 6. 16.).
214) OECD, *supra* note 3, at 25.
215) *Id.*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납세자는 가능한 한 최소한도의 세금을 납부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으며, 조세당국에 최대한의 납세를 해야 하는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 특정인의 납세액을 불합리하게 증가시키는 것은 최소한 애국적이지도 않다.[216]

2.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우선, 2012년의 FATF의 신권고안에서는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어 있다. 이에는 자금세탁범죄가 적용되는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 금융기관의 고객에 대한 적절한 주의의무(customer due diligence) 및 거래 기록 유지(record keeping)와 같은 방안, 혐의거래에 대한 보고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 FATF의 신권고안에 담긴 내용은 자금세탁과 테리리스트의 금융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대처방안을 담고 있다.[217] 이 권고안의 내용은 조세회피처의 자금세탁 관련 행위 또한 대상으로 하고 있다.

조세회피처에 재산을 송금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형법상의 탈세 관련 규정 이외에는 현재 직접적으로 통제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미국의 경우에도 연방 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7201조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부과하는 조세를 고의로 회피한 자는 중죄(felony)로 처벌한다는 간명한 규정이 있다.

개정 FATF는 자금세탁[218]에 대한 예비적 행위를 규정한 범죄목록에 포함된 조세범죄를 언급하고 있다.[219] 또한, FATF 자금세탁행위에 대한 규제 권한은 해당

216) Helvering v. Gregory, 69 F.2d 809, 810 (2d Cir. 1934).

217) FATF, the FATF Recommendations: International Standards on Combating Money Laundering and the Financing of Terrorism & Proliferation (Feb. 2012).

218) FATF가 불법자금세탁과 관련하여 범죄행위의 규정의 기초로 삼고 있는 것은 「유엔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협약(The 1988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이다. FATF는 동 협약에 따라 각 회원국이 자금세탁 행위를 범죄화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19) FATF는 불법자금과 관련된 1년 이상 혹은 6개월 이상의 자유형에 처할 수 있는 모든 범죄형태를 자금세탁범죄의 예비적 범죄로 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FATF, FATF Recommendation: International Standards on Combating Money Laundering and the Financing of Terrorism & Proliferation 34 (May, 2012).

재산의 가치의 크기를 불문하고 어떠한 형태의 재산에도 미칠 수 있으며 이에는 조세범죄의 수익(the proceeds of tax crimes)도 포함된다고 언급하고 있다.[220] 밀수 범죄 또한 관세 및 조세와 관련된 범죄로 분류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포괄적인 접근은 수사기관, 관세 및 수출입 관련 담당 기관 간의 국내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과 공조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221]

3. 국제통화기금(IMF)

OECD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는 제한된 노력에 비추어 국제통화기금은 훨씬 더 많은 회원국들을 보유하고 있어 영향력과 파급력이 보편적이고 강력하다. 국제통화기금은 세금 문제를 비롯하여 회원국 경제와 금융 정책이 경제발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 집행, 감독한다. 회원국이 국제통화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국제통화기구가 설정한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국제통화기금이 회원국에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통화기금은 감시(surveillance), 조건설정(conditionality), 기술적 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통하여 조세회피처에 반대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222]

하지만, 국제통화기금 또한 조세회피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있어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는 국제통화기금 이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의 이해관계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영국 재무부의 조세천국을 통하여 조세회피행위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대변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일부인 안길라(Anguilla), 버뮤다(Bermuda), 버진 아일랜드(the British Virgin Islands), 케이만 제도(Cayman Islands), 지브롤터(Gibralter), 게른세이(Guernsey), 만 제도(Isle of Man), 저지(Jersey), 몬세라트(Montserrat), 투르크 카이코스 제도(the Turks and Caicos Islands) 등은 유해 조세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해외금융중심지로 평가된 바 있다.[223] 안티구아(Antigua), 바

220) *Id.*, at 34.

221) Rui Tavares, Relationship between Money Laundering, Tax Evasion and Tax Havens, (Jan. 2013).

222) Gordon, *supra* note 110, at 524.

223) OECD, *supra* note 3, at 29.

부다(Barbuda), 바하마(Bahamas), 도미니카(Dominica), 그레나다(Grenada), 세인트 키츠 네비스(St. Kitts and Nevis), 세인트 루시아(St. Lucia), 세인트 빈센트(St. Vincent), 그레나디네스(Grenadines)와 같은 국제통화기금 이사회의 집행국 constituency를 이끌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국제통화기금 또한 조세천국 문제를 다룰 최상의 적임자라고 보기 힘든 면이 있었다. 국제통화기금이 다른 회원국에 손해를 가하는 특정지역의 국내 조세 정책에 대하여 기금(IMF)에서 제시하는 특정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릴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다.[224]

다만, 국제통화기금이 자금세탁과 관련된 정책적 의견을 표명한 바가 있다는 점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제4절 유럽의 조세회피처 이용행위에 대한 규제 움직임

1. 조세회피의 천국 유럽의 동향

유럽에서는 수년전부터 저렴한 법인세에 대한 경쟁의 광풍이 불기 시작하였다. 유럽연합통계청(Eurostat)과 EU위원회에서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EU에서 법인세는 90년대 중반 평균 35.3%였는데, 현재는 23.0%까지 떨어진 상태이다.[225] 유럽에서 가장 매력적인 과세율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 불가리아(10%) 그리고 아일란드(12.5%)와 사이프러스(12.5%)를 들 수 있다. 또한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도 법인세 15%로서 매력적인 투자조건을 제공하고 있는 나라이다.[226] 특히 벨기에는 외국의 거대기업들을 자국으로 유혹하기 위하여 특별한 방안을 생각해 냈는데, 그것은 기업자산의 이익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독일의 수많은 거대기업들은 벨기에에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거대자산을 국경 넘어 벨기에로 보낸 후, 후에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치 않고, 그 이익금을 다시 독일로 들여온다. 독일의 경우 기업들에게 조세회

224) Gordon, *supra* note 110, at 526-27.

225) http://www.spiegel.de/spiegel/print/d-95169274.html

226) *Id.*

피처로서 조세율이 낮은 이웃국가로서 네덜란드도 선호되고 있다.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거대법인은 네덜란드에 가장회사를 설립한 후, 독일에서는 부과되지만 네덜란드에서는 부과되지 않는 조세관련 자본을 네덜란드에 보낸다. 이것을 통하여 모회사는 모국에서 이득을 줄이는 대신 더 적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EU보고서에 의하면 네덜란드는 2012년도 말 3조 5천억 유로(약 5075조원)의 외국투자 성과를 올렸으며, 그 중 단지 5,730억 유로(약 830조 8천 5백억원)만이 실물경제에 들어가고, 그 나머지는 위장회사로 흘러들어 갔는데, 이러한 위장회사는 네덜란드에 약 23,000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227]

이와 같이 유럽에서도 수많은 기업들이 국내 세법상의 조세피난 허점을 이용하여, 그들의 자본과 소득을 멀리 떨어진 카리브 지역이나 인접지역인 벨기에, 아일랜드 또는 네덜란드와 같은 조세피난처에 보냄으로써 합법적으로 세무당국을 기만한다. EU위원회의 평가에 따르면 EU국가들은 탈세와 세금회피로 인하여 매년 1조유로(약 1450조원, 적용환율 1유로=1,450원)의 재정적 손실을 보고 있다.[228]

2. 조세회피처에 대한 유럽연합의 움직임

유럽연합은 2013년 5월 22일 개인과 기업들의 조세 회피행위를 막기 위하여 조세 회피 방지대책으로 27개 회원국 간 계좌정보 교환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당초 룩셈부르크와 오스트리아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회원국 정상들은 은행비밀주의 철폐의 첫 포문을 열었다. 룩셈부르크와 오스트리아는 EU회원국만 은행비밀주의를 없앨 경우 비회원국인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 등에 금융산업 중심국가의 이점을 모두 빼앗길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또한 유럽연합이 회원국 간 법제가 다른 것을 악용한 다국적기업의 탈세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법인세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앞서 5월 EU 정상회의에서 법인세 강화를 위한 국제공조를 약속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를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계열사 간 이중과세를 금지

227) http://wissen.spiegel.de/wissen/image/show.html?did=95169274&aref=image054/2013/05/17/CO-SP-2013-021 -0066-0068.PDF&thumb=false

228) http://www.spiegel.de/spiegel/print/d-95169274.html

해 편법적 조세회피의 온상이 된 '모회사와 자회사 간 거래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러한 개정지침에 의하면 모회사에 과세가 가능하게 되므로 앞으로 '이중 조세회피'는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모든 EU회원국 내에 탈세를 위한 자회사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수익을 이전하는 등의 회계 조작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229]

3. 유럽연합 일부 국가의 반발

하지만 룩셈부르크와 오스트리아는 유럽연합의 금융정보 공유 의무화를 지난 5월과 입장을 달리하여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230] 2013년 12월 10일 브뤼셀에서 열린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EU 집행위원회는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룩셈부르크와 오스트리아에 대해 은행비밀주의 철폐를 촉구했으나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그들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앞서 룩셈부르크는 2015년부터는 계좌정보 자동교환 제도에 동참할 의사를 밝혔었다. 하지만 다른 조세회피처와 보조를 맞춰 은행계좌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으로 후퇴했다. 특히 오스트리아는 EU 회원국 중 유일하게 은행계좌정보 자동교환 제도 참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이들 국가가 은행비밀주의 철폐를 거부함에 따라 올해 말까지 전 EU 회원국에서 은행계좌정보 자동교환을 전면 시행하려던 EU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으며, 따라서 연내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 조세회피행위 대응을 위한 독일의 탈세예방법 (Steuerhinterziehungsbekämpfungsgesetz: StHBekG)

세계적으로 거대한 독일의 화학그룹인 바스프(BASF: Badische Anilin- & Soda-Fabrik)는 수십억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유럽의 한 가운데에서 조세회피

229) EU 집행위는 내년 연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선 회원국 모두가 찬성해야 한다.

230) http://www.spiegel.de/wirtschaft/soziales/eu-gipfel-europaeer-vertagen-kampf-gegen-steuerflucht-a-901350.html

처를 모색하였다. 이 그룹은 벨기에의 앤트워프(Antwerpen)에 거대한 공장과 BASF 벨기에 협동센타(BASF Belgium Coordination Center)를 설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별도로 160명의 직원들로 구성된 특별한 조직을 구성하여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그 결과 2011년 바스프(BASF)는 실질적으로 거대한 이익을 거두었음에도, 단지 그들에게 부과된 세율은 2.6%에 불과하였다. 이렇게 기업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바스프(BASF)와 같이 유럽 이웃국가들의 저렴한 세율을 이용하는 기업이 바스프가 유일한 것은 아니다.[231] 예를 들어 독일의 폭스바겐(Volkswagen) 그룹은 벨기에에 자회사를 두고, 합법적으로 2012년 자회사를 통해 얻은 1억 5300만 유로의 이익에 대해 세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그 전년에는 1억 4100만 유로의 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면제받았다.[232] 한편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주의 재정장관인 노베르트 발터-보르얀스(Nobert Walter- Borjans)에 따르면 독일 국고의 경우 탈세와 조세회피로 인해 매년 1600억 유로(약 232조원)가 부족하다고 한다.[233] 이러한 이유 및 위에서 기술된 배경 하에 2009년 7월 3일 독일의 연방의회는 탈세예방법을 의결하였고, 일주일 후인 7월 10일 참의원 또한 본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7월 29일 공표되었다.[234] 이어서 연방정부는 2009년 8월 5일 동법시행령을 의결하였다(2010.1.1. 시행).[235]

이 법의 제정목적은 독일의 조세토대를 보호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다.[236] 따라서 탈세예방법과 그 시행령에는 특정된 국가와 지역에 대하여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법인, 그리고 특정된 국가와 지역에서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특정된 수입을 가지는 자연인에 대하여 새로운 의무 그리고 조세법 및 형법적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령에는 강

231) http://wissen.spiegel.de/wissen/image/show.html?did=95169274&aref=image054/2013/05/17/CO-SP-2013-021 -0066-0068.PDF&thumb=false

232) http://wissen.spiegel.de/wissen/image/show.html?did=95169274&aref=image054/2013/05/17/CO-SP-2013-021 -0066-0068.PDF&thumb=false

233) http://www.spiegel.de/spiegel/print/d-95169274.html

234) http://www.schladitz-spies-hesener.de/website/general/kompetenzen/steuerstraf_71/de/docs/sthbekg.pdf

235) http://www.iww.de/pstr/archiv/aktuelle-gesetzgebung-das-steuerhinterziehungsbekaempfungsgesetz--neue-praktische-probleme-und-rechtliche-risiken-f9786

236) http://www.schladitz-spies-hesener.de/website/general/kompetenzen/steuerstraf_71/de/docs/sthbekg.pdf

화된 조세의 참여의무와 공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의 침해로 인해 조세의 손실이 발생하면 동시에 형법적인 처벌이 뒤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 법은 외국에서의 과세재산에 대한 진상규명업무에 있어서 세무기관의 심사권한을 더욱 확장하고 있다.

가. 사인에 대한 규정

탈세예방법 제3조는 국세기본법(Abgabenordnung)의 변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 조에서는 적극적인 소득(소득세법〈Einkommensteuergesetz〉 제2조 제1항 4호에서 7호까지의 의미에서의 잉여소득)이 연 50만 유로 이상에 달하는 사인은 국세기본법 제147a조에 따라 잉여소득을 기초세우는 수입과 (세법상 면세 혜택이 있는) 필요 경비에 대한 기록 및 증빙서류를 6년 동안 보관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237] 또한 세무당국이 특정된 국가와 지역에서의 거래관계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단서를 입수하게 되면, 국세기본법 제90조 제2항 3문에 따라 세무당국은 납세의무자가 선서대신에 과세과정에서 행하는 진술의 정당성이 보장되는 것을 특히 필요로 하며, 사인은 이에 대해 협력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238] 즉 사인과 관련하여 본 법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소위 조세피난처로 간주되는 국가 혹은 지역에서 제3자와 거래관계를 갖고 있을 경우, 그에게는 세무당국에 대하여 특별한 협력의무와 증명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세무당국이 납세의무자로부터 과세에 필수 불가결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보제공의무와 증명의무는 납세의무자에게 더욱 적게 주어질 것이다.

나. 기업에 대한 규정

기업은 외국관련과세법(AStG: Gesetz über die Besteuerung bei Auslandsbeziehungen) 제1조 제2항의 의미에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과 거래관계를 가지면 탈세예방법 시행령 제1조 제4항 1문에 따라 광범위한 영역에서 거래관계에 대한 서류를 작성해야만

237) http://www.steuerzahler.de/Steuerhinterziehungsbekaempfungsgesetz/20041c23429i1p789/index.html
238) http://www.steuerzahler.de/Steuerhinterziehungsbekaempfungsgesetz/20041c23429i1p789/index.html

한다. 이것은 본사와 자회사 사이에 존재하는 국경을 넘나드는 대규모 회사내부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이다.[239] 만약 회사가 이러한 문서작성의무를 침해하면, 탈세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 의미에서, 특히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1f호에 따라 사업비용공제(소득세법 제4조 제4항)가 금지될 수 있다. 물론 탈세예방법시행령에 "국세기본법 제90조 제3항의 의미에서 문서작성의 종류, 내용 그리고 범위에 대한 시행령 - 이익한계문서작성시행령"(Verordnung zu Art, Inhalt und Umfang von Aufzeichnungen im Sinne des § 90 Abs. 3 der Abgabenordnung - Gewinnabgrenzungsaufzeichnungsverordnung: GAufzV)에 대한 참조지시가 없기 때문에, GAufzV에서 언급된 전체적인 의무들이 요구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기업이 특정된 서류를 조달할 수 없는 경우, 다시 말해 서류작성을 위한 정보획득이 사실상 불가능할 때에 그것은 기업의 부담으로 주어지지 않는다.[240] 특히 탈세예방법시행령 제1조 제4항 1문의 의미에서 공동출자자가 존립할 때, 조세납세자가 자기의 해외 사업파트너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취득하게 된다면, 비로소 이러한 원칙은 상당히 유효하다. 언제 그리고 어떻게 문서작성이 시사성 있게 제출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탈세예방법시행령 또는 국세기본법 제90조 제3항에서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GAufzV("국세기본법 제90조 제3항의 의미에서 문서작성의 종류, 내용 그리고 범위에 대한 규칙: 이익한계문서작성규칙") 제3조 제1항 2문에서 언급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서는 6개월 이내에 작성된 것이 시사성 있게 만들어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241]

외국에서 세무당국이 알지 못하는 자본수익이 발생하면, 납세의무자에게 외국에서 얻은 자본수익을 밝히고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 세무당국이 어떤 거래관계가 외국의 은행에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장래 어느 시점에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하는 경우, 세무당국은 국세기본법 제90조 제2항 3문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납세 신고시 선서대신에 행한 진술의 정당성이 보증된다는 확인을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한다. 만약 세무당국이 외국에서의 거래관계

239) http://www.iww.de/pstr/archiv/aktuelle-gesetzgebung-das-steuerhinterziehungsbekaempfungsgesetz--neue-praktische-probleme-und-rechtliche-risiken-f9786

240) http://www.iww.de/pstr/archiv/aktuelle-gesetzgebung-das-steuerhinterziehungsbekaempfungsgesetz--neue-praktische-probleme-und-rechtliche-risiken-f9786

241) http://www.iww.de/pstr/archiv/aktuelle-gesetzgebung-das-steuerhinterziehungsbekaempfungsgesetz--neue-praktische-probleme-und-rechtliche-risiken-f9786

에 대해서 조세기본법 제90조 제2항 3문의 의미에서의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단서"를 가지고 있음에도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에서 이것을 비밀로 하면, 세무당국은 이런 경우에 조세형법적인 수사절차를 개시해야만 한다.[242] 또한 여기에서 형법적인 수사의 적용범위는 선서 대신에 행하는 보증의 경우들에 머무르지 않고, 납세의무자는 추가로 형법 제156조에 따른 처벌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

국세기본법의 변경에 의하여(탈세예방법 제3조) 납세의무자는 소위 조세회피처에서 행해지는 거래관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90조 제2항 3문에 따라 세무기관으로부터 그의 진술이 선서를 대신할 만큼 정확하다는 것을 보증할 의무를 진다. 선서를 대신할 만한 보증은 강제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비협조적인 행위에 대하여는 과세의 근거로 평가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신고 되지 않은 또는 납세의무 있는 높은 수익이 존재한다는 것이 추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처벌규정

납세의무자가 선서대신에 하는 진술의 정당성을 보증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하여 세무당국은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1f호에 따라 필요경비의 공제를 금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조세기본법 제162조 제2항 3문에 따라 과세토대를 평가할 수 있거나 조세기본법 제193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명령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선서 대신에 행한 보증에서 납세의무자가 사실과 다른 허위보증을 제출하게 되면, 그 당사자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243]

또한 탈세예방법은 자수를 한 자에 대한 형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 이전인 2010년 이전에 자수한 자에게 형이 면제될 수 있는 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물론 2010년 이후 예를 들어 외국에서 달성된 자본소득을 숨기고 국세기본법 제90조 제2항 3문에 따라 선서 대신에 행한 자기진술의 정당성을 보증한 자가 형을 면제받고자 한다면, 세무당국에 조세관련 중대한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스스로

242) http://www.iww.de/pstr/archiv/aktuelle-gesetzgebung-das-steuerhinterziehungsbekaempfungsgesetz--neue -praktische-probleme-und-rechtliche-risiken-f9786

243) http://www.steuerzahler.de/Steuerhinterziehungsbekaempfungsgesetz/20041c23429i1p789/index.html

선서대신에 행한 잘못된 보증의 정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244]

영업비용과 필요경비공제의 전체적인 혹은 부분적인 거부(소득세법 제4조4항과 제9조), 배당금의 세액공제의 거부(법인세법 제8조1항) 및 소득세법 제8조 1항과 2항에 의한 자본회사지분의 양도 또는 이중과세의 방지에 대한 규정들로부터의 이윤에 대한 세액공제 거부의 예에서처럼, 협력의무와 증명의무의 불이행은 세법상의 규정들 및 특전의 완전한 또는 부분적인 제한으로 이끌 수 있다. 또한 예컨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1문에 따른 자산소득에 관한 원천징수 세율의 면제 또는 소득세법 제3조 제40호 1문과 2문에 따른 조세면제는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1f)cc)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신용기관에 가능한 한 많은 정보의 제공청구들을 요청한 후, 이를 조세기관에 제공했을 때 조세기관의 전권에 의하여 결정된다.

라. 비판

그런데 이러한 탈세예방법에 대하여는 한편으로는 조세피난처 국가들의 정보제공 의지의 부족과 비협조적인 행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거의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 법이 개인들 혹은 특정한 국가들과의 업무관계를 맺고 있는 대부분의 업무관계에 대해 탈세의혹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조차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245] 이것은 국제적 업무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국과의 사업관계의 존재가 위에서 언급된 방법과 제재조치들로 인해 정당화되지 않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유럽법상 외국에서의 자본수입의 소득이 현저히 어렵게 되고 이것에 의하여 자본교류의 자유와 거주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246] 그럼에도 독일 정부는 세법연감에서 조세피난처 폐쇄를 천명한 바 있다. 현재 연방의회와 참의원의 양원협의회에서 이에 대한 새로운 안이 2013년 제출되었으며, 현재 연방의회에 계류

244) http://www.spiegel.de/wirtschaft/soziales/offshore-leaks-deutsche-anleger-in-steueroasen-muessen-jetzt-zittern-a-892611.html

245) http://www.bundestag.de/dokumente/analysen/2009/Steuerhinterziehungsbekaempfungsgesetz.pdf

246) http://www.bundestag.de/dokumente/analysen/2009/Steuerhinterziehungsbekaempfungsgesetz.pdf

중이다. 독일의 연방정부는 이 안을 통해 조세피난 및 기타 탈세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시키고자 한다.

제5절 일본에서의 조세피난처 이용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

1. 조세피난대책 세제의 취지 및 변화

가. 조세피난대책 세제의 목적

일본의 조세피난대책 세제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환경에서 자국 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조속한 대응이 요구되어 입법화되었다. 제도 도입 당시 국회의 논의에 따르면, 일본의 조세피난대책 세제의 목적은 국제적인 조세회피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조세피난대책 세제의 대상 즉, 경과세 국가에서 재정 합리성이 없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낮은 실효 세율의 이점을 얻어 거주지 국가세금 감면을 수혜 하는 비납세 주체 및 대상을 감시하자는 것이 취지라고 할 수 있다.[247]

그런데 조세피난대책 세제의 입법취지가 조세회피에 대처하는 조치인지 아니면 과세를 순연(繰延) 또는 이연(移延)[248]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냐는 점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조세피난대책 세제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입법취지의 설정방식에 따라 과세 구조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249] 예를 들어, 미국의 조세피난대책은 조세의 이연 방

247) 高橋元, 「タックス · ヘイブン対策税制の解説」, 清文社, 1979, p.92; 伴忠彦, 「30年目のタックス · ヘイブン対策税制」, 租税研究 2010年 2月号; 青山慶二, 「外国子会社合算税制について」, 租税研究 2010年 9月号.

248) 이연법인세(deferred income tax)란 회계상의 이익과 과세표준과 일시적인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차이로 인한 세금효과를 이연하는 것을 말하는데, 법인세법상 납부해야 할 금액이 법인세비용을 초과하는 때 초과하는 금액을 이연법인세자산(移延法人税資産)이라 한다. 또한 법인세비용이 법인세법상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이연법인세부채(移延法人税負債)라 한다. 이러한 이연법인세 회계는 법인세비용이 회계상의 이익과 일정한 관계로 나타나도록 함으로써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충실하고 기업의 수익력 왜곡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다(IFRS 会計基準内容, http://www.ifrstv.jp/).

249) 租税回避対応か、課税繰延べへの措置かにより、特定外国子会社の所得のうち分配済みの配当金額を合

지 측면이 강하지만, 영국에서는 외국 법인 배당이익금 산입제도의 도입이나 OECD에서의 논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세피난대책 세제가 조세회피의 방지를 위한 목적에 더 근접해 있다고 볼 수 있다.[250] 그래서 입법취지와 동떨어진 세무집행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명확하게 하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 논의의 주된 내용이라 하겠다.

조세피난대책 세제와 관련하여 1977년 6월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는 주로 다국적 기업의 국제경제 내용에 대한 결의가 중심이 되었다.[251] 이는 일본의 세계경제 활동에 있어 국제적 교류가 비약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과 대외 투자가 증가하고, 외국 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간의 경제교류와 자본의 이동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제적 기업에 대한 이중 과세를 방지하고, 기업 측에서 조세피난의 방법 등을 이용하여 납세 기피를 불가능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에 의회에서의 논의를 피할 수 없었다. 일본에서는 조세 조약이 다수 체결돼 왔지만 다국적 기업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수많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UN이나 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다국적 기업 문제에 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조세피난과 관련된 문제를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세재 실시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였다. 첫째, 다국적 기업문제 대책을 위해 각료 간담회 설치를 검토하고, 각 지역 간의 행정담당사무를 연계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응체제를 정비하였다. 둘째, UN이나 OECD와 같은 국제기구의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제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일본 정부가 그러한 대책에 대해서는 국내 적용과 함께 국제적 기준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셋째,

---

算対象に含めるか、特定外国子会社の欠損金を親会社の所得と通算できるか、等の取り扱いが異なってくる. 特定外国子会社の欠損金について「CFC の欠損金額を株主たる親会社の所得と通算する事について、規定はない. 判例ではできないとしたものがある.課税繰延防止という趣旨からは損失の利用制限は導かれにくいという疑問も考えら得る一方、組合等についてさえ損失の利用制限が規定されることは珍しくない中でCFC 所在地国による所得計算も認めているならばなおさら通算は認めにくいとの反論も考えられる」浅妻章如,「国際的素材回避 タックス・ヘイブン対策税制(CFC 税制) について」; 金子宏編,「租税法の基本問題」, 有斐閣, 2008年.

250) 経済産業省 国際課税研究会,「国際課税制度の主要論点について: 中間的な議論の整理」, 2009年 8月.

251) 国会会議録検索システム(http://kokkai.ndl.go.jp/).

기업은 기존의 세제 미비점을 이용하여 납세회피를 도모하는 사례를 미리 방지하고, 세금을 누락하거나 조세회피 지역으로 도피하는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조치를 검토하였다. 넷째, 다국적 기업 간의 모기업과 자기업의 관계 혹은 본점의 경우 대체 가격 조작 등에 따른 조세회피에 관한 규제 조치를 재검토하였다. 다섯째, 다국적 기업에 의한 부패행위방지를 위해 필요한 법·제도를 정비하였다. 여섯째,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이 현지 민심에 반감을 주지 않도록 정부는 일본기업의 현지 활동 및 행동에 대한 엄정한 지도와 감독을 실시하였다.

나. 조세피난대책 관련 국제적 환경의 변화

198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국제적 조세회피 및 탈세(International Tax Avoidance and Evasion)」보고서에서는 경과세 국가 등을 이용한 국제적 조세회피에 대하여, 비록 합법이지만 허용되지 않는 세금 경감의 방법임을 언급하였다. 이후 발표된 OECD의 각종 보고서에서도 국제적 조세회피에 대한 각국의 대응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조세피난대책 세제의 입법취지를 살펴볼 때, 조세피난처(경과세 국가)를 이용하는 경우 세무 혜택을 검토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즉,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국제적 조세회피는 거주지 국가의 세금감면 기능, 과세유예 기능, 원천지 국가의 세금감면 기능으로 분류하고,[252]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일본 정부도 초점을 맞추었다.

1) 조세피난처에 대한 세계적인 압력의 고조

최근에는 조세피난처와 같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조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252) 藤井保憲,「タックス・ヘイブン対策税制の問題点」; 水野忠恒 編著,「国際課税の理論と課題」税務経理協会, 2005年; 조세피난처의 이용에 의한 국제적 조세회피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거주지 국가 세금감면 기능(본래라면 거주지 국가의 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할 것을 조세피난에 세원 이동, 거주지 국가에서 공제되는 사업 경비 등을 창출, 기타 기능), 둘째, 과세 유예 기능(거주지 국가 세금을 모면해 조세피난의 자회사에 유보된 소득이 조세피난국의 세제의 적용을 통해 비과세 또는 경과세가 되어, 해당 소득이 모회사에 배당으로서 분배될 때까지는 모회사의 거주지 국가 과세가 유예), 셋째, 원천지 국가 세금감면 기능(조세피난국에 설립된 법인이 조세피난국과 조세 조약 체결국의 거주자로부터 소득을 거둬들이는 경우에 원천지 국가에서 세금 감면)이다.

국가나 지역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는 현재 세계적인 경제 불황을 반영한 세수 확보의 필요성에 의해 발생한 것이기도 하지만,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투자금이 금융 위기를 증폭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2009년 4월 1일과 2일에 런던에서 열린 제2차 주요 세계경제에 관한 정상회의(G20 London Summit: The London Summit 2009 on Stability, Growth and Jobs)에서는 금융시스템 강화를 선언하고, 조세피난처 등 국제적으로 합의된 조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국가와 지역에 대해서는 감시망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2)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의 해외 동향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및 탈세에 대한 국가 간 정보교류가 강화되는 추세를 보았을 때 OECD는 2002년부터 국가 간 조세정보교환협약을 주도하고 있고, 최근에는 공격적 조세회피(ATP: Aggressive Tax Planning)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기존의 조세정보교환협약의 한계로 최근 자동정보교환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둘째, OECD 국가의 평균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20.3% 수준에 이른다고 한다. 지하경제 규모가 높은 남유럽 국가들은 유럽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적인 세수확보 차원에서 탈세 방지를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미국, 일본, 영국 등의 지하경제 규모가 낮은 국가들에서도 최근에는 역외탈세 대책을 비롯한 다양한 과표양성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일본은 추가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해외보유자산 내역을 세무당국에 제출하는 국외재산 조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253]

셋째, 국제적 자금이동의 용이성이 증가함에 따라 조세회피와 탈세에 대한 대책 마련에 국가간 협조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는 것은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ATP) 대응방안과 조세피난처를 통한 탈세 대응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

253) F. Schneider et al., "Shadow Economies in Highly Developed OECD Countries: What Are the Driving Forces?", 2012; 최성은,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해외동향", 「조세·재정 BRIEF」, 한국조세연구원, 2013, 2면.

3)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에 대응

일본의 조세피난대책 세제의 창설은 1978년부터 기업 경영의 글로벌화나 IT기술의 고도화 등이 현격하게 진행되어 일본 기업을 둘러싼 비즈니스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한 때부터이다.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 상황을 해외 현지 법인 기업 수를 통해 살펴보면, 1995년의 해외진출 법인 수는 10,416개에서 2010년에는 18,599개로 약 1.8배로 증가했으며 특히, 중국에 대한 진출 건수가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 산업의 공동화 현상(日本産業の空洞化現象)'이 사회 문제로 인식되게 된 2000년대 이후 중국을 비롯해 급속히 생겨나 온 신흥국에의 일본 기업의 투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었지만, 리먼 쇼크(リーマン・ショック) 후의 역사적인 엔고와 지진에 의한 전력 공급의 불안 등은 제조·판매 거점의 해외 이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2000년의 인터넷 버블 붕괴 후에는 유럽과 북미 현지 법인 수가 제자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에 비해 중국을 필두로 하는 아시아 지역에서 현지 법인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254] 그리고 일본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외국 법인 수의 추이는 2010년에는 5,614개로 전년 대비 186개가 감소하고 그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지만, 2001년에 비해 약 1.3배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255]

일본의 해외 매출 및 생산비율의 추이는 아시아 지역에서 현지 법인의 증대에 따라 기업의 해외 생산 비중과 매출 비율도 2006년부터 2009년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시기를 거쳐 2011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256]

여전히 일본 기업은 해외에서의 제조·판매 거점이 증대하는 이유로 ① 성장이 현저한 신흥국 시장 개척, ② 제조비용의 삭감을 목적으로 한 인건비가 낮은 아시아 국가들의 제조 거점 이전, ③ 새로운 시장에서의 판매 채널의 확대, ④ 세제 그 다른 투자 우대 조치의 적용 등의 요소를 선정하고 있다. 특히, 최근 신흥국의 세율 인하와 각종 비과세 우대 조치는 아시아 지역 자회사의 총괄 회사 설립 거점으

254) 国税庁(http://www.nta.go.jp).

255) 国税庁(http://www.nta.go.jp).

256) 国際協力銀行 業務企画室 調査課,「製造業企業の海外事業展開に関する調査報告: 2012年度 海外直接投資アンケート結果」, 2013年; 平成24年度アジア拠点化立地推進調査等事業: 国際租税問題に関する調査(タックスヘイブン対策税制及び無形資産の取扱いについて), p.32.

로 일본 기업의 진출을 더 재촉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기업들의 행동에는 일본의 제조 기업이 과거 국내 생산·수출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현지 생산·판매에 비즈니스 모델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 제조 기업이 해외 생산 비중을 현재의 31.3%(2011년도)에서 중기적으로는 37.7%(2015년도)로 상승시킬 계획인 것으로도 앞으로 생산 거점의 해외 이전에 따른 산업 구조의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한편, 2008년 이후 엔고의 경향 속에서 2011년도는 국외에서 일본 기업의 M&A가 사상 최대 규모의 기록이 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57] 해외 현지 법인을 기능별로 보면 생산 거점이 48%, 판매 거점이 40%, 연구 개발 거점이 2%, 기타 10%가 되어 생산과 판매가 전체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실시된 해외에서의 M&A의 목적이 신규 시장·판매망(81.7%), 생산 능력 확대(35.8%)를 일차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이것을 입증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258]

4) 정보교환 협정체결의 가속화

일본의 대외적 환경요인이 변화됨에 따라 조세회피와 관련된 부정적인 과정들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국제적으로도 조세회피에 관한 심각성을 공감하고 공통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게 되었다.

2009년 4월 2일 OECD는 G20 런던서미트 정상 선언에 앞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조세기준의 실시상황에 대한 보고서(国際的に合意された租税の基準の実施状況についての進捗報告書)」를 공표하고, 82개 국가와 지역을 국제적으로 합의된 조세기준에 비협조적인 국가와 지역(BLACK List), 국제적으로 합의된 조세기준의 실시를 약속했지만 아직 실시되지 않은 국가와 지역(GRAY List) 및 국제적으로 합의된 조세기준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와 지역(WHITE List)으로 분류했다. 2012년 기준 일

257) M&Aの情報誌MARR　によると、2011年度の日本企業の海外M&A(IN-OUT)は、海外戦略強化、資源・エネルギーの安定確保などの動きを受けて, 474件, 7兆3264億円と, 件数, 金額ともに史上最高を記録した. 10年度に比べ件数では2 割増、金額では倍増だった。地域別金額は対北米3兆788億円、対欧州3兆368億円、対アジア5614億円の順で、対北米が対欧州をわずかに上回った」状況であった.

258) 株式会社 国際協力銀行業務企画室調査課,「わが国製造業企業の海外事業展開に関する調査報告: 2012年度海外直接投資アンケート結果(第24回)」2012年 12月.

본의 조세 조약체결국 현황은 전 세계 약 80여개의 국가에 이르고 있다.[259]

G20 런던서미트 정상회의 성명에서는 OECD보고서에도 언급한 것과 같이 조세정보교환에 비협조적인 국가·지역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BLACK List 및 GRAY List에 게재된 국가와 지역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조세기준의 수용대책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 때, OECD의 방침에서는 WHITE List에 포함되려면 적어도 12가지 OECD기준의 정보교환 규정을 담은 협정을 각국과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수개월에 걸친 각국 간 기존 조세조약의 정보교환 규정 개정이 진행되는 동시에, OECD가 책정한 모델 조약(OECDモデル情報交換協定)에 따른 형태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의 틀을 정한 협정(情報交換協定)을 새로 체결하는 움직임도 함께 진행하였다.

또한 2009년 4월 BLACK List에는 4개의 국가와 지역, GRAY List에는 38개의 국가와 지역이 게재되고 있었지만, 그 후 해당 국가와 지역이 정보교환 협정체결 등 국제적으로 합의된 조세기준의 수용에 힘쓴 결과, OECD가 공표한 최신 보고서에서는 BLACK List에 해당되는 국가와 지역은 없었고, GRAY List에 대해서도 13개의 국가와 지역만이 게시되어 전체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5) 세계 기준과의 정합성

조세피난 대책세제의 제정 목적은 기본적으로 조세회피 방지대책으로 되어 있지만, 개념과 목적의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는다면 효과적인 대응을 하는데 한계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세회피제도가 조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소득을 이동시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지 다른 요인을 예방 및 제거하기 위함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범위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원래 일본의 과세 대상 영역 밖인 해외 자회사의 소득을 합산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과세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하여 발생가능한 문제의 소지를 예측하고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259) 財務省(www.mof.go.jp);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www.jetro.go.jp)

이러한 상황에서 조세피난 대책세제에 의해 합산되는 소득의 범위는 가능한 한 국제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일본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영국에서는 최근 내국 법인의 소득에 대한 개념을 내국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이라는 것으로 전환하여 적용하여 관련 제도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하는 법률개정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OECD에서는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국제 과세 원칙의 재검토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BEPS에 대해서는 2013년 2월에 보고서(세원잠식과 소득이전에 대한 대응, 「Addressing the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가 공표되었다. OECD는 이 보고서에서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과거의 통계자료를 사용해 분석한 후 최근 변화하는 글로벌 사업모델의 특징을 소개하면서 한편으로 국제조세에 대한 과세기준이 이러한 환경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틀을 초월한 전체적이 접근과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검토 항목 중 하나로서 특정 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CFC: Controlled Foreign Company) 세제를 들 수 있다. BEPS의 공표에 앞서 EU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2012년 6월에 탈세에 대한 대응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공동 성명을 채택하였다.[260]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는 액션 플랜[261]을 채택해 2개의 제안을 채택하였다(C(2012)8806 final, C(2012)8805 final).[262]

---

260) Commission Europ enne, Communication De La Commission Au Parlement Europ en Et Au Conseil: sur les moyens concrets de renforcer la lutte contre la fraude et l'evasion fiscales, ycompris en ce qui concerne les pays tiers, Bruxelles, le 27.6. 2012, COM(2012) 351 final, pp. 1-14.

261) Europaische Kommission, Mitteilung Der Kommission An Das Europaische Parlament Und Den Rat: Aktionsplan zur Verstärkung der Bekämpfung von Steuerbetrug und Steuerhinterziehung, Brüssel, den 6.12.2012, COM(2012) 722 final, pp. 1-18.

262)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Recommendation on aggressive tax planning, Brussels, 6.12.2012, C(2012) 8806 final, pp. 1-6; EUROPEAN COMMISSION, regarding measures intended to encourage third countries to apply minimum standards of good governance in tax matters, Brussels, 6.12.2012, C(2012) 8805 final.

아울러 조세피난처가 조세회피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으로서 OECD는 유해한 조세경쟁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1998년에 「유해한 세금의 경쟁(有害な税の競争)」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외국 법인에 대한 대항세제 및 외국투자펀드 입법조치와 국제거래보고 및 은행정보 접근확보 등을 규정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조약 측면에서는 정보교환 강화와 국제적 협조집행 프로그램의 실시 및 징수 공조 등을 조세 조약에 편입하는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였고, 포럼 설치, 조세 도피처의 목록 작성, 비가맹국과 대화 촉진 등의 국제협조 강화 분야 항목들을 제시했다. 이로써 각국과 조세정보교환협정(TIEA: 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 체결에 응하지 않았던 국가들도 일본과 조세정보 교환협정 및 조세협정 서명을 하고 있으며, 일본의 정보교환 건수도 2006년 165건에서 2011년 1,006건으로 급증하게 되었다. 또한 일본·미국·영국·캐나다·호주·한국·중국·프랑스·독일의 9개국을 회원으로 런던 및 워싱턴에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Joint International Tax Shelter Information Center)가 설치되어 회원국 간 조세회피 거래에 대한 과세정보 교환, 국제적 조세회피 기법과 동향에 대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이유는 일본의 조세제도를 개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며, 국제적인 동향을 근거로 검토하고 추진했을 때 합리적인 세재가 나올 수가 있다.

다. 조세피난 대책세제의 연혁

1) 제도 창설의 취지와 개정 경위

일본의 조세회피대책 세제는 「1978년도 세제 개정에 관한 답신(税制改正に関する答申)」에 의해 제도화되었다.[263] 개정 당시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 문제가 국회에서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는바, 세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특별위원회의 결의를 받아[264] 시간적으로 상당히 촉박한 상황에서 입법화가 진행된 제도

263) 税制調査会, 昭和53年度の税制改正に関する答申: 昭和52年 12月.

264) 1978년 6월의 중의원 외무위원회 결의(「다국적 기업 등 국제경제에 관한 건」)에서 일본기업이 여러 제도의 미비를 악용하여 납세 의무의 회피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세금을 누락하거나 조세회피지역에 도피하는 행위를 하는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조치를 검토하기 위한 목적의 권고가 이루어졌다.

이다.[265] 1978년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세무 당국에서는 조세회피 행위에 대하여 외국 세액 공제제도와 관련된 실질적 소득자 과세규정에 근거하여 조세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규제해 왔다. 그러나 해당 규정에는 적용에 있어서 실질적 귀속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를 집행할 때에는 안정성이 떨어져 명문 규정의 조속한 제정이 요구되었다.[266]

국제적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이 각국에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게 된 것은 1960년대 이후의 저지(Jersey)·리히텐슈타인(Liechtenstein)·건지(Guernsey)·만아일(Isle of Man)을 비롯해 아일랜드의 더블린(Dublin of Ireland), 바하마(Bahamas)·버뮤다(Bermuda)·케이만 아일랜드(Cayman Islands)·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British Virgin Islands), 쿡 아일랜드(Cook Islands)·마샬 아일랜드(Marshall Islands)·말레이시아의 라부안섬(Labuan of Malaysia) 등의 역외금융센터(OFC: Offshore Financial Centers)에 의해 자금과 기업이 이들 국가에 집중되고, 국제적인 조세회피 또는 국제적 탈세의 온상으로 조세피난의 문제가 크게 다루어지게 되면서부터이다.[267] 게다가 1970년대에는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세계 각국에 미치는 정도가 커짐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더욱 부각되었으며, OECD와 UN에서도 다국적 기업의 조세피난의 남용 문제가 검토되게 된 1981년에 미국 세무 당국자의 입장에서 조세피난의 실태에 대한 연구 보고서(「Tax Havens and Their Use By United States Taxpayers-An Overview(1981)」)가 발표되어 조세회피에 대해 세무 당국의 입장에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이나 구체적인 제언이 이루어지는 등 국제

---

265) 小田嶋清治, 「タックス・ヘイブン対策税制の立法経緯と今後の動向」 中里実他編著 「国際租税訴訟の最前線」, 有斐閣, 2010年.

266) 武田昌輔 編著, 「DHC コンメンタール法人税法」, 第一法規出版, 1979年 .

267)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싱크탱크인 제트엔(Z/Yen)은 금융 중심 도시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는 도시를 국제금융센터로 정의하였다. IMF(2000)는 금융센터로서 기능할 수 있는 도시를 관할범위, 금융·법률 인프라의 구비정도, 금융시장 심도 및 유동성 정도에 따라 국제(International)금융센터, 지역(Regional)금융센터, 역외(Offshore)금융센터로 분류하였다. 이 중 역외금융이란 해외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해외에서 자금을 운용(out-out transactions)하는 금융방식을 말한다. 거주성을 기준으로 보면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비거주자를 상대로 대출 또는 투자하는 금융활동을 의미한다. 역외금융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을 역외금융센터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60여 국가(자치령 포함)의 90여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ttp://www.zyen.com/; 오대원·남수중, "홍콩의 위안화 역외금융시간 발전 가능성 연구",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동북아경제연구, 제25권 제2호, 2013, 217면.

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268]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196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조세회피대책 세제 도입에 나서게 되었고(미국은 1962년, 독일은 1972년, 프랑스는 1980년 영국은 1984년에 도입), 일본의 입법화(1978년)는 당시 미국과 유럽 주요국 중에서도 꽤 빠른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269]

이처럼 일본의 조세회피대책 세제는 1992년의 개정을 계기로 본 제도의 적용이 되는 특정 외국 자회사 등에 대해 종전의 지정 방식에서 법령 기준을 객관적으로 적용시켜 특정 외국 자회사 등을 판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정립된 것이다. 그리고 합산 대상이 되는 소득의 산정 방법으로는 자회사의 사업연도 단위로 과세·비과세를 판단하는 실체접근법(entity approach)을 도입했다. 당시 일본에 앞서 조세피난대책 세제를 도입하고 있던 미국과 독일은 모두 소득종류나 거래형태를 지정해 합산 대상으로 하는 소득접근법(income approach)에 따라 상당히 정밀한 제도를 적용하고 있었지만, 일본의 입법상황을 감안한다면 제도 설계를 위한 시간적 제약을 이유로 실체접근법 제도를 선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국제과세제도의 개정 경위와 조세피난대책 세재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270]

가) 국회 개정경위

- 1953년 외국 세액 공제 제도의 도입
- 1955년 미·일 조세 조약(이후 주요국과의 조약 네트워크를 구축)
- 1962년 외국세액 공제제도 확충(간접 외국세액 공제제도 도입)
- 1986년 이전가격 세제 도입
- 1988년 이전 가격 세제의 재검토(이후 2004-2007년, 2010년, 2011년 등)
- 1992년 과소 자본 세제의 도입

---

268) 藤井保憲, 「タックス・ヘイブン対策税制の問題点」, 2005年, 水野忠恒 編著, 「国際課税の理論と課題」, 税務経理協会, 2005年.

269) 藤井保憲, 「タックス・ヘイブン対策税制の問題点」, 2005年, 水野忠恒 編著, 「国際課税の理論と課題」, 税務経理協会, 2005年.

270) 経済産業省 貿易経済協力局 貿易振興課, 「平成24年度 アジア拠点化立地推進調査等事業: 国際租税問題に関する調査(タックスヘイブン対策税制及び無形資産の取扱いについて), 調査報告書, 2013年 3月, pp.19-20.

- 2004년 미·일간 새로운 조세 조약 및 과소 자본 세제의 재검토(2006년, 2012년)
- 2009년 국제적인 이중 과세 배제 방식의 재검토(간접 외국 세액 공제 제도 폐지 및 외국 자회사 배당 이익금에 산입 제도의 도입)
- 2011년 외국세액 공제 한도액의 재검토
- 2012년 과대 지급 이자 세제의 도입

나) 조세피난대책 세제 개정

- 1978년 조세 피난 대책 세제의 도입
- 1985년 적용 대상·유보 금액의 계산 방법의 재검토, 관리지배지주의를 채택하여 국가에 본점 등을 가진 외국 법인 간 관계로 관리지배지가 경과세국에 있는 외국 법인에 대한 본 제도 적용 확대
- 1988년 경과세 국가 등의 추가 지정(41지정 국가 또는 지역)
- 1992년 적용 대상 내국 법인의 범위 확대 및 경과세 국가 등 지정 제도의 폐지, 특정 외국 자회사 등의 범위의 정비
- 1993-2004년 특정 외국 자회사 등의 판정, 납세 의무자의 판정, 적용 제외 기준에 관한 필요한 요건 정비
- 2005년 특정 외국 자회사 등에 결손금의 이월기간 연장 및 합산대상 유보금액의 인건비 10% 상당액 공제 등
- 2006년 이익 잉여금액의 과세 계산 방법의 재검토
- 2007년 특정 외국 자회사 등이 의결권의 다른 주식 등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 등의 수당 및 적용 제외에 관한 서류 보존의 명확화
- 2008년 동족 주주들의 범위의 재검토
- 2009년 외국 자회사 배당 이익금에 산입 제도 창설에 따른 소요의 정비
- 2010년 외국 자회사 합산세제의 기준세율인 트리거(Trigger)의 인하, 적용대상법인 범위축소, 사업기준 및 비관련자 기준의 총괄 회사의 특례 창설, 자산성 소득합산 과세제도도입
- 2012년 외국 협력 업체에서 간접 배당 등의 계산에 관한 재검토

그런데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일본의 국내법 차원에서의 대응조치로는 조세피난대책 세제, 이전가격 세제, 과소자본 세제 등의 제도가 있다. 조세피난대책 세제는 이들 제도에서 가장 먼저 제도화(1978년)되어 도입부터 이미 35년이 지났다. 그 뒤 이전가격 세제(1986년도 세제 개정에 의해 도입)가 조세피난대책 세제보다 8년 후에 제도화되고 과소자본 세제(1992년도 세제 개정에 의해 도입)는 14년 후에 제도화되고 있다. 특히 이전가격 세제에 대해서는 세무 집행면에서 납세자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제도 자체 운용의 방법에 대해서 납세자에게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2004년도 이후의 개정에서 제도의 대폭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271]

한편, 조세피난대책 세제는 1992년에 도입 초기의 경과세국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특정 외국자회사 등의 판정을 각각의 법인마다 실시하는 실체접근법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20년 후인 2010년의 개정에서 자산성 소득합산과세 제도를 도입해 현행 제도인 실체접근법과 소득접근법의 절충식 제도로 크게 전환하게 되었다. 자산성 소득합산과세 제도의 도입은 2009년의 외국 자회사 배당 이익금에 산입제도와 균형을 맞추어 종전 제도의 수정을 실시한 것이며,[272] 일본의 조세피난대책 세제의 취지에 어떤 변화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세피난대책 세제의 조세회피 방지의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한 것이다.[273]

2) 현행 제도의 개요

현행 조세피난대책 세제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내국 법인이 특정 외국자회사의 발행 제 주식 10%이상을 직·간접적으로 가지는 경우, 그 특정 외국자회사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중 그 내국 법인의 가진 특정 외

---

271) 이전 가격 세제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뿐만 아니라 세무집행과 관련된 사무운영지침이 많이 언급되고 있지만, 그 단서가 되는 이전 가격 사무 운영 요령이 2001년에 공표되었고, 이후 1994년에 OECD는 이전 가격 가이드라인을 공표·개정하여 가격 산정 방법의 재검토 등에 관한 법령의 개정이 2004년 이후 이뤄졌다.

272) 保井久理子, 「外国子会社合算税制における新しい概念について: 資産性所得を中心として」, 税大論叢, 2011年 71号.

273) 青山慶二, 「外国子会社合算税制についてわが国の改正と英国との比較検討」, 租税研究, 2010年 9月号; 伴忠彦, 「30年目のタックス・ヘイブン対策税制」, 租税研究 2010年 2月号.

국자회사 주식에 대응하는 부분으로 계산한 금액(이하 '과세 대상 금액'이라 함)이 있을 때는 과세대상 금액을 내국 법인 수익의 액수로 간주하고 이익금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다. '특정 외국자회사'라 하면, 내국 법인 및 거주자(특수 관계인 비거주자 포함)가 발행하는 주식의 50%이상을 직·간접적으로 가지는 외국 법인으로 본점 또는 주요 사무소가 소재하는 국가 또는 지역(본점 소재지 국가)에 있어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부담이 일본에서 부과되는 세금부담에 비해 현저히 낮은(조세 부담 비율이 20%이하) 것을 말한다.

다만, 특정 외국자회사 등이 독립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본점 소재지 국가에서 사업 활동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경제적 합리성이 충분하여, 적용 제외 기준을 모두 채우는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합산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다. 적용 제외 기준에는 사업 기준, 실체 기준, 관리 지배 기준 및 소재지 국가 기준 4가지 기준이 있다. 사업 기준 판단에서 '주된 사업'의 판정에 대해서는 사업 지주회사의 경우에 총괄 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적용 제외기준[274]의 모든 것을 채워 특정 외국자회사 등이라고 해도, 「조세특별조치법」 제66조의 6 제4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 소득을 가진 경우에는 특정 소득액수의 합계액(부분 적용 대상금액) 중 해당 특정 외국자회사 등의 발행 제 주식 등의 10%이상을 직·간접적으로 가진 내국 법인의 그 가진 주식 등에 대응하는 부분으로 계산한 금액(부분 과세대상 금액)을 수익의 액수로 간주하고 그 내국 법인의 소득 금액의 계산상 이익금의 금액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다.[275]

일본의 조세피난대책 세제는 도입시의 지정 방식(BLACK List 방식)이 1992년 세제 개정에서 객관적 기준을 이용한 실체접근방식으로 변경되고, 2010년 세제 개정에서 일정한 자산성 소득합산 과세제도를 도입한 결과, 종전의 실체접근법에 소득접근법을 부분적으로 도입한 소위 절충형에 근접하고 있다.[276] 일본의 조세피

274) 財務省, 平成23年度税制改正大綱(平成22年 12月, 2-3頁); 平成22年度税制改正資料·平成23年度税制改正資料(http://www.mof.go.jp/).

275) 国税庁ホームページ(www.nta.go.jp); 税務調査 · 国際税務対策は エヌエムシイ税理士法人 税務総合戦略室(www.nmc-zeirishi.jp); 平成24年度アジア拠点化立地推進調査等事業(国際租税問題に関する調査(タックスヘイブン対策税制及び無形資産の取扱いについて), 前出, p.24.

276) OECD, "progress report on the jurisdictions surveyed by OECD global forum in implementing the internationally agreed tax standard: Progress made as at 2nd April 2009"(www.oecd.org/

난대책 세제의 검토에 들어가기 전에 조세피난의 식별기준 및 합산소득의 산정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세피난대책 세제의 합산소득 산정방법으로는 소득의 종류나 거래형태에 주목해서 합산대상 소득을 판정하는 소득접근법과 일정기준에 의한 제도의 대상이 되는 사업체를 인정하고 그 사업체 소득을 모두 합산대상으로 하는 실체접근법이 있다.

소득접근 방식(income approach)이란 특정 외국자회사 등이 특정 형태의 거래 또는 인식하는 소득의 종류에 주목하고 합산대상으로 정의된 특정 소득만 추려 합산하는 방식이다. 대상소득은 수동적 소득이나 일정한 능동적 소득(기업 그룹 간의 일정한 거래에서 생기는 소득이나 특정 외국자회사 등의 거주지국과의 경제적 결속이 희박한 소득 등)이다. 소득의 종류 등의 정밀한 제도 설계가 가능하지만, 납세자와 과세청 모두 사무 부담이 매우 크다.

한편, 실체접근법(entity approach)은 이른바 "all or nothing"의 과세방식이므로 조세피난을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한 견제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과도한 과세를 발생시키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제도가 비교적 간편하고, 세무 집행 면에서 사무부담이 경감되지만, 업태가 다른 복잡한 과세관계에 접근하기는 어려운 단점이 있다. 실체접근 방식을 활용할 경우에는 적용 제외기준 설정이 중요하여, 기업 간 실태를 파악함에 있어 괴리가 생기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실체접근 방식에는 대상 또는 비대상 국가나 지역을 사전에 등재하는 지정 방식과 객관적 기준의 대상이 되는 사업체를 개별적으로 판정하는 객관적 기준 방식이 있다. 조세피난의 식별방법은 국제조세협회(IFA: International Fiscal Association)의 분류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277]

---

dataoecd/38/14/42497950.pdf); 伴忠彦, 「タックス・ヘイブン対策税制の理論と執行上の問題点」, 本庄資 編著, 「国際課税の理論と実務」, 大蔵財務協会, 2011年; OECD의 2009년 보고서에 따르면 안도라(Andorra)등을 비롯한 36개국이 '국제적 기준에 따르기로 약속했지만 충분히 이행을 하지 않은 국가(Grey List)'로 규정하여 이들을 조세피난처(Tax Haven)로 명명하였다. '국제적 기준에 따르기로 약속하지 않은 국가(Black List)'로는 필리핀,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말레이시아가 분류되고 있으나 현재 이 리스트는 업데이트 중이며 가장 최근 자료(2012년 5월 18일)에 따르면 '국제적 기준에 따르기로 약속했지만 충분히 이행을 하지 않은 국가'는 나우루, 과테말라, 니우에 세 곳밖에 없으며 블랙리스트상의 국가는 없다(김윤옥, 2013년 신흥지역연구센터 동향 세미나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17-18면).

277) 本庄資, 「オフショア・タックス・ヘイブンをめぐる国際課税」, 日本租税研究協会, 2013年.

표 5-1 국제조세협회(IFA)의 조세피난 식별방법

ⅰ. 지정 방식
1) 블랙리스트 방식
2) 화이트리스트 방식

ⅱ. 객관적 기준
1) 과세 기준
a) 외국의 소득 과세에 적용되는 세율
b) 외국 자회사 세금 부담이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c) 외국 자회사 세금 부담이 모회사 거주지 국가 세금부담의 일정비율 이하
d) 외국 자회사의 과세 상황이 내국 법인의 과세 상황의 유사성을 고려
2) 과세 기준
a) 조세 조약의 부존재
b) 정보교환 규정 부존재
c) 금융상(은행) 비밀의 존재

ⅲ. 병용 방식

1978년 일본이 도입한 지정방식(BLACK List 방식)은 국제적 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도입된 지 15년여 만에 폐지되었다. BLACK List 지정방식이 폐지되면서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 및 소득에 부과되는 조세의 액수가 소득금액의 20%이하인 국가나 지역을 특정 외국 자회사 기준으로 변경됐다.[278] 즉, 일본의 조세피난대책 세제는 일정한 세금 부담 수준 이하의 관할에 있는 일정한 자회사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국 법인 등의 소득에 합산 과세하는 제도를 바탕으로 하고 소득접근법을 부분적으로 도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279]

라. 국회 중의원(国会衆議院) 회의 내용

1) 정보교환 협정체결의 필요성과 목적

국제적 환경변화와 흐름에 맞추어 체결된 일-버뮤다 조세협정(日･バミューダ租

278) 大蔵省告示, でリストアップされていた国及び地域, 全所得軽課税国等(アンドラ、アンギラ、バハマ、バハレーン、バミューダ、英領チャネル諸島、英領ヴァージン諸島、ケイマン諸島、香港、マン島、リヒテンシュタイン、マカオ、モナコ、モルディブ、ニューカレドニアなど), 国外源泉所得軽課税国等(パナマ、コスタ･リカなど), 特定事業所得軽課税国等(リベリア、オランダ領アンティール、ルクセンブルグ). 1979年.

279) 本庄資, 前出.

税協定)은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주요 내용으로 한 최초의 조세조약으로서 이와 유사한 실태를 반영한 내용의 협정을 체결할 필요성이 확인된 협정으로 그 의미가 크다. 이와 관련하여 타케마사 코이치(武正公一) 외무부 대신은 2009년 4월의 G20정상 성명과 금융시스템 강화에 관한 선언에서 조세피난대책의 강화와 그 일환으로 조세협약에 관한 정책 재검토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진 것을 지적하고, 이러한 금융 위기를 계기로 시작된 세계 경제 침체 속에서 조세에 관한 투명성 향상을 목표로 한 국제적인 분위기가 점점 더 고조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280] 이는 G20의 동향을 바탕으로 조세피난처 등 국제적으로 합의된 조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국가 및 지역과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진행하는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조세피난처로 간주하는 국가 및 지역

원래 조세피난처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가 없고, 세계적으로 통일된 개념과 기준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일본 정부로서는 어떠한 국가와 지역을 조세피난처로 간주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가졌다. 이와 관련하여 타케마사 코이치 외무부 대신은 버뮤다와 케이만 제도 등을 예를 들면서 현재 OECD기준에 따르면, 타국과 실효적 정보 교환의 실시, 세제 및 세무 집행에 대한 투명성 향상에 관한 내용 모두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그 지역이 국제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다고 언급하였고,[281] OECD가 공표한 GRAY List나 BLACK List 국가 및 지역을 주요 조세피난처로 염두에 두고 있음을 밝혔다.

3)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탈세 및 조세회피 행위의 실태 파악

조세피난처 문제를 거론하면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조세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국가 및 지역을 이용한 탈세 및 조세회피 행위의 실태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졌다. 그러나 재무성은 조세피난처로 연간 약 450조엔에서 630조엔의 자금이 유입

280) 第174回 国会衆議院外務委員会議録 第11号2頁(2010.4.9.).

281) 第174回 国会衆議院外務委員会議録 第11号16頁(2010.4.9.).

했고, 이 가운데 전 세계에서는 30조엔 정도, 일본에 대해서도 7,000억엔 정도가 세금을 피하려고 모인 돈이라는 민간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언급하고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액이나 조세회피 행위의 파악이 어려운 문제임을 밝혔다.[282] 이럴수록 조세회피 실태 파악에 대해 더 힘써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후쿠야마 데쓰로(福山哲郎) 외무성 대신은 조세회피를 하고 있는 실태가 어느 정도의 금액만큼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언급하였다.[283]

4) 일-버뮤다 조세협정에 의한 정보의 취급 및 정보교환 실효성 담보

일-버뮤다 조세협정에 의해 얻은 조세에 관한 정보가 납세자 권리 보호의 관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것에 대해 재무성은 국내법에 의해 입수한 정보와 마찬가지로 비밀로 취급하는데다 국내법에 따라 세무직원의 수비의무위반에는 국가공무원 규정보다 무거운 벌칙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해[284] 본 협정 체결에 의해서 세무 정보의 기밀성이 침해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버뮤다에는 소득에 대한 조세가 없기 때문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조세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정보교환의 실효성이 담보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타케마사 코이치(武正公一) 외무부 대신은 퇴직연금은 면세 대상이기 때문에 연금수급자들의 버뮤다 유치가 가능한 점을 상기한 다음, 버뮤다 측의 자주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조약상에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성실하게 준수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힘으로써[285] 실효성이 담보된다는 인식을 명확히 하였다.

---

282) 第174回 国会衆議院外務委員会議録 第11号5頁(2010.4.9.).
283) 第174回 国会参議院外交防衛委員会会議録 第13号3頁(2010.4.27.).
284) 第174回 国会衆議院外務委員会議録 第11号6頁(2010.4.9.).
285) 第174回 国会衆議院外務委員会議録 第13号8頁(2010.4.21.).

5) 조세피난처 등에 대한 향후 대응

일본 정부는 추후 조세피난처 등 국제적으로 합의된 조세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국가·지역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 또는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점에 대해서 타케마사 코이치(武正公一) 외무부 대신은 "일본으로부터의 자금 이동이 거액에 이르고 있는지, 또한 조세포탈 및 조세회피 행위에 이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지 등을 감안하여 협정 체결 상대국가와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였다. 타케마사 코이치(武正公一) 외무부 대신은 바하마와 케이만 제도를 예로 들고, 이른바 조세피난처라고 일반적으로 인식돼 왔던 국가·지역을 염두에 두고 조세포탈 및 조세회피 행위의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정보교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으며,[286] 향후 조세피난처의 국가·지역과의 정보교환협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6) 조세정보교환의 양자 협정을 국회 승인 조약으로 하는 경우의 기준

2010년 3월 24일에 제정된 「소득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所得税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에 대해 「조세조약실시특례법」일부 개정도 이루어졌다. 이 개정은 외국의 세무 당국과 세금에 관한 정보교환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실시한다는 관점에서 조세 조약이나 행정절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국에 대한 세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세무 당국 간의 행정절차상으로도 조세정보교환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향후 조세정보교환의 양자 협정은 조약으로 국회에 제출되게 되는가, 아니면 행정상 절차로 다루며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후쿠야마 데쓰로 외무성 대신은 개별 협정에 대해 이른바 '오히라 3원칙(大平三原則)'[287]에 따라 국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 여부를 판단해 가는 기준을 제시하였다.[288]

---

286) 第174回 国会衆議院外務委員会議録 第13号8頁(2010.4.21.).

287) 1974년 당시의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외상은 「헌법」제73조 3호와 관련된 내용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약의 기준을 나타낸 것이다, 이는 법률 및 재정 사항을 포함한 국가 간의 기본적인 관계를 규정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고 비준이 발효요건이 되는 것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288) 第174回 国会衆議院外務委員会議録 第16号2頁(2010.5.18).

조세에 관한 취급은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에도 문제이며, 탈세 및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대책으로 세무 당국 간의 세무와 관련된 정보의 신속한 교환 필요성이 제기되는 한편, 보호받는 개인과 기업 세무 정보의 비밀까지도 침해당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행정절차에 대한 점검기능을 할 필요도 있다.

일-버뮤다 조세협정에 대해서는 과세권의 배분규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라 3원칙'에 의한 국회 승인 조약으로 알려졌다고 생각되지만, 향후 정보교환에 관한 규정만 두 국가 간의 협정이 체결된 경우, 그것이 국회 승인 조약이 되는 것이 있는지 혹은 모두 행정상 절차로 처리되게 되는가는 정부 및 국회에서 '오히라 3원칙'을 토대로 한 구체적 판단이 요구되게 된다.

2. 조세피난대책 세제에 관한 논점

가. 외국 관계 회사의 범위

현행 조세피난대책 세제의 취지는 경과세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조세회피처에 자회사를 설치하고 자본 관계를 이용해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것에 대처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국 법인이 발행한 제 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 관계 회사 중 본점 소재지 국가의 세금 부담이 일본의 세금 부담에 비해 낮은 특정 외국 자회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소득이 포함된다.

그러나 특정 외국 자회사 등에 해당 여부의 전제가 되는 외국 관계 회사는 그 지분의 50%이상을 내국 법인이나 거주자뿐만 아니라 특수 관계 비거주자에 직접·간접으로 보유한 외국 법인을 의미하고, 이러한 특수 관계 비거주자에는 거주자의 친족 및 내국 법인의 임원이 포함되어 있어 관계자의 범위가 매우 넓다. 또한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 및 내국 법인과의 관계성을 고려하지 않아 모두 비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 측에서 판정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실무상 이런 외국 법인의 주주 구성을 비거주자의 소액 주주들까지 상세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세무조사시 문제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사례는 흔히 합작 상대방의 주주에 거주자 및 내국 법인을 포함시키는데 결국, 내국 법인

에 의한 50%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하여 외국 관계 회사로서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다.[289]

따라서 이러한 기준들은 결국 잠재적인 외국 관계 회사를 정하는 것이므로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도록 하고 외국 법인으로 한정해야 한다. 또한 해당 요건을 축소함으로써 비거주자인 친족 및 임원에 주식을 분산시킴으로써 합산과세를 피하도록 하는 사람이 외국 관계 회사에 해당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조세피난대책 세제를 적용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트리거율 및 적용 제외기준을 합리화함으로써 진정으로 과세되어야 할 대상을 좁혀 나가는 것이 선결과제이며, 해당 요건의 수정이 더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합산 대상국의 리스트화

합산 대상국의 리스트 지정제도 도입 시기의 조세피난은 경과세국에 설립한 자회사 등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조세피난이 되는 경과세의 국가와 지역을 지정·고시했다(BLACK List). 그러나 외국의 복잡한 세제 개정 움직임을 빠짐없이 적시에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290] 1992년 BLACK List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지금처럼 개별 외국 자회사의 조세부담 비율에 의한 판정방식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조세부담 비율의 계산은 불명확하기 때문에 예견가능성 확보의 관점에서 WHITE List의 공표도 필요하다.[291]

따라서 같은 국가에 설치되어 있는 외국 자회사도 합산 대상이 되는 회사가 되지 않은 업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고세율국에 입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이 명확한 것이므로 개별 조세부담 비율에 관계없이 항상 적용 제외 국가·지역으로 지정하자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WHITE

---

289) 米国議会の説明によると、10%保有要件は、「デミニマス基準」という意味合いであり、持分が小さく会社の方針決定への影響力が僅かな場合にCFC　税制が適用されないようにするためであるとされている; 미국에서 주주의 정의는 미국 시민이나 미국 법인 등의 "미국인"이며, 10%미만의 의결권 보유자는 제외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비거주자나 소수 주주는 외국 자회사(CFC) 판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290) 「改正税法のすべて」(平成 4年).

291) 영국의 경우 적용 제외지역으로 리스트를 정하고 요건을 완화한다. 다만, 현행 제도에서는 개별 외국 자회사의 조세부담 비율에 따라 판단하므로 같은 국가에 설치되어 있는 외국 자회사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 등에 따라 조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List를 구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부담 비율의 계산식을 명확화·간소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무세국 취급

현행 세재에서는 면세지역 혹은 조세부담 비율이 20%이하의 국가·지역에 본점 등을 두고 있는 외국 관계 회사는 합산 과세대상이 된다. 조세부담 비율에 의한 판정은 1992년 세제 개정에 있어서는 BLACK List 방식의 대체 방안으로서 도입된 것이지만, 개정 전의 BLACK List는 경과세 국가에 대한 개념으로써, 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거나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은 2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그 의미를 해석하였다.

합산 대상이 되는 특정 외국 자회사 등은 외국 관계 회사 본점 등이 무세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나, 외국 관계 회사의 조세부담 비율이 20%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그래서 외국 관계 회사가 면세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는 실제 조세부담 비율에 관계없이 합산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자원에 대한 권익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케이만 제도와 같은 면세국에 자회사를 설치하고, 그 자회사가 또 제3국에 자원에 대한 권익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사례에서는 케이만 제도에 위치해 있는 자회사가 자원 권익국에서 고정사업장(PE: Permanent Establishment) 과세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케이만 제도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합산 과세의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실제 조세부담의 유무에 상관없이 면세국에 소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합산 과세하려는 이유는 명확하진 않지만, 해당 요건은 제도 창설 당시부터 있었고, 1992년 세제 개정시 BLACK List 방식에서 조세부담비율에 의한 판정이 변경했을 때에도 삭제되지 않고 적용되고 있다. 2013년 세제 개정에서 무세국에 소재하는 경우라도 외국 세액공제의 이중 과세를 배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처럼 이중 과세는 발생하지 못하게 된 반면 외국 세액 공제에 의한 실무상의 번잡함의 문제는 무세국에 소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합산 과세한다는 요건을 폐지하였다.

라. 주된 사업의 판정

외국 관계 회사가 특정 외국 자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즉, 조세부담 비율의 계산에 의해 해당할 때에는 당해 외국 관계 회사의 소득이 없거나 또는 손실이 있을 때에는 주된 사업에 관련된 수입금액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법인세율로 판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적용 제외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도 사업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주요 사업으로서 어떤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지 판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경우 주된 사업의 판정에 대해서는 외국 관계 회사가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때 그 어느 것이 주된 사업인지는 각각의 사업에 속하는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의 상황, 사용인의 수, 고정시설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정하여야 한다.[292]

현행 제도는 매년 특정 외국 자회사인지 여부를 판정하게 되어 있는데, 판정에 해당하는 수입금에 의해 주요 사업이 무엇인지를 판정하면 연도에 따라 주요 사업이 변경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연도에 외국 자회사가 주식 양도를 하고, 당해 연도의 소득의 대부분이 양도 소득과 같게 되었을 경우, 주된 사업을 주식 보유로 판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293]

결국 주된 사업의 판정은 본 세제에 의한 합산 과세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판단 요소이다. 예를 들면, 복수 연도에 의해 판정하는 등 연도별로 주요 사업 판정이 자주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세계 각국의 제도에서도 주된 사업 구분에 따라 적용 요건을 바꾸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하고 있으며, 기업 활동의 내용도 복잡해지고 있으며 반드시 주요 사업을 하나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주된 사업 판단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

292) 「租税特別措置法基本通達」 66の6-8.

293) 미국과 독일은 소득접근법을 기본으로 활용하고 있어 CFC의 주된 사업의 종류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영국은 실체접근법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CFC의 주된 사업의 종류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프랑스는 실체접근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적용 제외 검토에 있어서 CFC의 주된 사업 구분에 따라 적용 요건이 바뀌진 않는다.

마. 트리거율 수준

트리거 세율은 1992년도 세제 개정에 의해, 종래의 경과세국 지정제도를 폐지한 대신 도입된 것으로서 각각의 법인 조세부담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지표이다. 또한, 경과세 국가의 범위는 원래 제도창설 시부터 그 국가 또는 지역의 법인 소득에 대한 실효 세율이 일본의 세율(약 50%)에 비해 2분의 1미만(25%미만)의 경우로 규정되어 있어 트리거 세율을 설정할 때도 그 수준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294] 그 후 2010년도 세제 개정에 의해 일본 기업의 주된 진출할 곳인 주변국의 법인세율 인하의 동향을 근거로 그 수준은 20%까지 인하되었다.

현재 일본의 법인세 실효 세율은 35%정도이므로 법인세 실효 세율의 약 절반이라는 기준을 적용했을 때는 20%라는 기준의 타당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는 바 세계 각국의 법인세 부담이 인하되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295]

또한 일본의 현재의 법인 실효 세율도 전회 개정 때인 2010년의 38%에서 36%로 낮아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트리거율 수준을 더욱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바. 예견 가능성의 관점에서 검토

국세청은 주요 세목별로 매년 과세 실적(누락 건수와 소득금액)을 발표하였다. 조세피난대책 세제를 포함한 국제 과세의 연례조사실적(법인세)에서는 2004년도

---

294) 「改正税法のすべて」(昭和53年).

295) 미국은 소득접근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외국 법인이 특정 외국 자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해당하는 실효 세율에 의한 판정은 이뤄지지 않는다. 다만, 미국 연방 법인세 최고 세율(35%)의 90%이상(31.5%)이 국가에 있으면, 법인 수준에서는 적용 제외의 형태로 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국은 실체접근법을 활용하고 있어 외국 법인이 특정 외국 자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해당하는 실효 세율에 의한 판정은 이뤄지지 않는다. 다만, CFC이 지방세(Local Tax)와 이에 대응하는 영국 법인세 중에서 75%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인 수준의 적용 제외로 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독일은 소득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어 수동적 소득 합산 과세 대상인지만 수동 소득 대비 소득세 부담액이 25%미만의 부담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정된다. 프랑스는 실체접근 방식을 시행하며 현지 법인세 부담은 프랑스세법을 적용해 계산했을 경우, 법인세액의 50%이하인지 여부(17% 전후)에 근거해서 판정한다. 또한 싱가포르(17%), 대만(17%), 홍콩(16.5%)등의 법정 세율은 이미 일본의 트리거율 수준(20%)보다 밑돌고 있는 상황이며, 태국에 대해서도 세제 개정에 의해 법정 세율이 20%까지 인하되면서 현재의 트리거율 수준 이하로 설정되었다.

전후에서 조사 데이터의 대상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누락 건수는 대체로 증가 추세에 있다. 탈루소득 금액은 〈표 5-2〉에서 살펴보면, 연도별로 차이가 있지만 이전가격조사에 의한 추징액은 사전확인 신청증가에 따라 2007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한편, 조세피난대책 세제에 대한 과세 실적에서는 누락 건수의 증가세가 뚜렷하고 누락된 금액도 예전처럼 연도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당국의 조사 체제 강화와 관련된 영향에 의한 것이라 여겨진다. 즉, 국세청에서는 국제화 대응 프로젝트 팀을 설치하여 조사체제를 강화하였고, 2007년 7월부터 복잡한 과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법무·금융 전문가를 임시로 채용하는 등 국제 과세에 관한 조사능력 향상을 도모해 왔다.

이전가격세제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비판을 받자 과세상의 투명성을 높이는 개정이 2000년에 들어와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조세피난대책 세제에 대해서는 조세피난의 자회사 등을 이용한 조세 회피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따라 일본의 과세 담당부서도 과세 정책을 강화하는 등 동일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한편, 조세피난대책 세제와 관련된 재판에서는 지금까지 실무적인 문제로는 적용제외 기준에 대한 사실인정이 많은 가운데 최근에는 제도의 근간에 관한 문제가 분쟁사건으로 등장하여 사법판단에 맡겨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296] 현행 조세피난대책 세제는 '업종'의 판정기준이나 소득범위 등 법률상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 많아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못한 과세를 받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과세 당국의 집행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관련 법 규정의 불명확한 기준이 해외 진출을 의도하는 일본 기업에 있어서의 저해 요인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마련이 필요하다.

---

296) 伴忠彦, 「30年目のタックス・ヘイブン対策税制」(租税研究 2010年 2月号); 平成24年度アジア拠点化立地推進調査等事業(国際租税問題に関する調査(タックスヘイブン対策税制及び無形資産の取扱いについて)), 前出, p.38; 東京地方裁判所平成22年(行ウ)第725号, 東京高等裁判所平成21年(行コ)第236号, 高裁判所(第二小法廷)平成21年(行ヒ)第199号, 最高裁判所(第一小法廷)平成20年(行ヒ)第43号, 東京地方裁判所平成18(行ウ)第714号, 東京高等裁判所平成20年(行コ)第100号, 最高裁判所(第二小法廷)平成20年(行ツ)第70号, 平成20年(行ヒ)第74号, 最高裁判所(第二小法廷)平成17年(行ヒ)第89号, 最高裁判所(第二小法廷)平成17年(行ヒ)第89号, 最高裁平成3年(行ツ)第172号.

표 5-2 법인의 국제 과세 관련 과세 상황의 추이

(단위: 건수, 억엔)

구분 및 연도	해외취득에 관한 조사			조세피난처 대책 세제에 관한 조사		이전가격세제에 관한 조사	
	조사건수	신고탈루 건수	신고탈루 소득금액	신고탈루 건수	신고탈루 소득금액	신고탈루 건수	신고탈루 소득금액
2011년	15247	3666	2878	102	315	182	837
2010년	13804	3578	2423	122	128	146	698
2009년	13145	3256	8014	112	246	100	687
2008년	14300	3297	2187	96	126	134	286
2007년	13153	3267	4458	98	507	481	1698
2006년	12623	2948	4261	81	158	101	1055
2005년	12059	3006	5332	86	176	119	2849
2004년		679	4080	76	487	82	2168
2003년		696	2156	66	36	62	758
2002년		796	3785	68	706	62	725
2001년		713	2241	68	52	43	857
2000년			1506	78	104	39	381
1999년				38	29	38	454

자료: 国税庁報道発表資料 法人税等の調査実績について, 2012.

* 주: 2004년도 이전 조사자료는 조사과 소관 법인에 관한 과세 실적임.

사. 외국 자회사 배당 이익금에 산입제도와의 관계

2009년도 세제 개정에 따라 외국 자회사 배당이익금에 산입제도가 도입되었다. 2009年 税制改正に関する答申(2009年 11月 税制調査会)에서는 외국 자회사 배당 이익금에 산입제도의 도입취지에 대해 첫째, 국제적 환경 변화로 인해 경제활동에 대한 과세는 일본 내 적절한 과세권의 확보와 일본 경제의 활성화 모두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의 필요, 둘째, 조세회피적인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기업 활동의 실태 등을 주시하면서 외국 자회사 합산 세제나 이전 가격 세제 등의 검토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의 완비 등을 강조하고 있다.[297]

297) 第一, 進展するグローバル化や事業形態の複雑化・多様化のもとで、クロスボーダーの経済活動に対する課税は、我が国の適切な課税権の確保と、経済活動に対する配慮や我が国経済の活性化とのバランスを保つ必要がある。我が国経済の活性化の観点から、我が国企業が海外市場で獲得する利益の国内還流に向けた環境整備が求められる中、企業が必要な時期に必要な金額だけ戻すことができることが重要である。(中略)外国税額控除制度についてはこうした企業の配当政策の決定に対する中立性の観点に加え、適切な二重課税の排除を維持しつつ、制度を簡素化する観点も踏まえ、間接外国税額控除制度に代えて、

즉, 외국 자회사 배당 이익금에 산입제도는 해외에서 얻은 이익을 국내에 환류 시켜 일본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간접 외국세액 공제제도 대신 이중과세 배제의 간소화가 가능하다.[298] 당해의 조세피난대책 세제 개정에 대해, 외국 자회사 배당 이익금에 산입제도에 의하여 과세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장치에 해당한다.[299]

그런데 2009년의 외국 자회사 배당이익금에 산입제도의 창설 등으로 유보치 뿐만 아니라 배당 몫까지 합한 합산 과세 방식에 개정되어 일정한 투자소득을 합산 대상으로 2010년도 개정에 따른 조세회피를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이 보다 분명히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300] 이와 같이 해외거래에 관련된 이중과세 배제방법으로 일본에서는 외국 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지만 외국 자회사 배당에 대해서는 2009년도 세제 개정에 의해 간접 외국 세액 공제제도가 외국 자회사 배당이익금에 산입하도록 변경되었다. 외국 세액공제제도 하에서는 비록 자회사의 진출할 국가의 세율이 일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도 일본 기업의 납세액은 일본의 법인세율에 수렴하므로 세금 부담의 관점에서는 해외 진출할 곳의 세제는 일본의 모회사의 세금 부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한편, 외국 자회사 배당이익금에 산입제도 같은 국외 소득면제방식을 채택했을 경우에는 진출할 국가의 세율이 일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지 법인에 의한 해외 전개를 추진함으로써 기업 전체의 세금 부담액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저 세율국 진출의 인센티브가 더 높아지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2009년도 세제 개정에 따라 외국 자회사 배당이익금에 산입제도의 도입은 일본 기업의 자회사의 입지에 대해 경과세국으로의 전개를 촉진하는 계기

外国子会社からの配当について親会社の益金不算入とする.
第二, 租税回避的な行為を抑制する措置を講じていく観点から、企業活動の実態等を注視しつつ、外国子会社合算税制や移転価格税制等の見直しを不断に検討する必要がある.

298) 財務省 財務総合政策研究所研究部 「2009年度 税制改正が現地法人の配当送金に及ぼした効果—本社の資金需要に着目した分析」, 2010年.

299) 伴忠彦, 前出; ① 합산 대상 금액은 특정 외국 자회사 등의 미수 배당의 유보 소득에서는 아니고 그 결산에 근거한 소득으로 간주, ② 합산 과세와 소득을 재원으로 한 배당이 있을 경우의 조정계산과 세제 유보 금액의 손금 산입 제도는 폐지, ③ 특정 외국 자회사 등이 일정한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합산 대상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300) 青山慶二, 「外国子会社合算税制について」, 租税研究 2010年 9月号.

가 될 것으로 보여 진다.[301]

아울러 2009년도의 위의 개정을 따라 경제 산업성의 국제조세연구회에서는 조세피난 대책 세제를 2009년의 경제 실태에 맞춘 적용 제외 기준을 재검토의 필요성, 최근 각국 법인세율 인하를 밟은 제도의 재검토나 적용 제외의 입증 책임, 소득접근 방식에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였다.[302]

3. 조세피난대책 관련 법제 및 제도 검토

가. 「조세특별조치법」의 적용범위 및 조세피난 세제 내용

「조세특별조치법」은 모든 세목이 정책목적이 있고 그 필요성을 갖고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세목을 주요 세목으로 할 것인가는 분석대상에 따라 다르다.[303] OECD 조세체계 분류에서는 조세체계를 소득, 소비, 자산과세로 나누어 비교하고 있다. 여기서 소득세와 법인세의 소득과세, 소비과세로서의 소비세, 자산과세로서

---

301) 小田嶋清治, 「近時の国際課税実務の動向と企業の対応」, 中里実他 編著, 「国際租税訴訟の最前線」有斐閣, 2010年; 伴忠彦 前出, において「我が国の所得を軽課税の外国で発生させて無税配当で日本に還流すること、及び外国から我が国に流入する所得(例えば利子所得)の種類を無税配当へ転換することによる租税回避など懸念される. この懸念は特に、受動的所(足の速い所得)において強い, これまでは、仮に合算課税が見逃されたとしても、配当があれば（タイミングは遅れることになるが）一定の課税が確保できた(18)。しかし、今後は合算を見逃せば課税機会を失うことになる。この場合でも、我が国の所得を国外に移転させる行為に対しては、損益取引を水際で捕捉する課税が可能である。しかし、国外から我が国に流入する所得の種類転換による無税配当化は「外・外取引」となるため、我が国企業が行なう損益取引に着目した他の国内法の適用は困難となる場合が想定される。このような場合に、損益取引ではなく 国外における所得の発生に着目して課税するCFC 税制の重要性が、一層増加することになろう」.

302) 経済産業省 国際課税研究会, 「国際課税制度の主要論点について: 中間的な議論の整理」, 2009年 8月.

303) 「租税特別措置法」 制1條, 이 법률은 당분간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토지가치세, 등록면허세, 소비세, 주세. 담배세, 휘발유세, 지방휘발유세, 석유석탄세, 항공기 연료세, 자동차중량세, 인지세 기타의 내국세를 경감하거나 면제하거나 환급하거나 이들의 세금에 관한 납세의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 신고서 제출 기한 또는 징수 「소득세법」(1929년 법률 제33호), 「법인세법」(1929년 법률 제34호), 「상속세법」(1950년 법률 제73호), 「토지가치세법」(1991년 법률 제69호), 「등록면허세법」(1967년 법률 제35호), 「소비세법」(1988년 법률 제18호), 「주세법」(1953년 법률 제6호), 「담배세법」(1984년 법률 제72호), 「휘발유세법」(1957년 법률 제55호), 「지방휘발유세법」(1928년 법률 제14호), 「석유석탄세법」(1978년 법률 제25호), 「항공기연료세법」(1972년 법률 제7호), 「자동차중량세법」(1971년 법률 제89호), 「인지세법」(1967년 법률 제23호), 「국세통칙법」(1962년 법률 제66호) 및 「국세징수법」(1959년 법률 제147호) 특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상속·증여세를 일본의 주요 국세 세목으로 하고 있다.[304]

일본은 거품경제가 붕괴된 1990년대에도 공채발행을 통한 공공지출 증대, 감세 등을 통한 경기부양정책을 중심으로 취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추진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를 소위 '잃어버린 10년'이라 하여 경제상황이 거의 제자리걸음 또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경험하였다. 예컨대, 일본 내각부가 발행하는 「경제재정백서(經濟財政白書)」를 보면, 1990년대의 일본 명목 국내총생산(GDP)으로 본 경제성장률은 0-2%(1998년은 -1.2%, 1999년은 -0.6%의 마이너스의 성장률) 정도로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 후 2001년 출범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정권에서 구조개혁을 실시, 그 효과로 인해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비록 1-2%대의 낮은 수준이고, 플러스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지만, 2009년에는 다시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경제가 하강국면에 직면하고 있다.

경기침체에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이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소득과세이다. 비록 감세정책이 있었다고는 하나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인해 소득과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이에, 소득세와 법인세의 비중이 1990년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소득과세의 상대적인 비중 감소와는 반대로 소비과세 비중은 증가하여 왔다. 1989년 3%의 세율로 소비세를 실시하여 1996년까지 그 세율은 유지하여 왔지만, 소비세가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9년 5.7%에서 1996년 11.0%까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소득과세의 수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소비세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1997년의 소비세 세율 인상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1997년 4월부터 3%의 소비세율은 5%로 인상하면서 소비세의 비중은 1996년 11.0%에서 1998년 19.7%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소비과세만이 아닌 소득과세의 충실화를 꾀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기간세로서의 소득세 기능 회복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도와 맞물려 국세 수입 중 소득세 비중은 1999년 31.4%에서 2001년 35.6%까지 상승하였으나 그 이후 다시 하락하고 있다. 최근의 소득세 비중이 하락한 것은 지방으로의 세원이양 관점에서 2007년 소득세의 일부를 주민세로 전환한 것이 주된 요인이다.

---

304) 財務省, 財政金融統計月報, 租稅特輯; 川上尙貴, 「圖稅日本の稅制」, 財經報社, 2008年.

경제상황의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받는 것이 법인세인데, 법인세의 비중을 보면 거품경제붕괴의 영향으로 1990년 29.3%에서 1992년 23.9%, 1993년 21.3%까지 대폭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 후 1990년대 중반 25-26%까지 상승하였다가 다시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에는 21-23%로 내려오고 있다. 그러다가 2003년 이후 경제구조 개혁의 효과로 인한 경기회복으로 법인세 수입은 2006년 27.6%, 2008년 30.3%까지 상승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조세범처벌법」이라는 단행 법률에 의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일본은 조세범을 통합하여 규율하는 법률이 없고, 개별 세법마다 조세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위반행위 및 형량은 개별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등 개별 세법별로 벌칙에 대한 장을 따로 두어 위반 유형과 형량을 규정하고 있다.[305] 1978년 세제개혁 이전에는 조세피난처의 이용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고(「소득세법」 제12조, 「법인세법」 제11조) 해외 자회사의 유보이익을 실질적으로는 일본 모회사의 소득으로 간주하고, 자회사의 유보소득을 모회사에게 귀속시켜 과세하도록 하였다. 일본은 자국에 소재하는 모기업이 자회사를 조세피난처에 설립하여 그 법인 수익 및 자산을 지배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본래 내국법인에 분배되어야 할 사업소득 또는 자산소득 등을 유보 하는 등 조세부담의 부당한 경감을 꾀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조세부담의 공평과 과세권확보의 견지에서 1978년의 세제개혁에서 1978년 세제개혁에서는 미국의 Subpart F 규정을 준용하여 조세피난처 대책세제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306]

---

305) 法令データ提供システム(law.e-gov.go.jp, 재구성); 조세포탈죄, 원천징수의무 규정에 위반한 소득세포탈죄, 원천징수세액 부징수·불납부죄, 퇴직소득 관련 원천징수세액 미신고미납부죄, 무면허제조죄, 체납처분면탈죄(주체/객체), 미신고죄, 증빙서류 미제출·위조죄, 위조증빙서류 행사죄, 대표자 서명날인규정 위반죄, 세무조사방해죄, 세무정보에 관한 비밀누설죄, 기타 협력의무 위반(소비세법 §67, 주세법 §58), 기타 협력의무 위반(소비세법 §68, 주세법 §59, 국세징수법 §188, 조세특별조치법 §66의4 제12호, 조세특별조치법 §68의3의5 제11호), 기타 협력의무 위반(주세법 §60) 등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

306) 어떤 국가가 소득세가 없다면 그 국가에 회사를 설립하여 미국이 아닌 그 국가에 이익이 나게 거래구조를 설정하면 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는데, 미국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을 사용하여 조세피난의 방법을 예방하고자 한다. 첫째는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의 규정을 적용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준한 이익의 인식을 요구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법안은 형식적인 소유가 아닌 실질적인 소유에 준하여 회사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그 내용이 포괄적인 부분이 많으므로 강력한 규제 수단이 되고 있다. 둘째는 내국법인이 소유한 외국법인에서 발생하는 이익금 중 서브파트(Subpart) F 소득에 대하여 특별과세를 시행하는 방법이다. 서브파트 F 소득을 이해하려면 먼저 미국법인이 해외국가에 법인을 설립하고 소유할 때 발생하는 과세 세제를 이해해야하는데, 미국법인이 해외법인을 설립하면 미국 세법상 외국법

한편, 「조세특별조치법」상 조세피난 세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관

일본은 자국에 소재하는 모기업이 자회사를 조세피난처에 설립하여 그 법인 수익 및 자산을 지배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본래 내국법인에 분배되어야 할 사업소득 또는 자산소득을 유보하는 등 조세부담의 부당한 경감을 꾀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조세부담의 공평과 과세권확보의 견지에서 1978년의 세제개혁에서 미국의 Subpart F Rule을 준용하여 조세피난처 대책세제(특정 외국자회사 합산세제)를 도입하였다.[307]

일본의 법제는 1978년 도입 이래 9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특히 2005년 개정에 있어서는 합산대상소득의 손금산입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합산과세 적용기간 중의 결손금 이월기간 또한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외국관계회사의 판정에 있어 비거주자인 내국법인의 임원의 지분을 산입하고, 외국 신탁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 기금(FIF: Foreign Investment Fund)규정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2007년 개정에서는 이른바 법인도치(corporate inversion)에 대한 대응책으로 내국법인 등의 모회사 소득에 관하여도 유보금과세 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다. 아울러, 2008년 개정에서는 적용대상 내국법인 등의 판정에 동족주주그룹의 범위 내에 내국법인의 역원 등이 지배하는 법인이 추가되었고, 2010년 개정에서는 조세피난처 판정기준을 20%로 인하하였다.

인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이익금은 외국에서 과세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미국의 과세체계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다만, 그 자회사가 주주인 미국의 본사로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 미국의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인데, 만일 자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미국정부는 과세를 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예외로 정립한 개념이 서브파트 F 소득이며 이것은 자회사에서 발생한 소득 중 일반적으로 실질적 영업 또는 생산활동에 근거하지 않는 실체가 없는 소득이거나 이익 이전을 하기에 용이한 종류의 이익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단 서브파트 F 소득으로 간주되면 배당금의 유무와 상관없이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본사의 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되게 된다(Cornell Law School, http://www.law.cornell.edu/uscode/text/26/952); 濯口 博志/、管野 淺雄 共著, 「判例、裁決から みた 海外取引を めぐる 稅務」, 財團法人 大藏財務協會, 2005年 改訂版, p.121.

307) 濯口 博志/、管野 淺雄 共著, 「判例、裁決から みた 海外取引を めぐる 稅務」, 財團法人 大藏財務協會, 2005年 改訂版, p.121.

2) 조세피난처의 판정

외국관계자회사가 법적용의 대상이 되는 피지배외국법인인 특정외국자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외국자회사의 현지 법인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일본국 법인소득에 대한 세 부담에 비해 현저히 적은가 여부에 따라 판정되는데,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외국관계회사가 특정외국자회사가 되며 그 해당여부의 판단은 개개 외국관계회사의 사업 연도마다 행해지는데,[308]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된 세금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외국관계회사 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세액이 소득의 20%이하인 외국관계회사에 대한 판정이 이루어진다.

3) 납세의무자의 범위

조세피난처 대책세제의 납세의무자는 특정외국자회사의 발행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5% 이상 보유하는 내국법인이다. 또한 특수관계자 간에 주식을 분산 소유하여 조세피난처 세제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특수관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특정외국자회사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그룹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소유비율이 5% 미만이더라도 납세의무를 진다.[309]

4) 합산대상이 되는 유보소득

내국법인의 과세소득으로 간주하여 합산하는 금액은 다음의 순서로 계산된다.

첫째, 결산상 미처분 소득으로부터 조정소득금액을 산출한다. 특정외국자회사 등의 법인세 차감전 미처분 소득을 일본국 법령에 의해 산출하거나 본점소재지국의 법령에 의해 산출함으로써 조정소득을 산출한다.[310] 본점 소재지국의 법령에 의해 산출하는 경우에는 일본국 법령에 의해 산출하는 경우와 현저한 차이가 발

308) 「租稅特別措置法施行令」 제39조의14제1항.

309) 藤本哲也, 「法人稅法」, 平成21年度版, 中央經濟社, p.165.

310) 「租稅特別措置法」제40조의4 제1항 및 제2항, 제66조의6 제1항 및 제2항, 동법 조치령 제25조의20 제1항 및 제2항

생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미처분 소득의 산출한다. 위에서 산출한 조정소득금액에서 사업연도 개시일 전 7년 이내에 개시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공제하여 법인세 차감전 미처분 소득을 산출한다.[311]

셋째, 적용대상 유보금액을 산출한다. 위에서 산출한 미처분 소득으로부터 당해 사업연도 중에 납부가 확정된 법인세 및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로 공제된 금액이 적용대상유보금액이 된다.[312] 본점 소재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외국세액으로 공제하고, 이익처분한 후의 특정외국자회사 등에 유보된 소득금액이 적용대상 유보금액이 된다.

넷째, 과세대상 유보금액을 산출한다. 적용대상유보금액에 납세의무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보유 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대상유보금액이 된다. 이 금액은 특정외국자회사 등의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2개월을 경과한 날을 포함한 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된다.

5) 적용 제외기준

내국법인의 자회사가 조세피난처에 소재하고 있더라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한 조세피난처 과세제도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특정 외국자회사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조세피난처 과세제도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첫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사무소·점포·공장 기타 고정시설 등의 실체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상업의 관리·지배 및 운영을 자회사 스스로 하고 있을 것을 요한다.

둘째, 영위하는 사업의 구분에 따라 사업 활동을 주로 본점 소재지국 내에서 하고 있거나 그 사업을 주로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와 하고 있어야 한다. 대상 업종 중 은행, 신탁, 증권, 보험, 수운, 항공운송의 업종의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수

311) 「租稅特別措置法」 제40조의4 제1항 및 제2항, 제66조의6 제1항 및 제2항, 동법 조치령 제25조의20 제1항 및 제2항

312) 「租稅特別措置法」 제 40조의4 제1항, 제66조의6 제1항.

입금액의 50%이상이 관련자 이외의 자와의 거래에 의하여야 하며(비관련자 기준), 위 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인 농림업, 제조업, 광업, 건설업, 소매업, 서비스업 등의 경우 그 주된 사업으로서 본점 소재지국에서 행해질 것을 요건으로 한다. 아울러 비관련자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각 업종별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소매업(유형자산의 판매에 관계되는 수입금액 또는 판매에 관련된 대리 중개로 인한 수수료가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도 포함되는 취득가액), 은행업(수취 이자 또는 지급이자), 신탁업(신탁보수), 증권업(유가증권의 매각차익을 포함한 위탁 수수료), 해운업 또는 항공운송업(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 및 임대에 관한 수 입금액)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져 있다. 또한 소재지국 기준과 관련하여 부동산업과 물품임대업의 경우 추가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전자의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 부동산을 매매, 임대, 관리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으로 본점 소재지국에서 그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제공되는 물품의 임대를 행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313]

셋째, 주된 사업이 주식이나 채권의 보유, 공업소유권·저작권 등의 제공 또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임대가 아니어야 한다.

넷째, 그 밖의 기준으로 비지주회사 등의 요건으로 판례상 인정되는 예외기준은 특정 외국자회사 등의 주된 사업이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공업소유권 또는 저작권 제공 및 선박, 항공기의 임대사업이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한다.

6) 이중과세의 조정

이중과세의 조정은 외국에서 이미 법인세가 부과된 특정외국자회사의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본법인의 소득에 합산되어 다시 과세되는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에 준하여 특정외국자회사의 외국법인세를 일본법인의 세액으로부터 공제한다.[314] 아울러 특정외국자회사가 조세피난처 대책세제에 따른 합산과세를 받은 유보금액에서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된 배당을 한도로 하여 일본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315]

---

313) 「租稅特別措置法施行令」 제39조의17 제7항.

314) 「租稅特別措置法」 제66조의7 제1항.

나. 일-버뮤다 협정

1) 국제적인 조세피난처 대책 강화의 움직임

가) 조세피난처에 대한 국제사회의 권고

최근에는 조세피난처 등 국제적으로 합의된 조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국가·지역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엄격한 시선이 집중되게 되고 있다. 현재의 세계적인 경제 불황을 반영한 세수 확보의 필요성이 생긴 것이나 조세 피난처 등을 이용한 투자금이 금융 위기를 증폭한 것이 지적되고 있어 2009년 4월 1일 및 2일에 런던에서 열린 제2차 주요 세계 경제에 관한 정상 회의(G20 런던서미트)에서는 정상 성명[316] 및 금융 시스템 강화에 관한 선언[317]에서 조세 피난처 등 국제적으로 합의된 조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국가·지역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나) 정보교환 협정체결의 가속화

정보교환 협정체결의 가속화 압력의 고조를 배경으로, 2009년 4월 2일 OECD는 G20런던서미트 정상선언에 앞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조세 기준의 실시 상황에 대한 보고서(国際的に合意された租税の基準の実施状況についての進捗報告書)」를 공표하고, 82개의 국가와 지역을 국제적으로 합의된 조세 기준에 비협조적인 국가·지역(BLACK List), 국제적으로 합의된 조세 기준의 실시를 약속했지만 아직 실시되지 않은 국가·지역(GRAY List) 및 국제적으로 합의된 조세 기준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지역(WHITE List)로 분류했다.

이날 G20 런던서미트 정상성명에서는 이 OECD보고서에도 언급한 다음, 조세 정보의 교환에 비협조적인 국가·지역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구하는 용의가 있음

---

315) 「租税特別措置法」 第66조의8 第1항.

316) 「首脳声明(抄), 2009年4月2日, 於ロンドン」; "조세 피난처를 포함한 비협조적인 국가·지역에 대한 조치를 실시한다. 우리는 재정 및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제재할 용의가 있다. 은행 정보 시대는 끝났다. 우리는 세에 관한 정보 교환의 국제 기준에 반하고 있으면 글로벌 포럼에 의해 평가된 국가의 리스트를 오늘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가 발표한 것에 유의한다."

317) 「金融システムの強化に関する宣言(抄), 2009年4月2日、於ロンドン」"조세 피난처 및 비협조적인 국가·지역) "재정 및 국제 기준을, 비협조적인 국가·지역에 의한 리스크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하다. 우리는 모든 국가·지역에 대해 건전성, 조세, 머니 세탁 및 테러 자금 대책의 각 분야에서의 국제 기준을 엄수하도록 요구한다".

이 제기된 것부터 BLACK List 및 GRAY List에 게재된 국가와 지역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조세 기준의 수용을 위한 대응이 요구되게 되었다. 그 때 OECD의 방침에서는 WHITE List에 게재되려면 적어도 12가지 OECD기준의 정보 교환의 규정을 담은 협정을 각국과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1년 몇 달 사이에서 각국 간 기존 조세 조약의 정보교환규정 개정이 진행되는 동시에,[318] OECD가 책정한 모델 조약(OECD모델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형태의 조세에 관한 정보 교환의 틀을 정한 협정(이하 '정보교환협정')을 새로 체결하는 움직임도 가속하고 있다.

아울러 2009년 4월 시점에서는 BLACK List에는 4개의 국가·지역, GRAY List에는 38개의 국가 및 지역이 게재되고 있었지만, 그 후 해당 국가와 지역이 정보 교환 협정 체결 등의 국제적으로 합의된 조세 기준의 수용에 힘쓴 결과, OECD가 공표한 최신 보고서에서는 BLACK List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 GRAY List에 대해서는 13개의 국가·지역이 해당되는 등 전반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2) 일-버뮤다 조세협정에 대한 국회 논의

제174회 국회(2010년 1월 18일-6월 16일)에서는 6건의 조세 조약[319]의 승인 안건이 제출되어 중·참의원 심의를 거쳐[320] 모두 승인된 이들 중 5건은 최근 세계경제의 급속한 감속에 따라 각국의 세수 확보 등의 관점에서 조세에 관한 투명성 확보에 소극적인 국가·지역과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 시스템을 정비·확충하려는 국제적인 흐름에 따른 것이다. 그 중에서도 「탈세 방지를 위한 정보의 교환 및 개

318) 제174회 국회에 제출된 일본과 싱가포르 조세 협정 개정 의정서, 일본과 말레이시아 조세 협정 개정 의정서, 일-벨기에 조세 조약 개정 의정서 및 일·룩셈부르크 조세 조약 개정 의정서도 이러한 조세에 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응의 일환으로서, 블랙리스트 또는 그레이 리스트에 게재된 이들 4개국의 요청에 따라 OECD표준의 정보 교환 규정을 포함한 개정을 실시한 것이다.

319) 조세조약이란 원래 소득에 대한 국제적인 이중 과세 회피를 목적으로 체결 국간에 과세권을 조정하는 시스템을 설정하는 양자 조약을 가리키지만 최근에는 국제적인 조세 회피·탈세 방지에 관한 기능도 해오고 있어 일본이 체결한 조세 조약의 대부분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 교환, 조세의 징수 공조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해져 있다.

320) 제174회 국회에는, 일본과 싱가포르 조세 협정 개정 의정서, 일본과 말레이시아 조세 협정 개정 의정서, 일-벨기에 조세 조약 개정 의정서, 일·룩셈부르크 조세 조약 개정 의정서, 일-버뮤다 조세 협정 및 일본과 쿠웨이트 조세 조약이 제출되었다. 이들 중, 일·쿠웨이트 조세 조약은 양국 간의 과세권 조정을 중심으로 한 일반적인 조세 조약으로 다른 5조약은 조세에 관한 정보 교환 시스템을 정비·확충하려는 것이다.

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권의 배분에 관한 일본 정부와 버뮤다 정부 사이의 협정(脱税の防止のための情報の交換及び個人の所得についての課税権の配分に関する日本国政府とバミューダ政府との間の協定, 日·バミューダ租税協定)」[321]은 이른바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 및 조세 회피 행위에의 대책을 목적으로, 일본이 조세피난처로 하는 국가·지역과 체결하는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주안으로 한 최초의 조세 조약이므로 특별히 주목되는 협정이다.

따라서 향후의 정보교환을 주안으로 한 조세 조약 체결의 사례가 된다고 여겨지는 일-버뮤다 조세 협정에 초점을 맞춰 조세피난처 대책으로서 본 협정 제출 경위, 개요 및 국회 논의를 소개한다. 아울러, 향후 국제적인 조세포탈 및 조세회피 행위 대책의 동향과 일본이 정보 교환을 주안으로 한 조세 조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의 과제도 언급한다.

3) 일-버뮤다 조세협정의 개요

가) 일-버뮤다 협정체결의 경위

버뮤다는 소득에 대한 조세가 존재하지 않고, 이전부터 조세피난처로서 유명하다.[322] 2009년 4월 OECD보고서에서도 그레이리스트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본 기업의 진출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조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움직임을 바탕으로 2009년 6월 17일 일본 정부는 버뮤다 정부와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주안으로 한 조세 조약의 체결 교섭을 개시해서 2010년 2월 1일에 「일-버뮤다 조세협정(日 · バミューダ租税協定)」에 서명하기에 이르렀으며, 국회 승인을 거쳐 8월 1일 발효되고 있다.[323]

나) 일-버뮤다 협정의 주요 내용

일-버뮤다 협정은 OECD모델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형태로 조세에 관한 정보 교

321) 버뮤다는 영국의 해외 영토 중 하나이며, 독자적인 헌법을 가지고 광범위한 자치권을 받고 있으며, 조세처럼 일정한 분야에 대해서는 영국에서 조약 체결권을 수권되고 있다.

322) 다만, 버뮤다는 그 뒤 각국과 정보 교환 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등 국제적으로 합의된 조세 기준의 수용에 힘쓴 결과 현재는 화이트 리스트에 게재되어 있다.

323) 外務省, 日 · バミューダ租税協定の発効(http://www.mofa.go.jp).

환의 틀을 정하고, 일본과 버뮤다와의 인적 교류를 촉진한다는 관점에서 퇴직 연금 등의 특정 개인의 소득 과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교환의 대상이 되는 조세란 일본과 버뮤다 정부, 지방공공단체 등에서 부과되는 소득에 대한 조세를 의미한다(본 협정 제4조). 일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주민세·상속세·증여세이지만, 버뮤다에 대해서는 현재 소득에 대한 조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협정에서 대상이 되는 정보는 일본의 조세에 관한 정보뿐이며, 일본이 버뮤다에 대해 일방적으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게 된다.

둘째, 본 협정에 따라 정보교환을 위한 상세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제5조7). 이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원하는 정보와 해당 요청과 관련성을 나타내기 위해 소정의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종래 일본이 맺어 온 조세 조약의 정보 교환 규정보다도 더욱 상세한 절차 규정하였으며 요청자는 요청하는 정보의 특정에 대해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는가 하면 피 요청자도 일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꼭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생긴다.

셋째, 자기의 과세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정보 획득·제공할 의무가 있다(제5조 2, 4(a)). 피요청자는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으며, 자기의 과세 목적을 위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요청된 정보의 입수 · 제출 의무를 지고 있다. 또 은행 등 금융 기관이 보유한 정보도 제공 대상으로 정보 교환의 실효성이 향상되고 있다.

넷째, 제공된 정보의 비밀 유지의무가 있다(제8조, 제9조). 수령한 정보는 비밀로서 취급하는 조세 부과 및 징수 등의 결정에 관여하는 자 또는 당국에 대해서만 개시하여 그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또한 정보의 입수 및 제공 시 피 요청자의 법령 또는 행정상의 관행에 따라 정보를 가지는 사람에 보장된 절차상의 권리 및 보호는 계속 적용된다.

다섯째, 퇴직연금 등 특정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면제(과세권의 배분)이다(제14조). 퇴직연금 등 특정 개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일본 및 버뮤다 사이에 배분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권의 배분 규정은 기존 조세 조약에서도 볼 수 있는데, 버뮤다에는 소득에 대한 조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본의 퇴직연금 수급자가 버뮤다에 이주해 거주자가 됐을 때, 일본의 과세를 면제받고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는 이뤄지지 않는다.

4) 소결

최근 높아지고 온 조세피난처 등 국제적으로 합의된 조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국가·지역의 압력을 배경으로 그것들 국가·지역과 정보 교환 협정을 맺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미국 등이 맺은 정보 교환 협정 체결 수는 2009년부터 2010년 6월까지의 누계로 약 3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정보 교환 협정 체결은 세계적 조류이다.[324]

이러한 세계적인 움직임을 근거로 지금까지 말해 왔듯이 일본도 조세 피난처로 하는 국가·지역인 버뮤다와 조세에 관한 정보 교환에 주안을 둔 처음의 조세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2010년 5월에는 케이만 제도와 마찬가지로 정보 교환을 주체로 한 조세 협정의 체결에 대해 기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325] 향후 이러한 국가·지역과의 사이에서 같은 협정 체결의 움직임은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 때 국회 논의에서도 지적된 대로, 조세 피난처로 하는 국가·지역에는 소득에 대한 조세 없는 국가가 많은 정보 제공은 조세 피난처 측에서 일본에 대해 일방적으로 시행되기 위해 그 실효성이 어느 정도 보장될지의 여부는 향후의 큰 과제가 된다. 일-버뮤다 사이의 정보 제공의 실적 등을 충분히 모니터 하여 개선해야 할 점 등이 나타나면, 향후 조약 체결 교섭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전술대로, 국회 논의에서 조세 피난처 등을 이용한 탈세 및 조세 회피 행위에 대해 그 실태 파악이 힘들다고 하고, 탈세액 등의 현황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한 예로, 미국에서는 2004년에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사업 활동으로 획득한 이익에 대한 실효 세율이 불과 2.3%였던 것 등 세제의 미비에 의한 조세 피난처를 이용한 포탈의 실태를 지적한 뒤 새로운 국제 세제 개혁·강화를 실시함으로써 향후 10연간 약 2,100억 달러의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추이가 나타나는 만큼 조세 피난처 대책

324) 「日本経済新聞」(2010.8.1).

325) 일본에서 조세 피난처로 하는 국가·지역의 대외 직접 투자 중에서도, 케이만 제도에의 투자액은 압도적으로 크고 그 대부분은 조세 회피를 위한 페이퍼 컴퍼니 설립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 것부터, 케이만 제도와의 협정 체결의 효과가 주목된다.

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실태 파악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326] 향후,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개인·기업 세무 정보의 은닉에는 충분히 유의하여야 한다.

위에서 정보 교환 협정 등도 충분히 활용하면서 조세 피난처 등에 대한 자금 이동 등의 파악 또한 힘쓸 필요가 있다.

다. 국외재산 조서제출제도(國外財産調書制度)

1) 배경

일본은 지하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최근 개인의 해외보유 자산 증가로 인해 관련 소득 및 상속재산의 신고 누락이 급증하고 있어, 추가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개정된 국외재산 조서제출제도(国外財産調書制度)를 201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327] 일본의 지하경제 규모는 다양한 이유로 1990년대 이후로 감소하였는데,[328] 지속적인 감세정책으로 법인과 개인의 직접세 부담이 경감되어, 탈세 유인이 감소한 점과 폭력, 매춘 등 지하경제 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가 규모 감소의 주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밝혀냈다. 최근 해외재산 보유액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재산에 대한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상기 제도가 등장하게 되었다.

2010년 기준 해외재산 보유액을 보면, 외화예금 5.4조엔, 해외증권투자 9.0조엔으로 나타났고, 2009년 기준 해외재산 신고 누락액은 소득세와 상속세 조사 결과 14,051만엔으로 나타났다.[329]

---

326) 백악관 대통령보좌관실(2009년 5월 4일), (http://www.whitehouse.gov/the_press_office/Leveling-The-Playing-Field-Curbing-Tax-Havens-Andremoving-Tax-Incentives-For-Shifting-Jobs-Overseas/).

327) 国税庁, 「国外財産調書の提出制度のあらまし」, 2013.4. (http://www.nta.go.jp/shiraberu/ippanjoho/pamph/hotei/kokugai_zaisan/pdf/01.pdf); 최성은, 2012, 11-12쪽.

328) 浜銀総合研究所, "わが国の地下経済の規模を推計する", 2001.5.

329) 財務省 "国際課税関係(国外財産調書制度の創設等の改正", 2012.3.

2) 주요 내용

매년 12월 31일을 기준 해외 보유재산(예금, 채권, 부동산 등) 총액이 5천만엔을 초과하는 일본 거주자 개인에 대해 국외재산조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는 제도이다. 국적에 상관없이 일본 거주자(비영주자 제외)는 매년 관할 세무서에 해외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 비영주자는 외국 국적을 소지한 거주자로 과거 10년 동안 일본에 거주한 기간이 5년 이하인 개인을 의미한다. 또한 대상물은 국외에 있는 토지, 건물, 현금, 예금, 유가증권, 대부금, 서화, 골동품, 귀금속 등을 나타낸다.

시행기간은 매년 12월 31일까지의 해외 재산 보유현황을 기재하고, 그 다음해 3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최초 시행은 2013년 해외재산 보유현황을 2014년 1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제출하고, 처벌내용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하는 조서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조서에는 제출자의 성명, 주소뿐만 아니라 해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 소재 등을 기재(처벌) 국외 재산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페널티를 줌으로써 자진 신고를 장려하고자 하였다. 기재된 해외 재산에 대해 소득세·상속세의 신고 누락이 생겼을 경우, 국외 재산조서를 제출한 경우는 가산세가 5% 감액되지만, 국외 재산조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는 가산세가 5% 가중된다. 또한, 국외 재산조서에 허위 기재를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3) 시사점

급증하는 복지지출의 재원조달을 위한 추가적 세수확보방안으로서 지하경제의 양성화에 대한 이슈가 떠오르는 현 시점에서 해외국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제도이다.

지하경제는 합법적 부문 및 불법적 부문과 금전거래 및 비금전거래 등 매우 상이한 부문과 거래유형들이 혼재되어 있는 개념이므로, 그 실체나 규모의 파악이 힘든 부문이 있는데, 과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은 사채동결

조치, 금융실명제 실시, 신용카드사용 활성화 정책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다양한 추정방식 하에서 대략 GDP의 15-25%로 추정되며,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도 남유럽국가들과 유사하게 높은 편에 속하는 실정이다.

일본은 폭력 및 매춘 등 불법경제활동에 대한 대대적 규제로 지하경제 규모를 축소하는 기점을 마련한 바, 온라인 불법도박, 사채양성화 등 불법 활동의 영역에 대한 규제 등으로부터 과표양성화까지 다양한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국가들의 경우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추가적 세수확보라는 측면에서 지하경제 양성화가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지하경제 규모가 높은 국가들은 주로 높은 실업률과 자영업자 비중, 낮은 납세의식, 납세당국의 징수노력 부진, 금융정보의 연계성 부진, 금융자산 및 역외금융에 대한 조세회피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외국가들에서는 과세당국의 징수능력을 강화하고 효율화하는 다양한 조치와 소규모 사업체 및 자영업자들에 대한 납세순응도 제고를 위한 조치, 금융정보 및 업무의 연계 등의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데,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상거래 및 경제활동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과표양성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제적으로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와 탈세 및 역외금융에 대한 국가간 정보교류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어, 역외탈세에 국제적 정보공유 트렌드에 발맞추어 정보공유의 강화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4.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불법행위 사례[330]

가. 무형자산양도 및 대가지급 사례

A회사는 일본에서는 대기업 회사로서 국내 시장 점유율을 상당하지만, 해외 시장시장 점유율은 아직 낮아서 아시아 시장에서의 사업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어 싱가포르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있다. A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무형자산 중 싱가포

330) 平成24年度アジア拠点化立地推進調査等事業: 国際租税問題に関する調査(タックスヘイブン対策税制及び無形資産の取扱いについて), pp.152-155.

르 자회사로 이전하고자 주요 브랜드 제품에 대해 공업소유권 등 아시아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파악하였다. A회사에서 싱가포르 자회사에 무형 자산의 가치를 산정하여 매각하려고 하는데 싱가포르 자회사는 A회사 무형 자산에 대한 미래 로열티를 현재의 가치로 계산하여 산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A회사가 목적으로 하는 아시아 시장에서의 사업 확대에 직접적으로 무형자산을 활용하는 것이 기대되고 있다. 싱가포르 자회사는 아시아 시장의 제조·판매 회사에서 로열티를 받고 아시아 시장에 관련된 무형 자산의 연구 개발을 실시하는 관련 회사에 위탁 시험 연구비를 지불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 특허권 및 기술권 등의 무형자산양도 사례

B회사는 아시아 시장에서의 매출액이 그룹 전체 매출액의 20%를 넘어 영업이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장이기에 시장 점유율의 유지 및 사업의 새로운 확대를 바라며 보다 많은 기능·리스크를 아시아에 옮기는 것을 생각했다. B회사는 타이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주된 사업의 한 가지가 향후 일본 시장에서 성장은 거의 예상되지 않는 한편 아시아 시장에서는 지극히 호조를 보이는 상황이어서 미래 성장 시장인 아시아 시장을 본거지로 장래에 성과를 내기 위한 활동을 하고자 하였다. B회사는 이와 같이 일본 시장에서는 성장이 전망되지 않는 사업에 관련된 무형 자산을 아시아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타이 자회사에 무형 자산을 이전하는 것을 생각하였고, 해당 사업의 제품 개발 활동에 의해 발생한 노하우와 특허권 등에 대해서 타이 자회사로 이전을 하고자 한다.

다. 사업 및 이전가격상의 초기 가치평가 사례

해외의 동업 타사와의 경쟁과 제휴관계 속에서 C회사는 동업 타사가 보유하는 무형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필요성과 그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동업 타사와의 향후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C사도 자사가 보유하는 무형 자산의 종류와 가치를 분석·파악하고 그 활용 방법을 정리하는 것을 자사의 경영과제로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그 중에서 해외 시장에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무형 자산에 대해서는 해외 이전을 실시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C회사는 자사가 보유하는 무형 자산의 종류, 기능, 가치 등을 분석·심사하고 각각의 무형 자산의 활용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해외로의 이전이 최적이라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전 여부가 검토되고 있으며, 무형 자산을 어느 국가에 이전해야 사업상·세무상 유리한지에 대한 검토와 이전가격의 관점에서 무형 자산의 초기 가치평가에 대해서도 병행하여 살펴보고, 구체적인 해외 이전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라. 무형자산에 대한 크로스 라이센싱 계약 사례

D회사는 해외 진출을 목적으로 현지의 동종업체 X회사에 출자해왔다. 그 이후 세계시장규모의 이익, 마케팅 역량, 공동시험 및 연구개발과 관련된 크로스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한다. X회사의 시험연구활동에 사용하는 D회사 보유의 무형 자산에 대해서는 X회사에서 D회사에 로열티가 지급되고, 통합 후의 시험연구활동을 통해 X회사에서 축적된 무형 자산에 대해서는 그 사용에 대해 D사에서 X회사에 로열티가 지급된다. 세계시장을 겨냥한 시험연구활동을 일체적으로 활용함으로써, D회사 및 X회사가 보유한 무형 자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시험연구활동의 향상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크로스 라이센싱 계약을 통해 서서히 무형 자산이 D사에서 X회사에 이전될 전망이다.

마. 비용분담계약상 축적된 무형자산 사용대가 지불 사례

일본에 있는 E회사는 각국의 판매 자회사와 비용분담계약을 맺고 각 판매자 회사는 그 매상고에 따라 시험연구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제조기능이 실질적으로 아시아 자회사로 이전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에 연결하는 수많은 무형 자산에 대해서도 아시아 자회사로 이전함으로써 아시아 자회사를 본 사업의 본거지로서 활용할 방안을 검토하였다. E회사와 아시아 자회사 그리고 유럽 자회사의 3회사 간에 있어서 비용분담계약을 체결해 사업과 관련된 제품생산수량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되었다. 해당 비용분담계약을 통해

E회사와 아시아 자회사, 유럽 자회사의 각각 무형 자산이 귀속하고 각사가 일본, 아시아, 유럽 각 지역의 시험연구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또한 舊 비용분담계약의 대상이 되는 시험연구활동에 의해 축적된 무형 자산은 E회사 및 舊 비용분담계약의 참가자인 각국의 판매 자회사에 귀속하고 있으므로 해당 무형 자산의 사용에 대한 사용대가 지불이 이루어지고 있다.

바. 조세피난의 불법행위사례 경향

일본계 기업이 무형 자산의 해외 이전을 생각하는 배경과 해외 시장에서의 사업 전개 및 확대를 도모하는데 있어 다음 사업상의 요청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된다.

첫째, 미개척의 해외 시장에서 장래적인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무형 자산을 활용한다. 둘째, 국내 시장이 축소 경향에 있는 한편 해외 시장에서 좋은 사업에 대해 무형 자산을 옮기기로 사업의 새로운 확대를 도모한다. 셋째, 해외 기업 인수에 따라 기존의 시험 연구 기능과 인수 대상 회사에서의 시험 연구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무형 자산을 이전한다. 넷째, 해외의 경합 타사와의 경쟁력 유지의 관점에서 무형 자산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무형 자산의 해외 이전에 대해 검토한다.

이와 같이, 각각의 기업이 처한 사업 환경 속에서 해외에서의 사업 전개에 의한 현장에 가까운 곳에서 무형 자산을 활용하기 위해 무형 자산의 해외 이전이 검토되고 있다. 따라서 서구 기업들이 하는 절세를 목적으로 한 무형 자산의 이전은 적어도 실무상 거의 인지하지 않고 있다.

5. 조세피난 세제의 평가 및 제언

가. 조세피난 세제 평가

각국의 다국적 기업은 국제 경쟁이 더욱 더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층 더 기업의 활동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주요국의 조세제도를 주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각국에서도 세금부담에 있어 경감대책을 위한 정책을 도모하고 있으며, 각각의 법인실효세율을 인하하는 움직임을 흔히 볼 수 있다. 한편, 자본수용의 확대

를 목표로 국가·지역 내에는 이런 다국적 기업 유치의 관점에서 각종 혜택의 일환으로 법인세율 인하 등의 각종 세금우대 조치를 하는 곳도 있다. 이러한 우대 조치를 마련하는 움직임은 소위 조세피난이라고 불리는 국가들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을 중심에 선진국에서도 이뤄지고 있다.[331]

따라서 실효세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저과세 국가 등으로 자국의 기업 진출과 소득 이전이 진행되어, 결과적으로 자국 과세권의 침식이라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세계적 기준에서 살펴보더라도 법인세율이 높은 일본에서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어 이러한 일본 과세권의 침식이라는 사태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재검토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사태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우선 각국에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어떻게 보느냐는 문제가 있다. 역사적으로 유럽 국가는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시킴으로써 자국의 경제활동 범위 확대 및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국가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외에서의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자국 과세의 개입도 적다. 다만, 주요국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본국 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특정 해외 자회사 등에서 유보되는 소득에 대한 합산 세제(CFC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기본적 생각에 대해서는 각국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어, 구체적인 세제의 내용도 상당히 다르다.

각국의 CFC세제는 크게 두 가지 접근방법이 있다. 하나는 이른바 실체접근 방법으로 해외 자회사 자체의 성질에 주목해 사업상의 실태가 부족한 해외 자회사에 유보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또 하나는 이른바 수입접근 방법으로 해외 자회사의 소득 종류에 주목하는 이른바 같은 기업의 활동 실태가 따르지 않는 소득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해외 자회사의 경제 활동이 복잡화·다양화되고 있어 해외 자회사의 성질을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미국의 소득 종류별 과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이라는 관점에서는 이른바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GAAR: General Anti-Avoidance Rules)」을 도입하는 국가도 늘고 있다. 또한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금 면제를 고려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국제적 분위

331) OECD회원국 평균 실효 세율은 최근 10년 사이에 7%이상 낮아지고 있다.

기속에서도 미국은 오히려 전 세계 소득과세 강화방안을 검토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나. 조세피난대책 제언

일본의 조세피난대책 세제가 도입된 배경에는 미국을 비롯한 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다국적 기업의 해외 사업 전개에 따른 조세회피 행위에 대응할 필요성이 강하게 인식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OECD(1976)에서는「국제 투자 및 다국적 기업에 관한 선언(OECD Declaration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1976)」,「조세회피 및 탈세에 관한 이사회 권고(租税回避及び脱税に関する理事会勧告, 1977)」등에 의해 분명히 법적 조치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었다. 이처럼 일본의 조세피난대책 세제는 창설 당초는 이른바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성질을 기본적으로 유지해 왔다. 그러나 외국 자회사 배당 이익금에 산입 제도 도입에 따라 일본에서 조세피난대책의 창설 취지도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적어도 현상에 대해서는 여러 국가와 기업경쟁을 생각한 경우에는 기업의 적정한 해외 진출을 저해하지 않고 오히려 기업의 정당한 해외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생각 아래 현행 제도 자체의 틀 안에서 일정한 조치를 강구해 가는 각종 요건의 명확화와 정비를 함께 도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합산 대상이 되느냐 하는 점을 보더라도 예를 들면, 트리거 세율에 대해서는 그 세율수준의 고저뿐만 아니라 그 계산 방법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또한 사업 연도에 따라 합산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바뀌어 버린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복수 년도로 판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 이외에도 완전히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를 목록화하고, 제한적인 형태로 도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이른바 실체접근 방식을 채용한다는 전제에서 논의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른바 소득접근 방법과의 균형 속에서 논의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적용 제외 기준에 대해서도 가급적 객관적이고 간소한 기준을 목표로 해야 한다. 그 때는 이른바 '내료가공(来料加工)' 등의 기업 형태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세회피는 생각하기 어려운 사안에까지 형식적으로 해당 기준을 맞추어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에 입각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 기업과 M&A등의 경우, 사전에는 당사자에 상정할 수 없는 같은 형태로, 상대국 기업 관계 회사가 이 세제가 적용되는 것이 있는 것이다. 그 때 다른 국가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일정 기간(예를 들어 2년)의 면제 기간을 두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리고 본 제도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 측이 부담하는 여러 가지의 비용은 방대하여 이에 대한 대책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외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본 제도의 간소·명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각국 제도나 세계적인 조세 회피 행위 대책의 동향과의 조화 속에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조세피난대책 세제에 대해서는 기업 활동의 국제화의 진전과 국제세무를 둘러싼 제도 개정에서 새로운 위치 설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행 제도의 범위 내에서 상술한 바와 같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해 나가가더라도 앞으로도 여러 국가와 제도의 조화를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일본 기업의 해외 사업 활동의 원활화와 외국 기업과의 경쟁 조건의 균일화, 본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상대국과의 관계와 아시아 전개를 생각하는 일본 진출 외국 기업의 대응 등을 고려한 경우에는 본 제도의 명확성과 동시에 정당한 해외 기업 활동 지원이라는 메시지가 발산되는 것도 필요하다. 물론 여전히 제도 본래의 조세 회피적인 행위에의 대응에 대해서는 제도의 구조로서 기본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를 들면 영국처럼 이른바 소득접근 방법에 실체접근 방법의 장점을 적절히 가미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제적 상황은 조세피난과 관련된 현황과 제도의 적용에 있어 지금까지 담당해왔던 역할과 기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변화가 요구되는 시기가 되었다. 따라서 관련 제도의 구체적 방향성에 대해 제도 본래의 취지와 기업 활동 활성화라는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에서 균형 있는 시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균형 있는 관점은 앞서 살펴본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의 제도의 동향과 집행의 사례를 세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선행될 때 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제6장

결론: 대응방안 및 잔여문제

박미숙·강우예

06

결론: 대응방안 및 잔여문제

1. 대응방향

개인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절세하거나 또는 기업이 절세를 통해 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세부담이 적은 조세피난처에 거소를 두거나 지사를 설립하는 것은 불법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기업과 자산가들은 단순한 절세 차원에서가 아니라,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이를 '역외탈세'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그리고 조세회피처를 이용하는 사람과 기업은 한 곳에만 머물지 않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규제 유무가 그들에게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을 뿐더러 만약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곳으로 옮기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힘을 쏟고 있는 조세회피처에 대한 규제강화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대처는 거시적 그리고 미시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조세회피처가 활용되는 역외세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전문가 집단의 활동 역시 규제해야 하며, 특히 그들이 그 장소에서 무엇을 하는 지가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가능하게 하면서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규제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입법과 조세조약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실체법적인 대응에 그치지 않고, 과세당국이 국제적 조사와 징수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정보교환, 조사공조, 징수공조 등의 절차법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2. 조세 정보의 국제적 공유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제1원칙은 금융기관들이 고객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즉, 금융기관은 해당 계좌를 개설한 고객의 신상과 계좌의 실소유주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자금이 범죄로부터 유래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계좌들을 통하여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자금이 거래되는지를 감시해야 한다. 나아가, 금융기관은 해당 계좌가 불법행위와 연관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 이를 정부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 정보들은 타국의 과세당국에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332]

자금세탁과 관련된 범죄자를 수사하고 소추하는 데 있어 국제적인 협력은 필수적이다. 각국의 협력 하에 법인 내지 투자에 대한 실소유자 관련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국제적인 법질서의 복잡성, 불투명 및 불균형성이라는 측면에 숨어 탈법 및 불법이 행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333] 지나친 금융비밀보호주의는 범죄자를 추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법재산을 동결하고 몰수하는 것 또한 어렵게 한다.[334]

특정 국가가 지나치게 느슨한 금융 규제를 설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국의 세계화 수준에 따라 국제적인 제재의 효과의 강도가 결정된다. 즉, 해당 국가가 타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 있을수록 타국이 가하는 제재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므로 불공정하도록 느슨한 금융규제를 채택할 가능성도 낮을 수밖에 없다.[335]

---

332) FATF, Report on Non-Cooperative Countries and Territories 1-2 (2000)

333) Rui Tavares, Relationship between Money Laundering, Tax Evasion and Tax Havens, Special Committee on Organized Crime, Corruption and Money Laundering (Jan. 2013) at 4.

334) 현재 FATF의 에너지는 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 확산행위와 관련된 금융활동의 방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FATF, FATF Acts Against Terrorist Financing, Money Laundering and Non-cooperative Jurisdictions 1-3 (Feb. 1, 2002).

특히, 조세회피처들은 타국과의 금융거래가 없으면 경제적인 자립이 힘든 지역이다. 조세포탈이나 불법자금세탁이 이루어지는 중심지라고 지목되면 해당 조세회피처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FATF가 자금세탁중심지의 특징이라고 지적한 무기명의 은행 계좌를 통한 부적절한 고객 신상 확인 요건 혹은 금융당국 간의 정보교환의 부재와 같은 것들은 오히려 조세회피처의 위상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처에 자금세탁행위의 범죄화와 같은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불법자금세탁을 규제하는 법제도가 조세회피와 자금세탁을 구분하여 규제할 수 없다면 조세회피처가 유지하고 있는 은행비밀주의를 철폐하라는 압력이 높아질 것이다.[336] 현재, 은행 비밀주의 시대는 마감되고 있다. 가령, 미국은 스위스에 압력을 넣어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스위스 은행의 비밀주의를 포기하게 하는 데 성공했다.[337]

유럽연합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유럽연합과 회원국들을 포괄하는 법적 주주 등록과 관련하여 상호 연관되고 잘 통합된 체계의 수립을 시도하고 있다. 해당, 등록제도에는 이유에서 영업을 하는 회사의 주주와 관련된 모든 필요한 정보가 담겨있도록 하고 있다. 이 등록제도는 회사의 운영의 가장 의심스러운 측면을 항목화한 위험 기반의 지표(risk-based index)들과 함께 사용된다.[338] 또한 유럽연합은 정기적으로 갱신되는 실소유주 등록제도를 수립하고 있다. 이 등록 제도에 담긴 정보는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들 사이에 장벽 없이 공유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조세 덤핑과 같은 정책들이 지양될 수 있으며 각국 입법의 다양성이 범죄자들에 대해서 탈법의 기회로 작용하지 못하도록 의도하고 있다.[339]

그러나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200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조세회

335) Peter Schwarz, Money Launderers and Tax Hqvens: Two Sides of the Same Coin?, 31 Int'l Rev. L. & Econ. 37, 38-39 (2011).

336) *Id.*, at 39-41.

337) Carolyn Michelle Najera, Combating Offshore Tax Evasion: Why the United States Should be able to Prevent American Tax Evaders from Using Swiss Bank Accounts to Hide their Assets, 17 Sw. J. Int'l L. 205 (2011).

338) Rui Tavares, Relationship between Money Laundering, Tax Evasion and Tax Havens, Special Committee on Organized Crime, Corruption and Money Laundering (Jan. 2013) at 4.

339) *Id.,* at 4.

피처 내지 해외금융중심지들은 정보교환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다.[340] 정보교환협약에 서명한 조세회피처 내지 해외금융중심지들도 이를 실제로 집행하는 경우는 드물었다.[341] 조세회피처 내지 해외금융중심지에서 소득세를 부과하거나 비거주자의 소득 정보를 문제의 과세 당국에 통보하는 경우 국내의 이익을 창출하지 않고 외국 지역에 이득을 주는 효과가 있다. 해외금융중심지의 사업 동력 자체를 상실하는 등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342] 자금원의 신원과 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조세회피처의 성공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실제, 유럽, 북아메리카, 캐리비언, 동남아시아,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에서는 다양한 범죄 활동에서 유래한 자금들을 유치하여 경제적으로 상당한 번영을 누리고 있다. 이와 같은 이득을 누리고 있는 것은 선진국의 많은 국가들과 지역들을 비롯하여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소규모 국제적 금융센터들 또한 해당한다.[343] 조세회피처에 해당하는 국가 내지 지역은 타 지역 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여 주었다.[344] 또한, 조세회피처는 일면 선진 산업 국가에 대한 투자를 더욱 촉진시킨 부분이 있다고 보고되었다.[345] 오세아니아의 소규모 섬나라들을 포함하는 수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방식의 경제적 번영을 모방하고 싶어 한다.[346]

과거 개발도상국들이 자신들의 국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수십 개의 역외금융중심지가 창설되었다. 이러한 역외금융중심지(Offshore Financial

340) Bruce Zagaris, The Procedural Aspects of U.S. Tax Policy Towards Developing Countries: Too Many Sticks and No Carrots?, 35 Geo. Wash. Int'l L. Rev. 332-37 (2003).

341) *Id.*, at 335-36.

342) Robert Mathavious, Managing Dir., Fin. Services Comm'n of the British Virgin Islands, in Roadtown, British Virgin Islands, to author (Aug. 16, 2004).

343) P. R. Land and G. M. Milesi-Ferretti, "International Monetary Fund, Cross-Border Investment in Small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s", IMF Working Paper, WP/10/38, Washington D.C., February 2010 and Tax Justice Network, "IMF: trillions lost offshore", March 15, 2010; l E.J. Fagan, "IMF: Trillions of Undeclared Funds Offshore", Task Force, Financial Integrity & Economic Development, March 15, 2010.

344) J. R. Hines, Do Tax Havens Flourish? NBER Working Papers 10936.

345) M. A. Desai, C. F. Fritz & R. H., Jr. James, Do Tax Havens Divert Economic Activity? 90 Economics Letters 219 (2004).

346) OECD, Estimating Illicit Financial Flows Resulting from Drug Trafficking and Other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s, 109-115 (October, 2011).

Center, OFC)들 중에는 아주 최소한도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명목상의 역외금융중심지(nominal OFC)가 있는 반면에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실질적인 역외금융중심지(functional OFC) 또한 존재한다. 범죄 자금의 유래에 대하여 눈을 감는 방법으로 경제적 번영을 구가해서는 안 된다.[347] 즉, 모든 국가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사용할 권리가 있지만 이것이 타인과 타국에 손해를 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348] 그러나 국제적 자본유치 경쟁이 반드시 신사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조세회피처의 경우 문제의 자본이 불법적인 원인에서 유래한 것이건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이건 유치하는데 사활을 걸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정보교환 협약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특정한 개인의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해외금융중심지에서 반응을 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조세 회피와 관련된 혐의가 있는 경우에 정보를 효과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장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조세당국이 혐의자를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정보 신청을 위하여 국내법적 절차를 모두 밟아야 한다. 나아가, 혐의자와 관련한 어떠한 정보를 요구할 것인지를 정보 요구 전에 미리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349] 게다가, 이마저도 납세자가 해외금융중심지의 거주자라는 점을 표면적으로 위장하는 경우에는 의미 없는 규정이 될 수 있다.[350] 물론, 조세 정보 교환과 관련된 협정은 많은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해외 조세 회피와 관련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할 것으로 비판되고 있다.[351]

또한, 공유하고 교환할 금융정보를 해당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존재한다. 대부분의 해외금융중심지는 그 자체로 소득세가 없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타국에 통지할만한 자료를 축적할 제도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352] 예를 들어,

---

347) B. L. Bartlett, The negative Effects of Money Laundering on Economic Development, (Report for the Asian Development Bank), May 2002, pp. 29-33.

348) OECD, Estimating Illicit Financial Flows Resulting from Drug Trafficking and Other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s, 109-115 (October, 2011).

349) OECD, Improving Access to Bank Information for Tax Purposes 8-9, 19 (2000).

350) Gordon, *supra* note 110.

351) *Id.*, at 530-31.

352) Craig Boise, Regulating Tax Competition in Offshore Financial Centers (Case Research Paper

리히텐슈타인(Liechtenstein), 싱가폴(Singapore), 스위스(Switzerland)의 경우 고객의 비밀과 계좌 보유 비밀을 보장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353] 바하마(Bahamas)와 같이 세금이 없거나 매우 미약한 정도로만 부과하는 지역에서는 정부가 조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354] 나아가 몇몇 국가에서는 섬세한 조세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355] 만일, 역내 국가가 이러한 조세회피처의 정부기관에 조세관련 정보를 요청할 때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3. 조세회피처 지정제도

앞에서 살핀 대로 OECD가 2000년의 보고서에서 조세회피처에 대한 지정을 시작한 이래 많은 국제기구와 국가들에서 이를 행하고 있다. 조세회피처로 지정하는 첫 번째 목적은 해당 지역에 낙인을 하고 불명예를 안기는 것이다. 실제, 사업자들은 지목된 조세회피처와는 거래를 꺼리는 경제적인 타격이 있게 된다. 따라서 목록에 이름을 올린 지역 내지 국가들은 해당 목록에서 제외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 현재 OECD 조세회피처의 목록에는 하나의 국가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현재의 국제기구들이 권고하고 지시하는 바에 따르면, 역내 금융기관들은 FATF, OECD 및 세계은행의 StAR의 블랙리스트에 나타난 지역에서 영업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된다. 우선, OECD는 비협조적인 조세회피처와 관련된 행위나 조세회피처에서의 유해한 조세행위에 대해서 금융기관의 정보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 제재하도록 하고 있다.[356]

Series in Legal Studies, Working Paper No. 08-26, 2008) at 25.

353) Greg Brabec, The Fight for Transparency: International Pressure to Make Swiss Banking Procedures Less Restrictive, 21 Temp. Int'l & Comp. L.J. 231, 232 (2007).

354) Raymond T. Gibson, The Bahamas - The Tax-Free Alternative to Florida, Vault Mag., Sept. 2002.

355) Richard M. Bird & Eric M. Zolt, Introduction to Tax Policy Design and Development 6 (Apr. 2003) (unpublished draft prepared for a course on Practical Issues of Tax Policy in Developing Countries, World Bank, April 28-May 1, 2003).

356) OECD, *supra* note 3, at 25.

또한, FATF의 경우 2000년을 기점으로 매년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비협조지역에 대한 조사를 하고 목록을 작성했다. FATF가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하여 비협조지역이라고 지목된 곳에 거주하는 자와의 거래는 혐의거래로 분류가 된다. 이에 대해 금융기관은 관련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이 FATF의 권고안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비협조지역에 대한 지정은 유엔안보리 결의안과 FATF의 국제테러리즘 내지 대량살상무기 확산자에 대한 지정제도인 정밀금융제재와 많은 부분 유사하다. 이 두 제도는 FATF의 결의안에 기초하면 실제 매우 유사하게 운영될 수 있다.[357] 물론, FATF의 권고안에 나타난 제도는 조세회피행위 보다는 이미 불법성을 지니고 있는 자금에 대한 세탁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지정제도가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나타난 형태가 미국의 「조세회피처 오용방지 법안(the Stop Tax Haven Abuse Act)」이다. 즉, 동 법안이 첫 번째로 시도한 것은 조세회피처를 지정하는 것이었다. 동 법안에 따르면, 역외비밀지역은 재무부 장관이 지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358] 또한, 미국재무부 장관은 조세법의 집행과 관련된 미국의 능력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조세비밀법의 존재 여부를 바탕으로 어떠한 지역이 역외비밀지역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359] 지정된 역외비밀지역의 기업과 관련된 역내의 납세자 활동에 대해서는 반증이 있기 전까지는 해당 기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강력한 규정을 두고 있다.[360] 이어 조세회피처에서의 활동에 대한 다양한 예외적 과세규정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361]

금융제재에 있어 지정제도는 매우 강력한 형태이다. 이러한 국제적 제재제도는 지정자와 피지정자 사이의 역학관계를 제외하고 논할 수 없는 것이다. 앞에서 살핀 대로 실질적으로 조세회피처에 해당하는 많은 지역들이 모국의 노력이나 강국이라는 이유로 지정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미국은 「조세회피처 오용 방지 법안(the Stop Tax Haven Abuse Act)」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357) FATF, the FATF Recommendations: International Standards on Combating Money Laundering and the Financing of Terrorism & Proliferation (Feb. 2012).

358) Stop Tax Haven Abuse Act, S. 506, 111th Cong. § 101(b) (2009).

359) *Id.*, § 101(b).

360) *Id.*, § 102.

361) *Id.*, § 103-106.

자 했지만 이는 미국이 세계 최대의 상품시장이자 자본시장이라는 점을 도외시하고 언급할 수 없는 부분이다. 결국, 지정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조세회피처에 대한 지정제도와 같은 강력한 금융규제가 활성화 되면, 조세회피나 자금세탁행위에 대한 규제 부담이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주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자본의 이동이 보다 증대되고 용이해지면서, 금융기관에서 은행 소비자로 규제의 부담이 이동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자금세탁에 대한 엄격한 규제 기준은 특정국의 금융영역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조세회피처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에 있어 보다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당연히 조세회피처는 완화된 금융규제로 고도의 금융 수익을 누리고 있는 지역이므로 엄격한 금융규제 제도에 매력을 느끼기는 어려울 것이다.[362]

4. 범죄화

현재, 조세회피처를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범죄화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비록 조세회피행위가 유해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사적인 비난가능성의 수준에까지 올랐다는 광범위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조세회피처 관련 활동에 대한 제재는 여전히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의심이 있다.

강력한 지정제도의 운영을 시도한 미국의 「조세회피처 오용 방지 법안(the Stop Tax Haven Abuse Act)」 조차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 단지, 기존의 자금세탁방지규정으로도 이미 처벌대상이 되고 있는 규정들을 역외재산 은닉이라는 법문으로 새롭게 표현하거나,[363] 조세회피처를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방조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364] OECD 또한 조세회피처와 관련된 행위에 대한 금융기관의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362) A. Demirgüc-Kunt & H. Huizinga, The Taxation of Domestic and Foreign Banking, 79 Journal of Public Economics 429 (2001).

363) Stop Tax Haven Abuse Act, S. 506, 111th Cong. § 202 (2009).

364) *Id.*, § 301-302.

이를 위반하는 경우 민형사상 제재를 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조세회피처를 이용하는 조세회피 행위를 비롯한 여러 가지 거래행위에 대해 자금세탁행위의 예비적 행위(precursor offense)로 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즉, 법인과 법적 단체의 뒤편에 자금 출처와 자금 명의인의 신원을 감추는 행위에 대해 범죄화할 수 있다.[365] 이는 투명성의 확보를 통하여 범죄자나 테러리스트들이 조세회피처를 활용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다. 실제, FATF는 조세범죄를 자금세탁에 대한 예비적 행위로서 보고 있다.[366]

여기서 주의할 것은, FATF가 조세회피처를 활용하는 모든 행위를 자금세탁행위와 연결된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불법자금세탁은 그 자금원이 이미 불법성을 띄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조세 절감 행위가 위법한지 적법한지라는 쟁점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상당한 거리가 있는 개념이다.

365) Rui Tavares, Relationship between Money Laundering, Tax Evasion and Tax Havens, (Jan. 2013).

366) FATF는 불법자금과 관련된 1년 이상 혹은 6개월 이상의 자유형에 처할 수 있는 모든 범죄형태를 자금세탁범죄의 예비적 범죄로 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FATF, FATF Recommendation: International Standards on Combating Money Laundering and the Financing of Terrorism & Proliferation 34 (May, 2012).

참고문헌

가. 국내자료

김동복, “국제적 조세회피유형과 국가간 조세협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6권 제6호, 2006.

김윤옥, “신흥지역연구센터 동향 세미나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박혜림, “초국가적 조세회피범죄에 대한 형사정책”,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16권 제3호, 2012.

오대원·남수중, “홍콩의 위안화 역외금융시간 발전 가능성 연구”, 동북아경제연구, 제25권 제2호, 2013.

이정환, “론스타 사태를 해부한다”,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 세계, 제9호, 2006.

이찬근, “조세피난처의 이중 구조”, 무역학회지, 제38권 제5호, 2013.

최성은,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해외동향”, 조세·재정 BRIEF, 한국조세연구원, 2013.

나. 국외자료

Charles Gnaedinger, “U.S. Cayman Islands Debate Tax Haven Status,” Tax Notes, May 4, pp.548-545, (2009).

Richard A. Gordon, Tax Havens and Their Use by United States Taxpayers-An Overview 147-49, 207-09 (1981).

A. Demirgüc-Kunt & H. Huizinga, “The Taxation of Domestic and Foreign Banking”, 79 Journal of Public Economics 429 (2001).

A. K. Rose & M. M. Spiegel, “Offshore Financial Centers: Parasites or Symbionts?”, 117 Economic Journal 1310 (2007).

Andrew Atkeson et al., "Taxing Capital Income; A Bad Idea", 23 Fed. Res. Bank Minn. Q. Rev. 1, 11 (1999).

Anthony Faiola and Mary Jordan, "Tax-Haven Blacklist Stirs Nations: After G-20 Issues mandate, Many Rush to Get Off Roll", Washington Post, April 4, p.A7, (2009).

Arden Dale, "No Amnesty, But Evaders Still Welcome", Wall St. J., October 17-18, (2009).

B. L. Bartlett, "The negative Effects of Money Laundering on Economic Development", (Report for the Asian Development Bank), May 2002, pp. 29-33.

Bachmann. H., "The Swiss Question Their Once Proud Banks", Time Magazine (Mar. 5, 2009).

Bachmann. H., "U.S. vs. UBS: A Fight Over Secret Swiss Bank Accounts", TIME MAGAZINE, (Jul. 15, 2009).

Benjamin R. Hartman, "Coercing Cooperation from Offshore Centers: Identity and Coincidence of International Obligations Against Money Laundering and Harmful Tax Competition", 24 B.C. Int'l & Comp. L. Rev. 253, 273-78 (2001).

Brigitte Unger & Joras Ferwerda, "Regulating Money Laundering and Tax Havens: The Role of Blacklisting", (May 15th, 2008).

Bruce Zagaris, "The Procedural Aspects of U.S. Tax Policy Towards Developing Countries: Too Many Sticks and No Carrots?", 35 Geo. Wash. Int'l L. Rev. 331, (2003).

Caribbean Financial Action Task Force, CFATF Overview.

Carolyn Michelle Najera, "Combating Offshore Tax Evasion: Why the United States Should be able to Prevent American Tax Evaders from Using Swiss Bank Accounts to Hide their Assets", 17 Sw. J. Int'l L. 205 (2011).

Carter Dougherty & Mark Lander, "Tax Scandal in Germany Fans Complaints of Inequity", N.Y. Times, (Feb. 18, 2008).

Charles Gnaedinger, "Luxembourg P.M Calls out U.S. States as Tax Havens", Tax Notes International, April 6, 2009, p. 13.

Charles Gnaedinger, "U.S. Cayman Islands Debate Tax Haven Status", Tax Notes, May 4, 2009, pp. 548-545.

Commission Communication COM 254, "concerning the need to develop a coordinated strategy to improve the fight against fiscal fraud", 31 May, 2006.

Commission Europ enne, "Communication De La Commission Au Parlement Europ en Et Au Conseil: sur les moyens concrets de renforcer la lutte contre la fraude et l'evasion fiscales, ycompris en ce qui concerne les pays tiers", Bruxelles, le 27.6. 2012, COM(2012) 351 final, pp. 1-14.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Laundering, Search, Seizure and Confiscation of the Proceeds from Crime, Nov. 8, 1990, E.T.S. 141.

Craig Boise, Regulating Tax Competition in Offshore Financial Centers, Case Research Paper Series in Legal Studies, Working Paper No. 08-26, 2008, at 25.

Cynthia Blum, "Sharing Bank Deposit Information With Other Countries: Should Tax Compliance or Privacy Claims Prevail?", 6 Fl. Tax Rev. 579, 609 (2004).

D. Dharmapala & J. R. Hines, "Which countries become tax havens?", 93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058 (2009).

D. Masciandaro, "False and Reluctant Friends? National Money Laundering Regulation, International Compliance and Non-Cooperative Countries", 20 European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7 (2005).

D. Masciandaro, "Offshore financial centres: The political economy of regulation", 26 European Journal of Law & Economics 307 (2008).

David D. Stewart, "G-20 Declares End to Bank Secrecy as OECD Issues Tiered List," Tax Notes, April 6, 2009, pp. 38-39.

David Spencer and J. C. Sharman, "International Tax Cooper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Taxation", published in three parts in December 2007, pp. 35-49, January 2008, pp. 27-44, 64, February 2008, pp. 39-58.

Deficit Reduction Act of 1984, Pub. L. No. 98-369, 98 Stat. 494, 648-50 (1984).

E.J. Fagan, "IMF: Trillions of Undeclared Funds Offshore", Task Force, Financial Integrity & Economic Development, March 15, 2010.

Enron, Exhibit 21, "Eport of Investigation of Enron Corporation and Related Entities Regarding Federal Tax and Compensation Issues, and Policy Recommendations," prepared by Joint Committee on Taxation staff (2/03), at 375.

Ethan A. Nadelmann, "Unlaundering Dirty Money Abroad: U.S. Foreign Policy And Financial Secrecy Jurisdictions", 18 U. Miami Inter-Am L. Rev. 33, 35 (1986-1987).

Europaische Kommission, Mitteilung Der Kommission An Das Europaische Parlament Und Den Rat: Aktionsplan zur Verstärkung der Bekämpfung von Steuerbetrug und Steuerhinterziehung, Brüssel, den 6.12.2012, COM(2012) 722 final, pp. 1-18.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Recommendation on aggressive tax planning, Brussels, 6.12.2012, C(2012) 8806 final, pp. 1-6; EUROPEAN COMMISSION, regarding measures intended to encourage third countries to apply minimum standards of good governance in tax matters, Brussels, 6.12.2012, C(2012) 8805 final.

Evan Perez, "Prosecutor In UBS Case May Depart", Wall St. J., June 25, 2010.

F. Schneider et al., "Shadow Economies in Highly Developed OECD Countries: What Are the Driving Forces?", 2012.

FATF, FATF Acts Against Terrorist Financing, Money Laundering and Non-cooperative Jurisdictions 1-3 (Feb. 1, 2002).

FATF, FATF Recommendation: International Standards on Combating Money Laundering and the Financing of Terrorism & Proliferation 34 (May, 2012).

FATF, FATF Review to Identify Non-Cooperating Countries or Territories: Increasing the Worldwide Effectiveness of Anti-Money Laundering Measures 9 (2000),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Annual Report 1996-1997.

FATF, Report on Non-Cooperative Countries and Territories 1-2 (2000).

FATF, Review to Identify Non-cooperating Countries and Territories 4 (June 2002).

FATF, the FATF Recommendations: International Standards on Combating Money Laundering and the Financing of Terrorism & Proliferation (Feb. 2012).

Fergal O'Brien, "Bono, Preacher on Poverty, Tarnishes Halo Irish Tax Move," October 15, (2006).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FATF], FATF Review to Identify Non-Cooperative Countries or Territories: Increasing the Worldwide Effectiveness of Anti-Money Laundering Measures 2-10 (June 22, 2000).

Financial Stability Forum,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Offshore Centres, (April 5th, 2000). available at http://www.financialstabilityboard.org/ publications/ r_0004b.pdf

Greg Brabec, "The Fight for Transparency: International Pressure to Make Swiss Banking Procedures Less Restrictive", 21 Temp. Int'l & Comp. L.J. 231, 232 (2007).

H. Gnutzmann, K. J. McKarthy, & B. Unger, "Dancing with the Devil: Country Size and the Incentive to Tolerate Money Laundering", 30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244, (2010).

Helena Bachmann, "Can Swiss Banks Thrive After the UBS-U.S. Deal?", Time Magazine, (Aug. 20, 2009).

Helvering v. Gregory, 69 F.2d 809, 810 (2d Cir. 1934).

Improper Use of Foreign Addresses to Evade U.S. Taxes: Hearing Before the Commerce, Consumer, and Monetary Affairs Subcomm. of the H. Comm. on Gov't Operations, 97th Cong. (1982);

International Monetary Fund, Offshore Banking: An Analysis of Micro- and

Macro-Prudential Issues, prepared by Luca Errico and Alberto Musalem, IMF Working Paper 99/5 (1999).

J. R. Hines, "Do Tax Havens Flourish?", NBER Working Papers 10936, (2009).

J. Slemrod, "Why is Elvis on Burkina Fasco Postage Stamps? Cross-National Evidence on the Commercialization of State Sovereignty", 5 Journal of Empirical Legal Studies 683 (2008).

J. C. Sharman, Havens in a Storm: The Struggle for Global Tax Regulation 44-45 (2006).

J. R. Hines and E. M. Rice, "Fiscal Paradise: Foreign Tax havens and American Business," 109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49 (1994).

James Henry, Tax Justice Network(2012) The Price of Offshore Revisited New Estimates for Missing Global Private Wealth, Income, Inequality, and Lost Taxes p. 9, Rui Tavares, Relationship between Money Laundering, Tax Evasion and Tax Havens, Special Committee on Organized Crime, Corruption and Money Laundering (Jan. 2013).

Jane G. Gravelle, "Tax Havens: International Tax Avoidance and Evasion",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Jan. 23, (2013).

Jennifer A. Mencken, "Supervising Secrecy: Preventing Abuses within Bank Secrecy and Financil Privacy Systems", 21 B. C. Int'l & Comp. L. Rev. 468, 473 (1998).

Jesse Drucker, "Google 2.4% Rate Shows How $60 Billion Lost to Tax Loopholes," Bloomberg, October 21, (2010).

Kevin McCoy, "12 key figures prosecuted in UBS tax evasion case", USA Today, (Oct. 13, 2009).

Laura Saunders & Anita Greil, "Swiss Will Give Up Names of U.S. Taxpayers", Wall St. J., (Nov. 18, 2009).

Luca Errico & Alberto Musalem, "Offshore Banking: An Analysis of Micro-and Macro-Prudential Issues 10-11", (IMF, Working Paper No. 99/5, 1999).

Lynnley Browning, "Swiss Back Away From Deal To Give Names of Rich UBS

Clients to U.S.", N.Y. Times, (Jan. 28, 2010), at B3.

M. A. Desai, C. F. Fritz & R. H., Jr. James, "Do Tax Havens Divert Economic Activity?", 90 Economics Letters 219 (2004).

Merten, Steueroasen Ausgabe 2014 - Wandel in der Offshore-Welt, 2013, S. 80.

Michael Isaacson, "The Tax Haven the OECD Forgot? Harmful Tax Competition? Harmful to Whom?", Learn About the Real Agenda Behind OECD's Blacklists of Offshore Tax Havens.

Michael J. Graetz, Foundations of International Income Taxation 157 (2003).

Micheil van Dijk, Francix Weyzig, and Richard Murphy, The Netherlands: A Tax Haven? SOMO (Centre for Research on Multinational Corporations), Amersterdam, 2007 and Rosanne Altshuler and Harry Grubert, Governments and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the Race to the Bottom, Tax Notes, February 27, 2009, pp. 979-992.

OECD Committee on Fiscal Affairs,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9-15 (2008).

OECD, Estimating Illicit Financial Flows Resulting from Drug Trafficking and Other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s, 109-115 (October, 2011).

OECD, Harmful Tax Competition: An Emerging Global Issue 15 (1998).

OECD, Improving Access to Bank Information for Tax Purposes 8-9, 19 (2000).

OECD, International Tax Avoidance and Evasion: Four Related Studies 20 (1987).

OECD, Toward Global Tax Cooperation: Progress in Identifying and Eliminating Harmful Tax Practices, 12 (2000).

OECD, Towards Global Tax Cooperation: Progress in Identifying and Eliminating Harmful Tax Practices, 25 (2003).

Organization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Cooperation, Harmful Tax Competition: An Emerging Global Issue, 1998, p. 23.

P. R. Land and G. M. Milesi-Ferretti, "International Monetary Fund, Cross-Border Investment in Small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s", IMF Working Paper, WP/10/38, Washington D.C., February 2010 and Tax Justice Network,

"IMF: trillions lost offshore", March 15, (2010).

P. Schwarz, "Why Are Countries Reluctant to Exchange Information on Interest Income?", Participation in and Effectiveness of the EU savings tax directive, 29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97 (2009).

Peter Schwarz, "Money Launderers and Tax Havens: Two Sides of the Same Coin?", 31 Int'l Rev. L. & Econ. 37 (2011).

R. Palan, "Tax Havens and the Commercialization of State Sovereignty", 56 International Organization 151 (2002).

Raymond T. Gibson, "The Bahamas - The Tax-Free Alternative to Florida", Vault Mag., Sept. 2002.

Richard A. Gordon, Tax Havens and Their Use by United States Taxpayers-An Overview 15, 17 (1981).

Richard K. Gordon, "Anti-Money-Laundering Policies: Selected Legal, Political, and Economic Issues", in 1 Current Developments in Monetary and Financial Law 405, 407 (1999).

Richard K. Gordon, "On the Use and Abuse of Standards for Law: Global Governance and Offshore Financial Centers", 88 N.C. L. Rev. 501 (2010).

Richard K. Gordon, "Trysts or Terrorists?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Search for Bad Guys", 43 Wake Forest L. Rev. 699, 721-25, 728-29 (2008).

Richard M. Bird & Eric M. Zolt, Introduction to Tax Policy Design and Development 6 (Apr. 2003) (unpublished draft prepared for a course on Practical Issues of Tax Policy in Developing Countries, World Bank, April 28-May 1,(2003).

Robert Mathavious, Managing Dir., Fin. Services Comm'n of the British Virgin Islands, in Roadtown, British Virgin Islands, to author (Aug. 16, 2004).

Rui Tavares, "Relationship between Money Laundering", Tax Evasion and Tax Havens, (Jan. 2013).

Rui Tavares, "Relationship between Money Laundering, Tax Evasion and Tax Havens, Special Committee on Organized Crime", Corruption and Money

Laundering (Jan. 2013).

Stop Tax Haven Abuse Act, S. 681, 110th Cong. (2007).

Tax Evasion Through the Netherlands Antilles and Other Tax Haven Countries: Hearings Before a Subcomm. of the H. Comm. on Gov't Operations, 98th Cong. 3 (1983).

Tax Justice Network, Tax Us if You Can, September, (2005).

The Puppet Masters, The World Bank and UNOCD, (2011).

U.S. Senate Subcommittee on Investigations: How Offshore Enttes Dodge Taxes on U.S. Stock Dividends, Staff Report on Dividend Tax Abuse, (September 11, 2008).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October 2011) Estimating Illicit Financial Flows Resulting From Drug Trafficking and Other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s Research Report, October 2011, p.5.

Urs Martin Lauchli, "Swiss Bank Secrecy with Comparative Aspects to the American Approach," 42 St. Louis U. L. J. 865, 866 (1997-1998).

Vincent P. Polizatto, "Prudential Regulation and Banking Supervision: Building an Institutional Framework for Banks 1", (World Bank, Working Paper Series No. 340, (1990).

経済産業省 国際課税研究会,「国際課税制度の主要論点について: 中間的な議論の整理」, 2009年 8月.

経済産業省 貿易経済協力局 貿易振興課,「平成24年度 アジア拠点化立地推進調査等事業: 国際租税問題に関する調査(タックスヘイブン対策税制及び無形資産の取扱いについて), 調査報告書, 2013年 3月, pp.19-20.

高橋元,「タックス・ヘイブン対策税制の解説」, 清文社, 1979.

国税庁,「国外財産調書の提出制度のあらまし」, 2013. 4.

国際協力銀行 業務企画室 調査課,「製造業企業の海外事業展開に関する調査報告: 2012年度 海外直接投資アンケート結果」, 2013年.

金子宏編,「租税法の基本問題」, 有斐閣, 2008年.

藤本哲也,「法人税法」, 平成21年度版, 中央經濟社.
藤井保憲,「タックス・ヘイブン対策税制の問題点」, 2005年, 水野忠恒 編著,「国際課税の理論と課題」, 税務経理協会, 2005年.
武田昌輔 編著,「DHC コンメンタール法人税法」, 第一法規出版, 1979年.
伴忠彦,「30年目のタックス・ヘイブン対策税制」, 租税研究 2010年 2月号.
伴忠彦,「タックス・ヘイブン対策税制の理論と執行上の問題点」, 本庄資 編著,「国際課税の理論と実務」, 大蔵財務協会, 2011年.
保井久理子,「外国子会社合算税制における新しい概念について: 資産性所得を中心として」, 税大論叢, 2011年 71号.
本庄資,「オフショア・タックス・ヘイブンをめぐる国際課税」, 日本租税研究協会, 2013年.
浜銀総合研究所, わが国の地下経済の規模を推計する, 2001.5.
小田嶋清治,「近時の国際課税実務の動向と企業の対応」, 中里実他 編著,「国際租税訴訟の最前線」有斐閣, 2010年.
小田嶋清治,「タックス・ヘイブン対策税制の立法経緯と今後の動向」, 中里実他 編著,「国際租税訴訟の最前線」, 有斐閣, 2010年.
水野忠恒 編著,「国際課税の理論と課題」税務経理協会, 2005年.
財務省, 国際課税関係 国外財産調書制度の創設等の改正, 2012. 3.
財務省, 財務総合政策研究所研究部,「2009年度 税制改正が現地法人の配当送金に及ぼした効果―本社の資金需要に着目した分析」, 2010年.
財務省,「税制改正大綱」, 平成23年度.
財務省,「税制改正資料」, 平成22年度.
株式会社 国際協力銀行業務企画室調査課,「わが国製造業企業の海外事業展開に関する調査報告: 2012年度海外直接投資アンケート結果(第24回)」2012年 12月.
川上尚貴,「圖税日本の税制」, 財經報社, 2008年.
青山慶二,「外国子会社合算税制について」, 租税研究, 2010年 9月号.
青山慶二,「外国子会社合算税制についてわが国の改正と英国との比較検討」, 租税研究, 2010年 9月号.

濯口 博志·管野 淺雄 共著,「判例、裁決から みた 海外取引を めぐる 税務」, 財團法人 大藏財務協會, 2005年.
国税庁(http://www.nta.go.jp).
国会衆議院外務委員会議録 第174回 第11号2頁, 2010. 4. 9.
国会会議録検索システム(http://kokkai.ndl.go.jp).
法令データ提供システム(http://wwwlaw.e-gov.go.jp).
税務調査‧国際税務対策は エヌエムシイ税理士法人 税務総合戦略室 (www.nmc-zeirishi.jp)
外務省, 日‧バミューダ租税協定の発効(http://www.mofa.go.jp).
日本経済新聞, 2010. 8. 1.
財務省, 財政金融統計月報, 租税特輯.
東京高等裁判所平成20年(行コ)第100号.
東京高等裁判所平成21年(行コ)第236号.
東京地方裁判所平成18(行ウ)第714号.
東京地方裁判所平成22年(行ウ)第725号.
最高裁判所(第二小法廷)平成17年(行ヒ)第89号.
最高裁判所(第二小法廷)平成17年(行ヒ)第89号.
最高裁判所(第二小法廷)平成20年(行ツ)第70号, 平成20年(行ヒ)第74号.
最高裁判所(第一小法廷)平成20年(行ヒ)第43号.
最高裁判所(第二小法廷)平成21年(行ヒ)第199号.
最高裁判所平成3年(行ツ)第172号.

다. 기타 자료

조선일보, 조세피난처 몰리는 대기업… 법인 167개로 늘어", 2011. 6. 13.
김경환, 조세피난처 편법운용 강력한 규제 필요, 머니투데이 2013. 5. 27.
한국경제신문(http://www.hankyung.com/news).
동아일보, "미국세청이 한국에 있는 내 계좌를 들여다본다고?": 내년 7월부터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화, 2013. 8. 5.
조선일보, 관세청 · 금감원에 외환 공동검사권 부여… '역외 탈세 막는다', 2013. 6. 16.

Abstract

Analyses of Criminal Activity through Tax Havens

Park, Mi Suk* · Kang, Wu Ye**

Tax havens have been used not only for tax evasion, but also as for money laundering. Furthermore, tax havens work to distort international flows of capitals to the abnormal direction. Because of this phenomenon, international welfare was reduced and individual coutries' bases of policies of tax revenue and expenditure were crumbled.

Tax havens appears in the midst of international tax competitions but goes free from limited meanings of domestic systems. In other words, individual country's tax system inevitably makes reciprocal influences with one another. And thus, domestic tax systems brought fundamental changes.

Globalization makes it possible to simplify international capital flows. Means for minimization and evasion has been developed. This leads to the result that individual countries have developed harmful tax policies. Harmful tax policies that cause harms to other countries has been potential distortions to sound flows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As a result, this may make entire amounts of international wealth and involuntarily change structures of domestic tax system.

---

* Senior Fellow Researcher,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Professor of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Recently, why the issue of tax haven reappears is because of financial difficulties which the United States, many EU countries, and Japan have suffered from. Big capitals and corporations get many benefits from their own governments but evade their duty of taxes and wired out their incomes and profits. Consequently, tax evasion and avoid through tax havens damage sense of justice based on each community and also seriously destroy or distort capital flows that should happen based on sound competition.

Also, tax havens becomes the important place of distributing criminal revenues. In the past, OECD paid attention to tax havens just to investigate tax evasion and illicit money laundering. However, recently FATF focuses on the relation between international terrorism and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Most of all, the definition of tax haven brings many debates and conflicts. First, we should note the tax rate of income. If tax rate is too low or close to zero, it should be considered harmful. Also, bank secrecy that causes opacity of money trade is another important factor. Moreover, the fact is important, that a particular corporation does not need to make actual economic activities to enroll itself in tax havens.

연구총서 13-AB-06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범죄행위 유형에 대한 연구

발 행 / 2014년 2월
발행인 / 박상옥
발행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02)575-5282/5283
등 록 / 1990. 3. 20. 제21-143호
인 쇄 / 경성문화사
(02)786-2999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정가 7,000원
ISBN 978-89-7366-126-8 93360